

농식품 분야 민간금융 활용방안과 과제

임소영 · 김미복 · 김소희 · 김형연 · 유도일 ·
윤홍근 · 김남훈 · 김상봉 · 서상택

농식품 분야 민간금융 활용방안과 과제



연구 담당

임소영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 2장 집필

김미복 | 선임연구위원 | 제3장 집필

김소희 | 연구원 | 자료 수집

김형연 | 농식품정책보험금융원 부장 | 제4장 집필

유도일 | 서울대 교수 | 제3장 집필

윤홍근 | 다솔벤처스 대표 | 제5장, 부록 집필

김남훈 | 부산대 교수 | 제6장 집필

김상봉 | 한성대 교수 | 제7장 집필

서상택 | 충북대 교수 | 제8장 집필

기타연구보고 M179

농식품 분야 민간금융 활용방안과 과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3. 11.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I S B N | 979-11-6149-683-2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농업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가 필수적이다. 농업부문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사회적 가치가 사적 가치보다 높은 공공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많이 나타나는 분야로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책금융만으로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민간부문이 농업금융에 참여하여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는 농업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를 양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자금 심사와 조달 등에 있어 농업 투융자 시장에서의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더욱 시장친화적인 농업금융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자본에 의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 연구는 농업금융의 발전과 그 선결과제인 민간부문 역할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농업금융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민간 자본의 농업부문 투자를 위한 생태계 조성, 해외 제도의 소개뿐 아니라 융자 및 보증 등 농업정책금융에서의 민간부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금융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세부 사안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가 다수의 논의를 거치며 제시한 의견들을 담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연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해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업금융 실태를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 관련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농식품산업 민간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 두 봉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제2장 농업금융 현황과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1. 농업부문 자금투자 실태	17
2. 농업부문 금융시장 여건 변화	22
3. 농식품 분야 금융시장의 발전과제	26

제3장 해외 농식품 금융 사례와 시사점

1. 네덜란드 라보뱅크(Rabobank)	41
2.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Crédit Agricole) 사례	55
3. 미국 농업조합금융시스템(Farm Credit System: FCS)과 세컨더리 시장 ...	64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76

제4장 농업 분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농식품모태펀드 운영방안

1. 농식품모태펀드 운영 현황	81
2.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모태펀드 운영방안	98

제5장 AgTech 전망과 기술금융 확대 방안

1. AgTech 현황과 전망	111
2. AgTech 투자 동향	116
3. 농업 분야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과제	127

제6장 이차보전 전환을 통한 농업정책 금융 효율성 제고 방안

1. 서론	145
2. 재정금융정책 및 용자제도	147
3. 농업부문 금융정책	152
4. 이차보전 효율성 분석	162
5. 이차보전 전환 방안	173

제7장 농업정책금융 효율성 제고 방안 - 보증제도

1. 민간금융 활용 확대를 위한 보증제도의 역할	183
2. 보증기금의 지배구조 및 조직현황	189
3. 농신보 운영 현황	193
4. 농신보 발전 방향과 과제	198

제8장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신뢰성 확보 방안 215

1.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	215
2. 농업경영체의 회계기록 부진의 원인과 개선과제	221

부록

미국 농업금융 현황	237
------------------	-----

참고문헌 243

제2장

〈표 2-1〉 회계별 융자금 현황	19
〈표 2-2〉 주요사업 실적	20
〈표 2-3〉 규모화된 전업농가(전문농가) 추이	22
〈표 2-4〉 기술금융 관련 주요 프로그램 규모	23
〈표 2-5〉 시중 5대 은행 IP담보대출 현황	24

제3장

〈표 3-1〉 FCS와 다른 대출기관과의 차이점	67
〈표 3-2〉 Farmer Mac 사업 현황	75

제4장

〈표 4-1〉 투자와 융자 비교	82
〈표 4-2〉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현황	85
〈표 4-3〉 농식품자펀드 결성 현황	86
〈표 4-4〉 일반펀드 및 특수목적펀드 결성 현황	88
〈표 4-5〉 농식품자펀드 투자건수 및 금액	89
〈표 4-6〉 계정별 투자 현황	90
〈표 4-7〉 농식품 산업부문별 투자 현황	90
〈표 4-8〉 농식품 계정 지역별 투자 현황	91
〈표 4-9〉 투자방식별 투자 현황	93
〈표 4-10〉 업력별 투자 현황	94
〈표 4-11〉 유형별 회수 현황	95

〈표 4-12〉 청산 자펀드 현황	97
〈표 4-13〉 자펀드 출자자 현황	98
〈표 4-14〉 최근 3년간 분기별 벤처투자 현황	99
〈표 4-15〉 최근 3년간 분기별 농식품자펀드 투자 현황	99
〈표 4-16〉 최근 3년간 분기별 농식품자펀드 회수 현황	100
〈표 4-17〉 농식품 민간 모펀드 세제혜택 부여(안)	103
〈표 4-18〉 조건부지분인수계약-조건부지분전환계약 비교	105
〈표 4-19〉 투자목적회사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106
〈표 4-20〉 투자조건부 용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비교	108
〈표 4-21〉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현황	110

제5장

〈표 5-1〉 애그테크(AgTech)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 현황	119
〈표 5-2〉 애그테크(AgTech)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현황	120
〈표 5-3〉 연도별 주요 분야별 기술금융 현황	123
〈표 5-4〉 농식품 분야 연도별 주요 분야별 기술금융 현황	124
〈표 5-5〉 연도별 TCB(기술신용대출) 현황	124
〈표 5-6〉 연도별 TCB(기술신용대출) 현황	125
〈표 5-7〉 연도별 국내 벤처투자 현황	126
〈표 5-8〉 2022년 상반기(1. 1.~7. 1.) 기술보증기금 업종별 기술평가 현황 ...	127

제6장

〈표 6-1〉 최근 5년간 재정용자 현황	150
〈표 6-2〉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표	156

〈표 6-3〉 기금 총괄표	157
〈표 6-4〉 특별회계 및 기금 지출계획 총괄표	159
〈표 6-5〉 2023년 농업자금이자보전 예산 세부 산출 내역	161
〈표 6-6〉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의 효율성 분석	167
〈표 6-7〉 할인율에 따른 재정용자(전대)와 이차보전의 비용 차이	168
〈표 6-8〉 대출기간에 따른 재정용자(전대)와 이차보전의 비용 차이	170
〈표 6-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자사업 내역	175
〈표 6-10〉 농지관리기금 용자사업 내역	177
〈표 6-11〉 축산발전기금 용자사업 내역	178
〈표 6-1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용자사업 내역	179
〈표 6-1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내 단기 직접대출의 연간 이차보전 전환 편익	181

제7장

〈표 7-1〉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용자, 보증, 보험, 투자액 공급잔액	186
〈표 7-2〉 중소기업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지원방식별 공급잔액	187
〈표 7-3〉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지원방식별 공급잔액(2021년 말)	187
〈표 7-4〉 주요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BIS자기자본비율 및 운용배수 현황 ...	188
〈표 7-5〉 농신보 보증별 신용보증잔액 현황(2022년 말)	193
〈표 7-6〉 신용보증잔액 현황(2022년 말)	193
〈표 7-7〉 농신보 보증기관별 신규보증 및 보증잔액 추이	194
〈표 7-8〉 2016년 이후 연도별 기금 결산 현황	195
〈표 7-9〉 기금별 주요 운영 현황	196
〈표 7-10〉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197

〈표 7-11〉 기준보증료율 현황(개인·법인·금액별)	197
〈표 7-12〉 농신보 보증료율의 변화(연간)	198
〈표 7-13〉 농신보의 신용조사	205

제8장

〈표 8-1〉 상법상의 재무제표	218
〈표 8-2〉 농업회계 재무지표 현황	221
〈표 8-3〉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내용	222
〈표 8-4〉 재무제표 작성 농업법인 비율	223
〈표 8-5〉 농업경영(회계)기록 미기록 사유 및 기록형태	225
〈표 8-6〉 농업회계의 장애요인 분석 결과	226
〈표 8-7〉 농업 분야 개인사업자 현황	227
〈표 8-8〉 기관별 농업경영장부 비교표	229
〈표 8-9〉 국내 농업경영체에 적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 현황	231
〈표 8-10〉 재무정보의 제출이 요구되는 농업정책사업(자금) 현황	234

제2장

〈그림 2-1〉 농업정책금융 전달체계(2021년 말 잔액 기준)	18
〈그림 2-2〉 신용보증 당사자 관계	20
〈그림 2-3〉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조합 투자 현황	21
〈그림 2-4〉 벙카우 투자구조	25
〈그림 2-5〉 농업정책금융과 농가부채	27
〈그림 2-6〉 미국 총농가부채의 대출기관별 시장점유율 추이	28

제3장

〈그림 3-1〉 라보뱅크의 푸드 시스템 전환에 대한 기여	45
〈그림 3-2〉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사례: Devro	49
〈그림 3-3〉 AGRI3 펀드(AGRI3 Fund)	52
〈그림 3-4〉 크레디 아그리콜의 장기적 전환 지원 사회 프로젝트	57
〈그림 3-5〉 Structure/Ownership of FCS	66
〈그림 3-6〉 FamerMac 구조	72
〈그림 3-7〉 US 농업 대차대조 및 FarmerMac 사업규모	74

제4장

〈그림 4-1〉 농식품모태펀드 및 농식품자펀드 구조	84
〈그림 4-2〉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 구성	101
〈그림 4-3〉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 모펀드 비교	102
〈그림 4-4〉 일반 펀드와 세컨더리 펀드 비교	109

제5장

〈그림 5-1〉 AgTech 주요 기술구성도	112
〈그림 5-2〉 애그테크(AgTech) 산업 가치사슬 및 전후방산업 연관도	113
〈그림 5-3〉 전 세계 애그테크 시장 규모 및 전망	115
〈그림 5-4〉 전 세계 경종부문 애그테크 세부 시장별 규모 및 전망	115
〈그림 5-5〉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 및 전망	116
〈그림 5-6〉 연도별 로봇틱스와 스마트 필드 장비 분야 벤처투자건수	117
〈그림 5-7〉 연도별 애그테크(AgTech) 투자 Deal 거래 현황	118
〈그림 5-8〉 AgTech 분야 큰 규모의 투자 출구(Exit) 현황	121
〈그림 5-9〉 미니채권 발행에 기초한 재무구조도	136
〈그림 5-10〉 농식품 분야 IP-SLB 자금흐름도(안)	138
〈그림 5-11〉 농식품 IP-SLB 운용방안 개념도	140
〈그림 5-12〉 농신보 혹은 TCB(기술신용평가기관)와 농업 기술금융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 구성에 따른 기술금융 흐름도	141
〈그림 5-13〉 농식품 기술혁신형 M&A 우수사례 창출 추진절차(안)	142
〈그림 5-14〉 기술혁신형 M&A 기술평가 수행기관 지정절차(안)	143
〈그림 5-15〉 농업 기술사업화 기관의 M&A 자문기관으로 지정받는 절차(안)	144

제6장

〈그림 6-1〉 직접융자 지원 방식	153
〈그림 6-2〉 전대 지원 방식	154
〈그림 6-3〉 이차보전 지원 방식	155

제7장

〈그림 7-1〉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원체계	184
〈그림 7-2〉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공공기관의 업무	186
〈그림 7-3〉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안)	200
〈그림 7-4〉 KTRS계열 신기술평가시스템(AIRATE) 모형	206
〈그림 7-5〉 일반기업(KRS-C) 및 창업기업평가시스템(KRS-S)	206
〈그림 7-6〉 신용보험용평가시스템(KRS-I) 체계	207
〈그림 7-7〉 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시스템	208
〈그림 7-8〉 신용보증재단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구성	208
〈그림 7-9〉 K-VALUE(대면 모형) 등급 산출방법	209

제8장

〈그림 8-1〉 농업회계기록 활성화 지원체계	236
--------------------------	-----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의 필요성

○ 농업금융은 농업 분야 혁신성장의 중요한 동력을 제공함.

- 농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와 식품 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농업금융은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으로 구분되며, 정책금융은 정부가 자금공급에 개입하고, 일반금융은 금융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임.

-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며 생긴 불확실성과 외부성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타 산업에 비해 농업부문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이는 사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공공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임.

- 농가경제 기준으로 금융기관 총차입금(농가별 금융기관 차입 부채에 농가수를 곱하여 추정)과 정책금융 대출잔액을 비교해보면, 2021년도 기준 정책금융이 농가의 차입금 중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농식품 분야에서 농가 단위의 순수 민간금융시장 활용은 거의 없는 것을 시사함.

○ 이는 농업부문은 다음과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금융의 시장실패 분야인 데 기인함.

- 첫째, 자연재해, 국제시장 등 외부 위험으로 생긴 미래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아 농업부문의 투자가 기피되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됨.
- 둘째, 농가의 경영 능력 평가는 미래수익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기관과 농가에서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고, 농가의 능력에 따른 것인지 외부요인으로 인한 영향 때문인지 외부 불확실성으로 수익실현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미래 투자수익을 공유하는 직접금융이 농업부문에서 발달하지 못하게 됨.
- 셋째, 농가에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증명된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으며, 농가와 금융기관 간 기초적인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농가의 경영 상태와 관련하여 상호 신뢰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발생함.

○ 농업부문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한 시장실패가 나타나고,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기관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강조됐음.

- 그러나 농업금융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자본의 농업투자가를 양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자금 심사와 조달 등에서 농업 투융자 시장에서의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시장친화적인 농업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이차보전은 민간자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속해서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고금리 시기에 대응하여 여러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사업 전환 검토가 필요함.
 - 정책금융의 민간자금 비율이 정제되고 있음.¹⁾
- 농식품모태펀드 역시 직접투자 방식의 정책금융이긴 하지만, 민간 투자를 유인한다는 점,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지속해서 확대되어야 함.
 - 출연을 통해 보증 및 투자 방식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다각화가 필요함.
 - 민간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농식품부문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농업금융에서의 민간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개선과 동시에 농식품업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 수단을 마련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물에 대한 조각 투자 사례²⁾ 검토가 필요함.
 - 현물가 상승 및 증권거래법, 부동산거래법, 농지법 적용 관련 심층 검토가 필요함.
- 비농업 분야의 민간금융이 농업 분야와 결합하여 보다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투융자 각부문에서 제도 개선과 민간 투자자의 참여 유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업 투융자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¹⁾ 민간자금 비율: 2021년 잔액 기준 59.5%, 2018년 61.5%, 2010년 52.6%.

²⁾ 프랑스 Societe Generale 사례(Wine Banking, vineyard/bottle 투자).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업금융의 발전과 그 선결과제인 민간부문 역할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농업금융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민간 자본의 농업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함.
 - 융자 및 보증 등 농업정책금융에서의 민간부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금융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주제가 아닌 민간금융 활용이라는 대주제 아래에 세부 주제를 구성하고 개별 주제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여 구체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제2장에서는 농업금융 현황과 농업금융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간략하게 정리함.
 - 제3장 이후 각론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요약을 담음.
- 제3장부터는 농식품 투자, 보증, 융자에 관한 현황과 개선과제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농식품 자금 조달의 기초자료인 경영체의 경영정보 확보 방안을 다룸.
 - 제3장에서는 농업 분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농식품모태펀드 운영방안을 서술함.
 - 제4장에서는 해외 농식품산업 분야 투자 사례와 시사점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외국의 농업부문 세컨더리 시장 제도와 시사점을 제시함.
- 제6장에서는 AgTech 전망과 기술금융 확대 방안을 제시함.
- 제7장에서는 이차보전 전환을 통한 농업정책금융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제안함.
- 제8장에서는 보증제도에 대한 농업정책금융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제안함.
- 제9장에서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함.

2.2. 연구 방법

○ 농업금융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함.

- 농금원, 농특위 등 유관기관과 농업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함.
- 참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원고를 위탁하고 해당 원고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함.
- 전문가 원고 위탁 결과 및 유관기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금융 관련 어젠다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도출함.

○ 농업금융 및 투자 관련, 농업인의 회계 활용 및 소득 파악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수행함.

- 외국의 농업부문 투자 정책 및 사례를 조사함.

○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 위탁을 진행함.

- 농업금융 및 투자 관련 전문 연구자, 금융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원고를 위탁함.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1. 선행연구 검토

3.1.1. 농업 융자 관련 연구

○ 강종만·임병철(2004)은 농업정책금융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농업정책금융의 개선방안으로서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제도 및 재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관리 전담 기관 설립, 보증료율 상향 조정 등 농신보에서의 신용보증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함.

○ 박성재 외(2006)는 농림투융자사업의 문제점 및 내용을 검토하고 농업자금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상호금융의 효율화와 농신보의 건전화를 통해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제시하였음.
- 협동조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농신보 기금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융자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성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
- 이 외에도 상호금융여신센터를 도입하거나 농지 등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론의 도입, 경영희생 농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김미복 외(2014)는 농업정책금융의 역할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립하고 농업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금리를 조정하고, 정책금융사업 간 중복성을 해소하는 등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경영 회생이 필요한 농가에 대한 자금 공급, 생산성 위주의 자금 지원, 기술금융 활성화 등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 또한, 담보 능력이 낮지만 사업성이 높은 농업인을 위하여 농신보의 역할 강화 필요성과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 김미복·김윤진(2015)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농업수익성 악화, 농업구조 변화 등 농업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정책금융 수요 제고를 위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저금리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금리를 인하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금 지원방식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구체적으로, 직접대출, 신용보증, 모태펀드 등 농업전문 투자, 이차보전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담보 중심의 자금 공급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한 농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신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자본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시설농업에 대한 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함.

○ 황의식 외(2016)와 국승용 외(2017)는 농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농업부문의 성장 경로 및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농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 황의식 외(2016)는 농산물 품목구성 및 농가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농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국승용 외(2017)는 한국농업의 장기적인 구조 변화 속에서 투자의 주체와 투자 분야 등에서 바람직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투자체계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농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3.1.2. 농업부문 투자 관련 연구

○ 농식품 분야 투자와 관련하여 농식품모태펀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선행연구도 주로 농식품모태펀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

○ 농식품모태펀드 관련 기존 연구 중 농식품모태펀드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투자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제시한 연구가 다수 존재함(박지연, 2016; 김철희 외, 2011; 농업정책자금관리단, 2012; 삼일회계법인, 2012; 전현선·이호상, 2014; 김정봉, 2010).

○ 농식품모태펀드의 보완대책으로서 농업정책자금관리단(2012)은 프로젝트 투자구조의 개선, 회수시스템의 다양화 방안(M&A Info-Market 활용, 세컨더리 펀드, 크라우드 펀딩 활용, 수요자 중심의 프로젝트 확대 등), 농식품모태펀드 참여자펀드 협의체 구성을 제시하였음.

○ 임소영 외(2018)는 농식품모태펀드가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농식품모태펀드가 농식품 투자 활성화와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농식품모태펀드의 발전과제로서 창업 또는 창업 이전 단계를 지원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회수시장의 다변화와 농업 특성에 맞는 회수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또한, 농업생산에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 관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함.

3.1.3. 농업보증 관련 선행연구

○ 농신보에 관한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와 외부 학술지에 게재 된 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박성재·황의식(1994)부터 최근까지 관련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
- 농신보의 보증 잔액이 상대적으로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신보의 정책 방향, 정보 관련, 평가모형, 성과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음.

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 박성재·황의식(1994)은 농업부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① 기금확대, ② 보증배수율(운용배수) 확대, ③ 신용보증부 대출의 상환인센티브제 도입, ④ 거래은행제 도입, ⑤ 신용보증부 대출 대상자의 범위에 일정 한도 내에서 담보가능 재산이 있는 농가도 포함, ⑥ 대출담당자의 위험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함.

○ 박성재 외(2000)는 농업금융제도 개선방안의 제5장과 제7장의 일부에서 정책금융과 농신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의 기능 강화를 제시함.

○ 김미복 외(2014)은 농신보 역할 강화를 위해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1) 농신보 역할 강화의 기본 방향, (2) 농가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에서 ① 부분보증비율 인상 ② 위탁보증의 대위변제 승인조건을 명확히 설정, (3) 업무영역의 다양화에서 ① 기술금융 역할 강화 ② 보증대상자의 범위 확대 ③ 보증연계투자제도 도입 ④ 신용보증보험제도의 도입 ⑤ 경영지도 기능의 강화, (4)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결정체계의 개선, (5)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리체계 개선에서 ① 농신보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 ② 농협 내에서의 독립성 강화 ③ 장기적으로 농신보 공사로의 독립화를 제시함.

○ 김미복 외(2014)는 농신보의 역할 강화에 대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루고 있으며, 관리체계 개선에서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통합 정책금융기관(안)으로 도입을 언급하고 있음.

○ 김미복·김윤진(2015)은 농업정책금융의 개선과제와 플랫폼 도입을 제시함.

- 정책금융은 담보 중심에서 사업성 중심으로 지원 강화가 필요, 농업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농신보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플랫폼 도입과 관련하여, 플랫폼 회사가 농업시설을 매입 및 임대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음.

○ 김미복 외(2016)는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농신보 보증제도 과제별 분석에서 ① 부분보증비율 확대 검토 ②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확대 ③ 보증료율 체계 ④ 보증심사 ⑤ 기술보증제도 활성화를 다루며,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에서 (1) 개선 방향, (2) 농신보 분야별 개선방안에서 ① 부분보증비율과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검토 ② 보증대상자금 확대 필요 ③ 동일인 보증총액한도 확대 필요 ④ 창업 관련 농신보 보증지원 확대 ⑤ 개인의 보증료율 부담 완화 ⑥ 컨설팅 강화로 부실방지 및 경영지원 ⑦ 기술금융 기반구축 ⑧ 매출채권보험상품 도입을 다룸.

○ 농촌경제연구원 이외의 농신보에 관한 연구는 현황분석과 일부 성과분석(서상택·한두봉, 2008; 강세진·이상열, 2015) 및 농신보 제도 관련한 리포트(이규복, 2014, 이규복, 2017)가 전부임.

○ 서상택·한두봉(2008)은 1996~2007년까지 농신보, 신보, 기보의 운용배수에 대해 살펴보고, 당시의 운용배수가 법정 운용배수의 20배를 초과하고 있음을 보였음.

- 기금 부실 해소방안으로 (1) 금융기관의 책임성 확보로 ① 회원조합의 출연요율을 인상 ② 부분보증비율 차입자 신용도나 대상자금별로 인상 ③ 출연요율과 부분보증비율 인상 병행을 제시하였고, (2)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분리에서 ① 특례보증의 손실은 정부출연금으로 충당 ② 컨설팅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3) 보증료율 인상, (4) 신용보증심의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및 역할 정립을 제시함.

○ 강세진·이상열(2015)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함.

-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농신보 신규보증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농신보가 농가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농신보 신규보증 → 농업투자 확대 → 농업소득 증대의 경로를 통해 농가가계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농신보의 존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³⁾

○ 이규복(2014)은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및 소득창출을 위한 2014년 농신보의 제도개선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제도개선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신보의 보증 및 투자 평가역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이규복(2017)은 농신보 역할 강화에 대해 살펴봄.

- 정부의 2014년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요약하고,⁴⁾ 농신보의 역할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로 ① 보증금액 3,000만~5,000만 원의 영세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② 개인과 법인, 소액보증과 거액보증의 심사와 관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화 필요, ③ 보증 이외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에 농신보의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이러한 정책금융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뉨. 설문을 기반으로 한 연구, 미시적 성과분석, 거시적 성과분석이 그 예임.

4) ① 창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 ② 농어업 전문지식 보유자나 우수기술 사업자, 선도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 ③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지원 확인임. 일반법인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 보증료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총보증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던 법인 보증 한도도 40%로 확대하였음. 그리고 정부가 대형 농어업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동일인 보증 한도를 예외 적용하여 한도를 개인은 10억 원에서 30억 원, 법인은 1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였음. 또한, 가공·유통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소재 지역제한을 폐지하였음.

3.1.4. 농업금융시장 전반의 발전 방향 제시 연구

○ 박성재 외(2000)는 금융시장이 빠르게 혁신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금융 시스템과 정책금융, 농업금융 인프라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상호금융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 개선과제를 제시하면서 협동조합금융이 경쟁력을 갖추고 조합원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확대와 정책자금 전달 경로의 다양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합자금제 확대, 자금대여조건의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확대와 신용정보에 근거한 평가 시스템, 경영 컨설팅, 자산유동화 촉진 장치 등의 완비가 중요하며 농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회계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농업금융개혁위원회(2000)는 10명의 금융·회계전문가가 농업금융 발전 방향에 대하여 주제별로 의견을 제시한 종합 보고서임.

- 이 연구는 농업금융의 역할과 발전 방향, 농신보 제도 개선방안, 농업법인 경영실태 및 신용평가방법, 지역농협의 합병효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금융은 용자에 한정됨.

○ 김미복 외(2020)는 농식품 분야의 기술금융 실태와 과제를 검토하고 기술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농업 관련 R&D의 공공성과 독점이 어려운 특성, 수익실현의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농식품 산업의 기술금융이 확대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농식품 산업에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과제로써 기술개발 단계별 자금 조달창구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농식품 특화 기술 가치평가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음.

3.1.5. 농업인의 기업가 정신 강화 등 경영환경 개선 관련 연구

- 농업 분야의 투융자가 확대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농업경영체와 자금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임.
-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은 농업경영체의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의 재무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농업인의 소득신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김미복·김수석(2011)은 농업 관련 조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농가소득에 대한 공인된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임소영 외(2016)는 농업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며, 소득파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임소영 외(2022)는 농업소득이 파악됨으로써 농업인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소득파악의 편익으로 제시하면서 농업 분야 소득 파악 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3.2. 본 연구의 차별성

- 기존의 연구는 주로 융자, 보증, 투자에서 금융환경 및 농업경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금리 변동 상황과 농업인의 정책자금 수요 등 농업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다수의 연구에서는 농업금융이 경영체의 성장성이나 사업성보다는 담보 조달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함.
 - 농업경영체에 대한 투융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이 연구는 농업금융 중 정책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연구와 달리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및 민간 자본 투자 확충의 관점에서 농업금융의 발전방안을 다룬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음.

2

농업금융 현황과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1. 농업부문 자금투자 실태

1.1. 농업금융의 범위

- 농업금융은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으로 구분되며, 정책금융은 정부가 자금공급에 개입하고, 일반금융은 금융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임.
 - 시장기능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정책금융은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며 생긴 불확실성과 외부성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농업정책금융은 융자, 신용보증, 투자 형태로 운영되며 개인 경영체는 주로 융자 및 신용보증을 활용하는 반면, 농식품 기업, 대규모 농업법인을 중심으로는 투자 방식을 활용함.

1.2. 정책자금 융자 총규모와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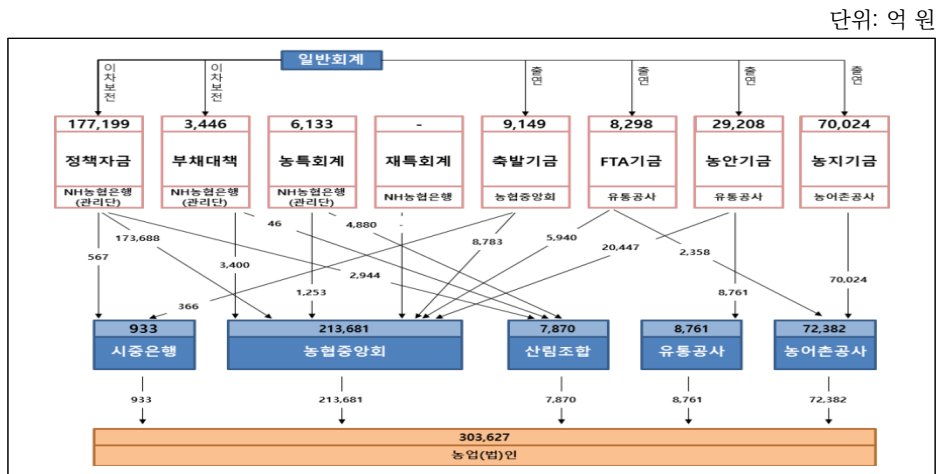
○ 농업정책자금 신규 공급은 2001년 10.6조 원에서 2007년 7.2조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22년 11.6조 원이 됨.

- 부채대책을 제외하면 9.8조 원(2001년)에서 5.8조 원(2005년)으로 감소하였다가 신규 부채대책이 거의 없어 최근에는 장기간 정채된 후 최근 농신보 제도개선,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함.

○ 금융의 역할이 농식품 분야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지만, 농업정책금융은 관리 및 관련 금융사업 업무가 재원별로 여러 기관에 분산됨.

- 농특회계와 이차보전자금 관리 및 대출업무는 농금원(舊 농업정책자금관리단)과 농협은행이 담당함.
- 농안기금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급함.
- 농지기금, FTA기금은 농어촌공사가 취급함.
- 축발기금은 농협은행 및 시중은행이 취급함.

〈그림 2-1〉 농업정책금융 전달체계(2021년 말 잔액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용자사업은 FTA 추진 등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마련되면서 정책사업이 새롭게 확대되어 정책 종류가 늘어나고 품목별로 세분되었음(김미복 외, 2016).

- 정책사업 중 민간 용자금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3조 5,556억 원으로 주로 농지기금, 농안기금 사업에 포함됨.

〈표 2-1〉 회계별 용자금 현황

단위: 백만 원, %

회계	'21년 예산		'22년 예산		증감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특(구조개선계정)	45,114	1.3%	38,980	1.1%	-6,134	-13.6
에특	5,416	0.2%	2,646	0.1%	-2,770	-51.1
농지	1,255,978	37.1%	1,337,452	37.6%	81,474	6.5
축발	490,634	14.5%	502,848	14.1%	12,214	2.5
FTA	200,117	5.9%	171,352	4.8%	-28,765	-14.4
농안	1,388,734	41.0%	1,502,719	42.3%	113,985	8.2
계	3,385,993	100.0%	3,555,997	100.0%	170,004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 농신보 보증 현황

○ (기금설립) 농신보는 신용도가 낮아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농어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됨.

- 농신보 기금은 주로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며,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금융기관, 농림수산단체 등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에 의해 조성되기도 함.

○ (보증규모) 2021년 기준 보증잔액은 약 16조 3,585억 원 수준이고, 이 중 갹신보증을 포함한 신규보증금액은 8조 147억 원임.

- 2016년 대비 농신보의 보증규모는 34%(잔액)/26%(신규) 증가하여 설립 이후 총 156조 6,839억 원을 지원하였음.
- 신규보증금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건수는 줄고 있어 보증액이 규모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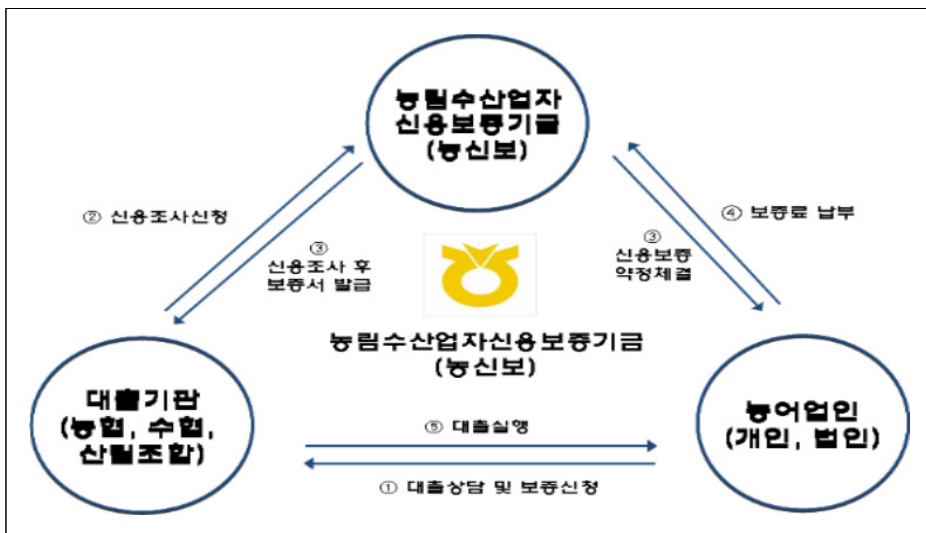
〈표 2-2〉 주요사업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실적	2017년 실적	2018년 실적	2019년 실적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출연금	1,207	1,222	1,240	1,269	1,386	1,833
신규보증	63,427	67,462	79,201	86,112	81,871	80,147
보증잔액	121,804	133,968	148,906	161,117	164,399	163,585
대위변제	1,473	2,092	2,776	3,265	3,073	3,021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23), 《농신보업무현황》.

〈그림 2-2〉 신용보증 당사자 관계



자료: 김미복 외(2016) 재인용.

1.4.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현황

○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유망한 농식품 경영체를 직접 발굴하고 투자함으로써 성장시킬 수 있도록 민간자본이 마중물 역할을 담당함.

- 농식품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기반하여 용자·보조 위주의 농업금융방식이 민간이 투자하는 선진 농업금융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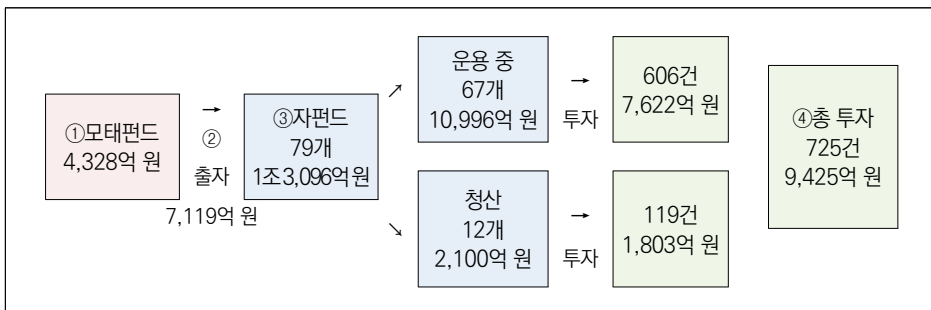
* 농식품 경영체: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

○ (주요 현황) 민간출자 5,977억 원을 정부출자 7,119억 원에 매칭하여 자펀드 79개를 1조 3,096억 원 규모로 결성('22년 4월 농식품 계정 기준).

- (주)엔씽, 우듬지팜(스마트팜), (주)컬리(신선식품 유통플랫폼), (주)더맘마(동네마트 유통플랫폼), (주)프레시지(HMR 밀키트(meal-kit)) 등 우수사례 창출함.
- 총 79개 자펀드가 있으며 그중 일반펀드 33개(6,989억 원), 특수목적펀드 46개(6,107억 원)로서 총 1조 3,096억 원이 결성됨(모태 7,119억 원, 민간 5,977억 원).

○ 농식품모태펀드로부터 결성한 자펀드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현황은 경영체 460개 725건, 9,425억 원이 투자되어 전체 결성금액 1조 3,096억 원 대비 투자소진율은 72.0%임(집행기준).

〈그림 2-3〉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조합 투자 현황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2. 농업부문 금융시장 여건 변화

2.1. 농업부문 금융수요와 환경 변화

○ 규모화된 전업농가(전문농가⁵⁾)의 증가.

- 논 3ha 이상의 농가비율은 2005년 5.4%에서 2020년 4.0%로 감소하였지만, 같은 기간 이들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에서의 비율은 29.5%에서 46.1%로 증가하였음.
- 밭 2ha 이상 농가의 비율 역시 2005년 3.7%에서 2020년 4.6%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27.7%에서 56.7%로 증가하였음.
- 축산 전문농가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한우 30두 이상 농가의 비중은 15년간 5배 이상이 되었고, 이들은 전체 사육두수의 83%를 차지함.

〈표 2-3〉 규모화된 전업농가(전문농가) 추이

단위: %

경영규모	농가호수 비율			경지면적(사육두수) 비율		
	2005	2010	2020	2005	2010	2020
논 3ha 이상	5.4	6.5	4.0	29.5	37.8	46.1
밭 2ha 이상	3.7	5.0	4.6	27.7	35.4	56.7
시설 2천 평 이상	14.4	17.5	12.5	51.7	50.7	49.8
한우 30두 이상	7.0	15.8	37.9	47.2	64.7	83.4
젖소 50두 이상	41.5	76.5	75.0	75.7	92.5	91.9
돼지 1천두 이상	25.2	37.2	71.0	79.6	87.7	93.8
닭 3만두 이상	1.2	1.1	1.8(산란계) 15.3(육계)	81.7	84.4	90.5(산란계) 99.5(육계)

자료: 기획재정부(2013: 17),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안용(2014); 통계청(2021), 《2020 농림어업총조사》.

5) 전문농가는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이며, 주업농가는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임.

○ 기술기반 금융 확대 추세

- 기술금융은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사업성을 중시한 자금공급체계임.
- 정부에서도 2010년대 이후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 기술금융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이에 기술평가와 금융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력 평가기관(TB)을 설립함으로써 투자에 의한 직접금융이 확대되고,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추진됨.

〈표 2-4〉 기술금융 관련 주요 프로그램 규모

단위: 원

구분	주체	프로그램	규모	비고
간접	보증	공공	기술보증 ⁶⁾	잔액 2018. 12
	융자	공공	온렌딩대출	공급 2018. 6
		공공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 2019
		공공	창업기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예산 2019
		민간	기술신용대출	잔액 2019. 12
직접	투자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 2019
		민간	IP펀드	투자 2019

자료: 김미복 외(2020) 재인용.

○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대형 투자자는 친환경 혹은 건강식품 업계에 투자,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창출을 기대함(삼정KPMG).

- 대형 투자자는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 이력을 갖춘 농업법인, 스마트 농업 관련 분야에 관심을 보여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임.

○ 글로벌 AgTech 시장은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농기계 산업도 첨단산업으로 진화 중인 만큼 농업구조와는 별개로 투자 전망은 밝은 편임.

- 글로벌 AgTech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2%씩 성장하여 2030년까지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precedence research).

⁶⁾ 기술평가보증금이 22.1조 원, R&D보증금이 5.3조 원, IP보증 0.9조 원임.

○ 농업부문에서도 담보력 중심이 아닌 신규인력의 창업농 육성, 기술평가에 기초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기술금융이 요구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편임.

- 일례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IP금융 지원액을 기준으로 IP금융에서 살펴보면 약 1% 정도를 전체 IP금융에서 차지함.
- 농협은행은 2019년 8월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2020년 8월 기준 108억 원임.

〈표 2-5〉 시중 5대 은행 IP담보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총대출액	1,736	1,608	515	470	108

자료: 김미복 외(2020) 재인용.

〈농식품 분야 IP담보대출 사례〉⁷⁾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식재산금융 협약을 통해 농식품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김치 제조업체인 '도미솔식품'은 2018년 김치양념에 대한 등록 특허를 획득하여 특허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음. 올해 8월 IP담보대출을 통해 자금 10억 원을 조달하여 가공공장 추가 건설에 활용
-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IP담보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3월 '지플러스생명과학'은 IP담보대출을 통해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

〈기술 개발 후 자금 조달 애로사항(김미복 외, 2020)〉

- OO기업은 기술개발 및 제품을 정부연구과제를 통해 완성하였지만 판매할 시장이 없어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열)로 해당제품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
 - OO기업은 당사 기술이 농림부의 신기술인증을 받은 상황이기때 농신보, 농협을 통해 1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으나 농협에서 대출심사과정 중 거절
 - 자격미달 사유는 창업기업이자 소기업으로 대표자 6억 원 등 과다채무, 담보부족이 제시되는 등 대출과정에서 신기술인증의 장점이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은 창업 초기 농축산물 플라스마 약취제거 기술의 우수기술확인서를 농기평에서 받았으며 확인서에는 기술 점수포함하여 대출자금의 목적 및 규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
 - 실제로 대출을 받고자 농협 2~3개 지점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농협에서는 신생업체로서 창업초기임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대출 여부를 사유로 자격요건 미달로 평가
 - 기업은행에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TCB)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IP담보대출로 1억 7천만 원을 기업은행에서 조달
- 기술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낮다는 의견
 - △△기업은 특허법인을 통해 올해 IP담보대출을 받기 전 기술평가를 받음. 기술가치 평가 결과는 기술 2건에 대하여 약 4억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지만, 그중 40%만 담보가치로 인정되어 기업은행에서는 1억 7천만 원을 대출
 -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농식품 분야 기술의 담보인정비율에 대해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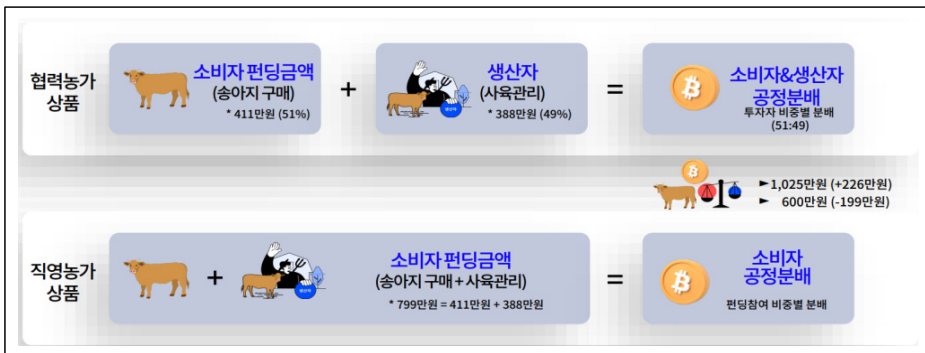
⁷⁾ 해당 사례는 내일신문(2020. 10. 12.), “농식품지식재산 담보로 자금대출”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2.2. 금융시장 여건 변화

○ 최근 조각투자⁸⁾ 시장 확대

- 고가의 자산에 대한 접근성 확대, 분할 소유권 구매, 자산가격의 상승과 자산에 의한 현금흐름이 지속된다면 예상되는 수익 등으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함.

〈그림 2-4〉 뱅카우 투자구조



자료: 뱅카우 내부자료.

○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제공을 활용한 금융기업 가능성

- 뱅카우 사례를 보면, 단순 송아지 구매 펀딩뿐 아니라 안전한 투자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정보 제공, 투자 자산 사육정보 분석 및 제공, 수익화 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 다양한 금융수단의 융·복합화

- 메자닌 투자 증가 등 다양한 금융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고, 이는 여러 투자수단의 융·복합화가 포함됨.

⁸⁾ 음악저작권, 예술, 부동산, 와인 등 여러 명이 하나의 자산을 나누어 구매하는 시장.

- 중진공 투융자 복합금융: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함.
- 보증연계투자: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미래성장 가능성과 가치창출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투융자 복합금융〉⁹⁾

- 융자범위
 - 시설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시험검사장비 도입,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일부 제외)
 - 운전자금: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 경영으로 소요되는 자금
- 대출방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 대출금리: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업력
 -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 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3. 농식품 분야 금융시장의 발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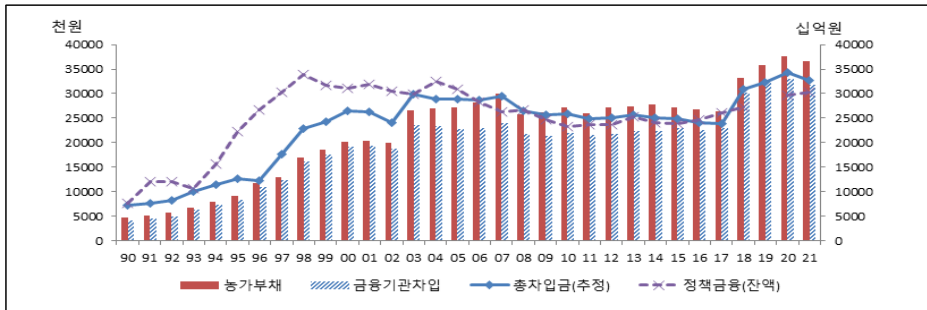
3.1. 농업금융의 문제점

-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농업부문은 사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공공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많이 나타나고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편임.
- 농업은 안전한 식품의 공급, 식량안보 기능의 제공, 자연경관의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

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농가경제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가부채에서 금융기관 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내외인데, 이를 농가 수로 곱해 농가 전체 금융기관 차입금을 추정하고 정책금융 잔액과 비교해보면, 90% 이상의 농가부채가 정책금융 자금일 것으로 추정됨.

〈그림 2-5〉 농업정책금융과 농가부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농업부문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정책금융 의존도가 매우 높고,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제외한 민간 시장의 역할은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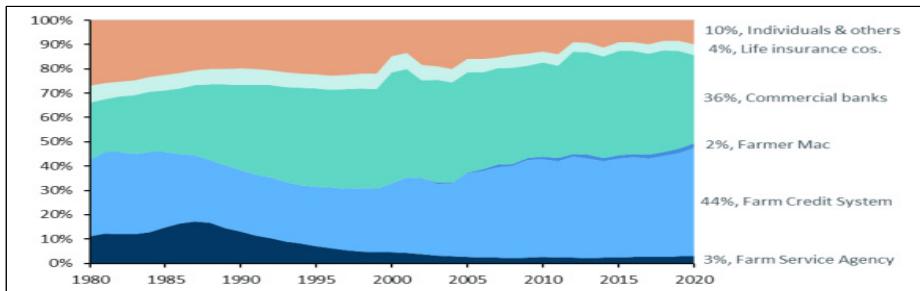
- 농식품 분야에서 농가단위의 순수 민간금융시장 활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농업투자 측면에서도 정부정책금융 등 공적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자본 감모분을 보전하는 재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순자본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황의식 외, 2017).

- 즉, 농업에서 정부가 투자를 지속하여 왔지만, 쌀, 축산 등 감가상각이 높은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

○ 반면, 미국 농업부문 민간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대출기관별 시장점유율에서 시중은행 점유율은 36%로서 미국 농업금융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큼.

〈그림 2-6〉 미국 총농가부채의 대출기관별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CRS(2022), Agricultural Credit: Institution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 (미래수익 불확실성) 국제시장, 자연재해 등 외부 위협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은 농업투자의 미래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를 기피함.

- 산업별 투입·회임기간이 타 산업은 4~6년인데 비해 농식품 분야는 7.7년으로서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됨.

○ (정보 비대칭성) 농가의 경영 능력 평가는 미래수익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기관과 농가에서 정보의 차이가 존재함.

- 농가의 능력에 따른 것인지 외부요인으로 인한 영향 때문인지 외부 불확실성으로 수익실현을 구분하기 어려워 미래 투자수익을 공유하는 직접금융이 농업부문에서 발달에 제약이 있음.

○ (정보 신뢰성) 농가에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증명된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으며, 농가와 금융기관 간 기초적인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함.

- 농가의 경영 상태와 관련하여 상호 신뢰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발생함.

- 이러한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공급이 농업부문에
서 부족하게 되어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강조되어 왔으나 궁극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농업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농업
성장 발판 마련의 핵심과제임.

3.2. 농업금융의 발전 방향과 과제

3.2.1. 기본 방향

- 농업금융은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 방식은 농식품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융자는 농협
을 비롯한 농업 관련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부자금이 대표적임.
 - 보증은 농림수산업자를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농업금융에서 민간의 비중이 커지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
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각 영역이 보다 통합적·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컨대,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보증을 통해 융자
를 추가 제공하여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민간 분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투자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모태펀드와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를
제시함.

- 투자 확대를 위한 시사점 모색의 일환으로서 외국의 선진 투자 사례를 살펴 보고 세컨더리 시장의 역할과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함.
- 용자와 관련해서는 용자 심사와 자금 지원 결정 등에 있어 민간의 재량권이 많이 활용되는 이차보전 방식의 확대 필요성과 기준에 대해서 검토함.
- 투자와 용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밑받침으로서 보증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증 담당 기관의 업무 및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투자, 용자, 보증 업무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은 농업경영체의 정보가 확보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3.2.2. 민간부문의 농식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 농식품모태펀드를 비롯한 민간 투자 유인 확대를 위해서는 경영체 발굴, 펀드 조성 및 투자, 투자금 회수의 단계별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 경영체와 민간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피투자대상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민간 투자자는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한편, 농식품 경영체 또한 투자기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투자의 첫 단계인 양자 간 연결 체계 확립이 중요함.
 - 농식품 유관기관¹⁰⁾이 보유하고 있는 농식품 경영체의 투자 관련 정보를 농식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 민간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 투자자의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역으로, 농식품 경영체에는 투자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자 친화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¹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 투자자금 조성에서 민간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펀드와 민간 펀드의 역할을 조정하여 민간 펀드의 조성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모펀드가 주도하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농식품모태펀드가 주도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운영이 필요함.
- 예를 들면, 보다 정책적 성격이 강한 특수목적펀드는 정책펀드가 담당하고 일반펀드는 민간 모펀드가 담당함.
- 민간 모펀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

○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하여 투자자의 범위나 투자 방식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특정요건을 갖춘 유한회사,¹¹⁾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만 단독으로 농식품자펀드 결성이 가능하나(농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 1항), 창업 초기기업 발굴·육성 및 투자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도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초기·소규모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르면 지분투자,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부인수권부사채 인수, 프로젝트 투자만 허용됨.
- 기존 투자방식하에서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이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기업가치 산정 단계로, 특히 매출액, 영업이익 등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한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산정 시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11)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보유.

○ 따라서 신속한 투자를 위해 기업가치 산정 없이 우선 투자를 시행하고, 향후 후속투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 기존 투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용자와 투자의 결합을 통해 투자 규모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투자목적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와 투자조건부 용자를 통해 농식품 경영체가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용자를 받음으로써 자금 조달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농식품자펀드의 유동성 확보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후속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자펀드의 투자목적 차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조합원 보호와 투자위험 관리를 위해 조합이 설립하고 100%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를 통해 차입을 시행함.
- 이를 위해서는 SPC 설립 및 금융기관 차입 근거 마련, SPC의 업무집행 사항, SPC에 대한 보증조항 등에 관한 법률을 신설해야 함.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SPC 차입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도록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투자조건부 용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초기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추가자금을 공급받고 후속투자 유치 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이며, 금융기관은 그 대가로 별도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음.

○ 민간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방식을 다양화하여 농식품 투자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그 일환으로서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컨더리 펀드는 자펀드가 투자대상에 직접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구주)이나 펀드에 출자한 출자자(LP)의 지분을 인수함.
 - 투자 위험이 낮고 투자 후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농식품 투자에 효과적임.
-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 농식품자펀드가 보유한 투자자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는 KSM(KRX Startup Market), VC 구주유통망, K-OTC 시장이 있음.
 - 이와 같은 장외 유통 플랫폼은 기업공개에 비해 기업 공시부담이 적고 투자 자금의 회수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음.

3.2.3. 외국의 사례를 통한 장기적 지향점 도출

- 이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라보뱅크와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의 해외 투자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선진 투자기관의 투자 방향과 향후 국내 투자 방향을 검토함.
- 외국의 선진 투자기관들은 환경 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농식품산업에 투자하고 있음.
 - 환경, 지속가능성, 혁신 등으로 논의의 패러다임이 이어짐.
- 반면 국내 농식품산업 분야 투자는 농업경영체 및 농가의 이윤 제고를 주된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시장은 투자시장의 성숙도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 탄소중립, 지속 가능 개발 등의 가치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해외 투자 사례와 같은 기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 라보뱅크의 경우, 지속가능성 정책(sustainability policies)을 수립하여 대상 사업체의 지속가능성 성과(sustainability performance)를 측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며 ESG 관련 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투자대상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측정되면 이 결과는 해당업체의 자금 조달 결정에 활용됨.
- 미국의 농업금융체계는 농업조합금융시스템(Farm Credit System: FCS) 및 Farmer Mac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자금 조달이 민간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시장금리가 시차 없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음.
- FCS의 리스크 구조는 연대채무의 특성이 있는데, 이는 각 기관이 리스크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음(황의식 외, 2017).
 - 부실채권 발생 시 조합, 농업신용시스템은행, 농업신용시스템보험공사가 손실을 담당하고, 농업금융시스템이 조합 청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함.
- Farmer Mac은 자본조달을 위해 기존 농업부문 자산(부동산, rural infrastructure, 재생에너지, agri-business 등)을 재평가하여 채권을 발행하며 이것이 농업부문 자산유동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음.

- Farmer Mac은 1987년 경제위기 시 농업부문 구제금융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시장을 도입하였으며 정부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어 빠르게 성장하였음.
- Farmer Mac은 상장기업이지만 동시에 정부지원기업(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 GSE)이기 때문에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었음.

3.2.4. 농식품 기술금융의 한계와 대응

- 기술금융은 AgTech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그린바이오, 농업 관련 하드웨어(첨단기기 및 장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음.
-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이 투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에 대한 인식과 투자기반 등 제반 환경을 조성 및 개선해야 함.
- 그러나 농식품 기술금융의 확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가치 평가의 어려움, 무형자산에 대한 낮은 인식, 높은 기술금융 관련 비용 등임.
- 농식품 기술금융(IP담보대출, IP보증대출, 현물출자, IP투자 등)의 기준이 되는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부재, 기술금융 전문가의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분야에 특화하여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금융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의 구축이 필요함.
 - 우선은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표준산업별 로열티율 데이터, 할인율 데이터, 각종 재무비율 데이터 등을 집적하고 기술가치 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함.
 - 이를 통해 가치평가가 난해하다는 인식을 해소하고 공신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농식품 분야의 기술자산을 담보로 받아들여 주는 투자자와 전문기관의 수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이러한 인적 자본의 부족은 무형자산의 위험성에 대한 과대평가로 이어짐.
-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기술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금융 전문가와 변리사 등 기술금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문가 영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금융 확대의 세 번째 저해요인은 기술평가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금융 관련 제반 비용임.
 - 예를 들면, 기술자산의 가치가 1억에서 5억 원 사이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의 판결이 불인정될 경우, 현물출자를 인정받기 위해 투입된 제반 비용(법무사 대행 비용 수백만 원, 가치평가 수수료 약 1,500만 원 이상, 그 외 제반 행정처리 비용 등)이 지출되어 자산가치에 비해 평가비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됨.
 - 이는 매물 비용의 위험을 증가시켜 IP자금 조달의 매력을 감소시킴.
- 이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농식품 경영체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관련 제반 비용(평가수수료, 법무사 혹은 변리사 서비스 비용, IP담보대출 혹은 현물출자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5. 이차보전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¹²⁾

- 재정용자는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정책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는 면에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거나 용자 집행과 관리에 비용이 발생하고 재정지원체계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재정 용자 중 일부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만, 용자방식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측면이나 자금 지원방식 전환에 따르는 제도적 개편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의 순편익을 평가하고 비교하여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차보전이 이루어져야 함.

3.2.6. 농신보의 역할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농신보의 관리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만, 농림축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높지 않으므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신용보증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즉각적인 제도개선이 일어나기 어려움.
- 이에 신용보증이 농림축산업 정책과 보다 연계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을 금융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의결기관을 비롯하여 정책의 의사결정 체계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함.

¹²⁾ 다른 논의에서는 정책대상자의 자금 조달 규모와 관련해서 민간의 비중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 논의는 자금지원심사 및 자금회수에서 민간금융기관의 역량을 보다 많이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앞선 다른 논의와는 다소 결이 다름.

○ 신용보증기관인 농신보와 대출기관인 농협중앙회를 분리하여 농신보가 독립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가 기술금융을 지원하도록 기술평가나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을 두어 보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목적용 모형 개발, 기술기반의 보증대상자에 대한 부분보증비율 인상 및 보증료를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을 비롯한 6차 사업을 포괄하여 신용 및 기술보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과의 연계성을 전제로, 동일인 보증총액한도 확대가 필요함.
- 농업·농촌 분야의 청년 창업 희망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 금융시스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농가의 자금이용 실태와 문제, 농식품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농어업금융의 동향, 농업경영체의 자금이용 실태와 애로사항 파악, 농산업부문 산업동향 정보 제공 등 농업금융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신보 및 기보와 같이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농업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화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의 업무영역 확대는 농업정책금융의 타 영역과의 업무 조정, 농특회계 농신보 기금 출연 확대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
- 농림축산 및 연계업의 신용보증업무, 신용 및 기술정보업무와 더불어 농업정책금융의 직접대출까지 농신보가 중심이 되어 관리함으로써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술기반 농림축산경영체에 대해 농신보가 1차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되, 이후 사업성 및 자금회수 가능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 부분을 투자로 전환하도록 연계하는 보증연계투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의 모형은 초기 형태의 신용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모형의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함.

3.2.7. 농식품 경영체의 경영정보 확보 및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

- 농식품 경영체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무정보를 확보하여 외부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신뢰할 만한 재무자료를 작성하는 농업경영체의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농식품 투용자가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무자료의 작성이 어려운 이유는 주로 경영(회계)기록의 필요성 부족, 기록 시간 부족, 기록방법의 어려움, 회계지식의 부족 등임.
- 농식품 경영체(특히 1차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경영체)가 신뢰를 갖춘 재무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회계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고시된 농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농업경영체에게 경영효율화 지원사업 등의 자금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회계기록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출된 재무제표에 기초한 차등 지원 및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농업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전산회계프로그램에 농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근본적으로는 국세청에 매출·매입자료를 제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세제상 농업부문의 소득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국세청 소득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 등록제, 농업경영체 소득신고, 부가가치세 납세제도의 도입 등 농업경영체의 소득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해외 농식품 금융 사례와 시사점

1. 네덜란드 라보뱅크(Rabobank)¹³⁾

1.1. 라보뱅크 현황

○ 라보뱅크(Rabobank)는 19세기 말 네덜란드 농가 및 원예가들이 설립한 소규모 신용조합(credit union)에서 출발하였음.

- 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농가의 신용 대출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신용 대출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농가들은 신용협동조합(credit cooperatives)을 설립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함.
- 농가들은 주주(stakeholder)가 아니라 협동조합 회원으로서 제한된 신용 대출에 함께 대응하며 조합원으로서 창출한 자신들의 수익을 사회와 공유해 나가는 모형을 제시함.

¹³⁾ The cooperative Rabobank(2023b), Our Impact in 2022. Rabobank Communications & Corporate Affairs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이러한 협동조합 모형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곧 다른 일반 시민에게도 호응을 받아 시민이 예금을 해당 협동조합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은행의 위상이 공고해짐.

○ 지역적으로 발달한 협동조합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라보뱅크(The cooperative Rabobank)의 설립으로 이어짐.

- 현재 라보뱅크는 37개 국가에서 4만 7,000여 명이 근무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음.
- 라보뱅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식품 및 농업부문(The Food and Agriculture, F&A sector)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네덜란드 국내시장에서는 개인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모기지,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라보뱅크는 네덜란드 국내시장에서 78개 지역은행을 운영 중이며, 144개 사무소, 220만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음(The cooperative Rabobank, 2023a).

- 국내 개인 고객 수는 830만 명 규모에 달하며, 기업 고객 수는 80만 개에 달함.
- 세부 분야별로는 개인 모기지(private mortgage) 1,930억 유로, 예금(savings) 1,529억 유로, 무역, 산업, 서비스 분야 대출(lending to trade, industry and services) 754억 유로, 식품 및 농업 분야 대출(lending to Food&Agri) 404억 유로, 운용 자산(assets under management) 505억 유로, 임대(leasing) 13억 유로, BPD 거래(Bouwfonds¹⁴⁾ Property Development transaction) 6조 810억 유로 규모를 보임.

¹⁴⁾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 부동산 기업임.

○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36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대륙별 분포는 북미 34.5%, 유럽 27.6%, 호주 20.6%, 남미 11.9%, 아시아 5.3%, 아프리카 0.2% 등으로 파악됨.

- 세부 분야별로는 식품 및 농업 분야 민간부문 대출(private sector lending to Food&Agri) 730억 유로, 무역, 산업, 서비스 분야 민간부문 대출(private sector lending to trade, industry, and services) 390억 유로, 임대(leasing) 364억 유로 규모를 보임(The cooperative Rabobank, 2023a).

○ 라보뱅크의 태동이 지역 협동조합인 만큼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업체로 성장함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역시 강조됨.

- 네덜란드 국내의 경우 지자체 및 지역에서 생동감 있고 포괄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해 온 바가 큼.
-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라보뱅크 고객들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가능성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라보뱅크는 ‘더 좋은 세계를 함께 성장시키기(Growing a better world together)’를 미션으로 설정함.

1.2. 라보뱅크 미션과 농식품산업

○ 앞서 기술된 ‘Growing a better world together’라는 미션하에 라보뱅크는 협동조합에 근간을 둔 만큼 여타 금융업체와 차별되게 지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 공동체 복지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함.

- 이러한 노력은 식품(food), 에너지(energy), 보다 포괄적인 사회(more inclusive society)로의 전환을 강조하여, 각각 1) 푸드 시스템 전환(Food System Transition), 2)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3) 보다 포괄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전환(Transition toward a More Inclusive Society)을 주요 사업 목표로 설정함.

○ 이 중 농식품산업 분야와 관련이 깊은 분야는 ‘푸드 시스템 전환’으로, 라보뱅크는 협동조합 은행의 역할에 충실하게 네덜란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식품 및 농업부문(Food&Agri: F&A)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진행해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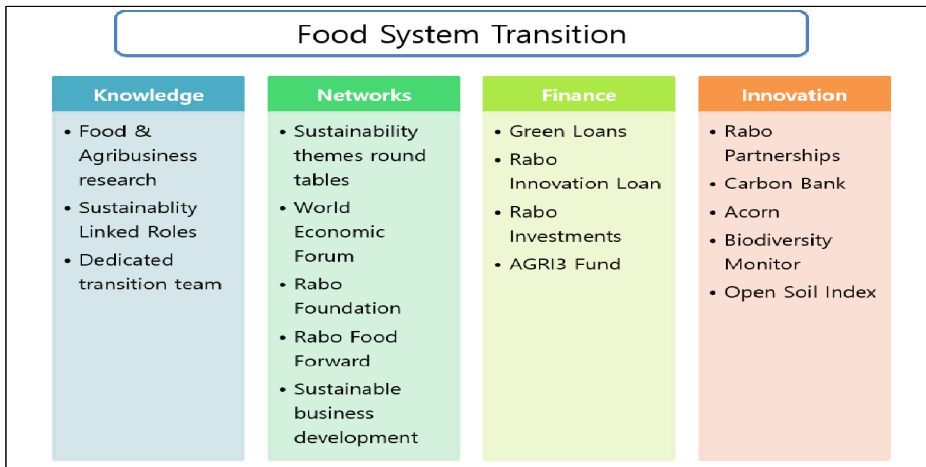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F&A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s)’이나 ‘통합형 금융 솔루션(blended finance solutions)’과 같은 금융상품 및 지속가능 사업 모델을 위한 이자 환급(interest rebates) 등을 제공함.

- 아울러 라보뱅크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분석팀인 ‘RaboResearch Food&Agribusiness’¹⁵⁾는 F&A부문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 정부, 시민 사회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분석 노하우를 관련 산업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함.

○ 라보뱅크의 푸드 시스템 전환에 대한 기여는 지식(knowledge), 네트워크(networks), 금융(finance), 혁신(innovation)의 네 가지부문으로 정리될 수 있음<그림 3-1>.

¹⁵⁾ Rabobank(<https://research.rabobank.com/>), 검색일: 2023. 5. 15.

〈그림 3-1〉 라보뱅크의 푸드 시스템 전환에 대한 기여



자료: The cooperative Rabobank(2023b)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라보뱅크가 협동조합 은행이자 F&A부문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푸드 시스템 전환은 글로벌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라보뱅크는 ‘식품·토지이용연합(Food and Land Use Coalition: FLUC)’¹⁶⁾이 2050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제시한 10개 주제 중 푸드 시스템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5개 주제를 선정하였음.
- 관련 5개 주제는 1) 생산적이고 재생적인 농업(productive and regenerative agriculture), 2) 자연 보호 및 복원(protecting and restoring nature),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양 장려(promoting healthy and sustainable diets), 4) 음식 손실 및 쓰레기 저감(reducing food loss&waste), 5) 농촌 생계 강화(stronger rural livelihoods) 등이 해당됨.

¹⁶⁾ Food and Land Use Coalition(<https://www.foodandlandusecoalition.org/>), 검색일: 2023. 5. 15.

○ 이상의 FLUC 5개 주제를 기반으로 라보뱅크는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푸드 시스템 전환과 관련 산업의 상업적 경쟁력 강화를 함께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축(pillar)을 설정함.

- 첫째, 농촌(rural)부문을 위해 요구되는 전환에 대한 자문 능력 및 은행 역량을 구축하는 것임.
- 둘째, 이러한 역량이 도매(wholesale) 고객들을 대상으로 더 개선된 전환 관련 자문가 및 재무가가 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임.
- 셋째, 가치사슬을 공고히 하는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rural)과 도매(wholesale)부문 간에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임.
- 넷째, 푸드 시스템 전환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장시키는 것임.

○ 푸드 시스템 전환과 함께 F&A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탄소 저감 등 환경 친화적 활동을 위한 라보뱅크의 역할임.

- 라보뱅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금융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생물다양성 공약을 위한 금융(Finance for Biodiversity Pledge)’¹⁷⁾에 최초로 서명한 금융기관 중 하나임.
- 또한, 라보뱅크는 UN 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주도로 설립된 ‘탄소중립 은행 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NZBA)’¹⁸⁾에 가입하여 파리기후협정 목표 1.5℃를 준수하고 2050년까지 금융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함.
- 이러한 탄소 중립 기조에 맞추어 라보뱅크는 2022년에 F&A 포트폴리오 내에서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8개부문 및 지역을 선정하여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제시함.

¹⁷⁾ FfBF(<https://www.financeforbiodiversity.org/>), 검색일: 2023. 5. 17.

¹⁸⁾ UNEPFI(<https://www.unepfi.org/net-zero-banking/>), 검색일: 2023. 5. 17.

1.3. 라보뱅크 F&A부문 투자 사례

○ 앞서 기술된 FLUC 5개 주제 및 탄소 중립 실현 등 F&A부문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라보뱅크는 관련 고객들에게 보다 적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션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자 노력함.

- 지속가능성이 고려되는 F&A부문 기업들에 이자율 할인(reduced interest rates), 분할 상환금 확대(extended repayment terms), 낮은 할부금(lower installments)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주로 제시됨.

○ 보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네덜란드 F&A부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Duurzaamheidsmatrix'라고 명명된 '지속가능성 매트릭스(Sustainability Matrix)'를 적용 및 평가하여 'A 라벨' 고객들의 범위를 확대함.

- A 라벨로 선정된 F&A부문 고객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연계된 보상 체계 등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함.
- 일례로 2022년에 500여 개의 낙농가가 0.2% 이자율 할인 혜택을 받은 바 있음.
- 라보뱅크는 100만 유로 예산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상품의 적용 범위를 넓히 고자 노력 중임.

1.3.1. 지속가능 연계 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

○ '지속가능 연계 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핵심 수행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를 연계한 라보뱅크의 대표적 금융상품임.

- 고객이 기결정된 KPIs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더 낮은 이자율이 제공되는 금융상품 등이 이에 해당함.

- KPIs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SDG)와 개념을 공유하며,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GHG-emissions reduction)’, ‘수자원 및 쓰레기 저감(water&waste reduction)’, ‘물 사용에서의 효율성 증가(increased efficiency in water usage)’, ‘신재생 에너지 사용 증대(increased use of renewable energy)’ 등이 포함됨.

○ F&A부문의 경우 2022년에 주요부문으로 승인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기업 예시로는 식품 포장용 콜라겐(collagen) 시장에서 세계 선도 기업의 하나인 Devro¹⁹⁾ 사례를 들 수 있음.

- Devro는 탄소중립 배출 scope1 및 scope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 물 사용 폐기물 매립 등의 항목이 KPIs에 해당되어 라보뱅크로부터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을 조달받음.
-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Devro의 혁신성은 거래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렌즈(sustainability lens)’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기업과 은행 상호간의 ESG 경영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음.
- 구체적으로 Devro는 매년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ESG 리스크 등급(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Risk Rating)을 공표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주들이 지속가능성 성과(sustainability performance)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은행들을 거래 대상으로 선택함.
- 선택된 은행들은 자신들의 ESG 리스크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라보뱅크의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이 이에 해당함.
- 이러한 과정은 은행 그룹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프로세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라보뱅크는 Devro의 혁신적 시도가 근 미래 각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¹⁹⁾ Devro(<https://www.devro.com/sustainability/>), 검색일: 2023. 5. 17.

〈그림 3-2〉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사례: Devro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 Climate
- Water
- Waste
- People
- Communities
- Health and Safety
- Responsible Sourcing
- Customers & Consumers
- Business Ethics
- Global Statements and Policies

At Devro, sustainability is integral to us and is part of our DNA. We act with honesty and integrity in everything we do. Conducting our business fairly and ethically throughout the world is at the heart of our strategy. We pride ourselves on our respect for the planet, our people and the communities we deal with. We manufacture across a global platform and we operate with care and commitment to our workforce's wellbeing and with that of our local communities in all our regions. We are dedicated to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employees, which is fundamental to how we operate. We are continually reducing our environmental impact to benefit our business, communities, and future generations.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suppliers of edible collagen casings for food, we develop trusted and innovative products for our customers. Our primary product utilises a waste product from animal protein production, enhances production efficiency, reduces waste and provides cost saving benefits to our customers.

SUSTAINABILITY GOALS, TARGETS & COMMITMENTS

Climate, Water and Waste metrics:

Metric	2023 Baseline	2023 Intermediate	2030 Stretch	2050 Aspiration
Carbon Footprint				
Scope 1 and 2	-25% Relative (per km)	-25% Net	-25% Net	Zero Carbon
Renewable Electricity	50%	75%	75%	100%
Water usage				
	-20% Relative (per km)	-20% Net	-20% Net	-50% Net
Waste reduction				
Packaging removal	-30% product waste	Zero product waste	Zero product waste	Zero waste to landfill 40%

자료: Devro(<https://www.devro.com/sustainability/>), 검색일: 2023. 5. 17.

○ ‘지속가능 연계 대출’의 다른 기업 사례로는 음료 시장의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Coca-Cola Euro pacific Partners: CCEP)’ 사례를 들 수 있음.

-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는 코카콜라 공급업자들로 하여금 가치사슬 단계에서 탄소 배출 scope3와 관련하여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함.
- 이에 준하여 라보뱅크는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에 3억 5,000만 유로 규모의 ‘지속가능 연계 대출’을 제공하였으며, 코카콜라는 이를 기반으로 scope 3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공급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

1.3.2. 라보 혁신 대출(Rabo Innovation Loan)

○ ‘라보 혁신 대출(Rabo Innovation Loan)’은 혁신을 추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정된 금융상품으로 일반 은행에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체가 일정 여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 가능함.

○ 라보뱅크는 2022년까지 네덜란드 내 F&A부문에서 52개 고객을 대상으로 ‘혁신 대출’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총규모는 2,200만 유로에 달함.

- 아울러 2022년 기준 네덜란드 내 F&A부문에서 16개의 새로운 ‘혁신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그 규모는 대출당 15만 유로임.

○ 구체적 사례로는 곤충에서 식용 단백질을 추출하여 가공식품을 만드는 식용 곤충 관련 기업인 RavenFeed²⁰⁾를 들 수 있음.

- 라보뱅크는 RavenFeed가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곤충 농장에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사업에 ‘혁신 대출’을 제공함.

1.3.3. 라보 녹색 대출(Rabo Green Loan)

○ 네덜란드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라보 녹색 은행(Rabo Green Bank)’을 통해 지속가능 관련 사업 프로젝트에 예금을 투자할 수 있음.

○ 2022년 기준 새로 대출 승인된 규모는 4억 9,700만 유로에 달함.

- 이 중 2,300만 유로가 F&A부문 고객들에게 승인되었으며, 대부분은 유기 농에 초점을 맞춘 농가임.

○ 구체적 사례로는 농업부문에서 유기 종자(organic seeds)를 생산하는 De Bolster B.V.²¹⁾가 ‘라보 녹색 은행’을 통해 ‘녹색 대출’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음.

²⁰⁾ RavenFeed(<https://ravenfeed.nl/>), 검색일: 2023. 5. 17.

²¹⁾ De Bolster biologische zaden(<https://www.bolster.nl/>), 검색일: 2023. 5. 17.

1.3.4. 라보 임팩트 대출(Rabo Impact Loan)

-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사업체들에 부여되는 여러 ‘지속가능성 라벨(sustainability label)’²²⁾들 중 최소 한 개 이상 보유한 네덜란드 사업체는 ‘라보 임팩트 론(Rabo Impact Loan)’에 지원하여 이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22년 기준, 네덜란드 F&A부문의 경우 9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약 1억 1,200만 유로 규모의 대출이 승인된 바 있음.

1.3.5. AGRI3 펀드(AGRI3 Fund)

-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 및 계획들은 일반적으로 자원 확보가 쉽지 않은 편이어서 사업 수행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마련임.
 - 이 경우 제휴사 및 주주들과의 연계를 통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재정 솔루션(blended finance solutions)이 요구됨.
- 이러한 통합 재정 솔루션으로서 라보뱅크는 ‘UN 환경 프로그램(UNEP)’, ‘네덜란드 개발은행(Dutch Development Bank; Nederlandse Financierings Maatschappij voor Ontwikkelingslanden N.V.: FMO)’, ‘지속가능 무역 계획(Sustainable Trade Initiative: IDH)’과 제휴하여 AGRI3 펀드(AGRI3 Fund)²³⁾를 조성함.

²²⁾ GreenLabelService(<https://greenlabelservice.nl/en/sustainability-labels/>), 검색일: 2023. 5. 17.

²³⁾ AGRI3 Fund(<https://agri3.com>), 검색일: 2023. 5. 17.

〈그림 3-3〉 AGRI3 펀드(AGRI3 Fund)



자료: AGRI3 Fund(<https://agri3.com>), 검색일: 2023. 5. 17.

- AGRI3 펀드는 네덜란드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가 주요 기부자(donor), 라보뱅크가 상위 대출기관(senior lender) 역할을 담당하며, 외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 등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AGRI3 펀드는 지속가능 농업, 산림 보호, 농촌지역 재생 등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높아 일반 상업은행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리스크 해소 수단으로 주로 활용됨.

- 2022년까지 AGRI3 펀드 거래 규모는 총 7,300만 달러(USD)에 달함.

○ AGRI3 펀드가 투자된 최근의 사례로는 브라질에 있는 곡물 및 면화 생산업체 Grupo Locks²⁴⁾를 들 수 있음.

- 2022년에 라보뱅크는 AGRI3 펀드를 통해 Grupo Locks에 10년 기간 동안 2,000만 달러 상당의 시설을 임대함.

- 해당 설비는 1만 ha 규모 면적에 재생 농업에 필수적인 순환농법을 활성화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라보뱅크는 브라질 지역농가들이 소규모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착안, 통합 금융 솔루션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Renova Pasto standardized loan’이라는 대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

- 브라질 내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는 해당 대출을 통해 10년간 설비를 제공받음.

- 관련 설비는 축산농가로 하역금 토양 유기질을 보전하는 한편 브라질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브라질 산림법(Brazilian Forest Code)’의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²⁴⁾ Grupo Locks(<https://www.grupolocks.com.br/>), 검색일: 2023. 5. 17.

1.3.6. 라보 투자(Rabo Investments)

○ 라보뱅크는 F&A 분야에서 혁신에 기반을 두어 사업 아이템 전환과정에 있거나 사업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라보 투자(Rabo Investments)’를 통해 자금 솔루션을 지원함.

- 특히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캐피털에 초점을 맞추어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라보뱅크가 구축한 기존 네트워크와 연계되도록 지원을 장려함.

○ 2022년 한 해 동안 라보뱅크가 F&A 분야 기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8,800만 유로 규모에 달함.

- 이 중 ‘푸드 시스템 전환’에 기여하는 초기 벤처투자 기업들에 조성한 펀드 금액은 1,900만 유로 규모임.

○ ‘라보 투자’가 활용된 대표적 기업 사례로는 잉여 농산물 및 불완전 농산물에 특화하여 기업 간 거래를 연계(business-to-business marketplace)하는 Full Harvest²⁵⁾ 사례를 들 수 있음.

○ 다른 기업 사례로는 천연 향료식물(aromatic plants)로부터 겨우 식물(cress) 및 섭취 가능한 잎사귀나 꽃을 생산하여 전 세계 식당에 공급하는 전문 기업 Koppert Cress²⁶⁾를 들 수 있음.

²⁵⁾ Full Harvest(<https://www.fullharvest.com/>), 검색일: 2023. 5. 26.

²⁶⁾ Koppert Cress(<https://www.koppertcress.com/>), 검색일: 2023. 5. 26.

2.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Crédit Agricole) 사례²⁷⁾

2.1. 크레디 아그리콜 현황

○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Crédit Agricole)은 1885년 프랑스 쥐라(Jura) 데 파르트망(départements)에 위치한 폴리니(Poligny)라는 코뮌(commune)에서 최초로 지역(local) 은행이 설립된 것을 그 시초로 함.

- 이후 1894년에 최초의 지역(local) 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Méline Act에 따라 공식적으로 크레디 아그리콜이 설립되었으며, 1899년에 상위 지방(regional) 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Viger Act에 따라 지방 은행으로 승격됨.
- 1945년에는 지방 은행들의 대표체로 ‘크레디 아그리콜 중앙회(Fédération Nationale du Crédit Agricole: FNCA)’가 설립됨.
- 1988년에 민영화가 이루어져 지방 은행들이 소유하는 공개 상장 법인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PLC)가 되었으며, 이후 2001년에 공식적으로 사명을 ‘주식회사 크레디 아그리콜(Crédit Agricole Société Anonyme(S.A.))’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크레디 아그리콜은 2022년 기준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금융 기관임.

- 크레디 아그리콜 그룹(group)은 크레디 아그리콜 S.A.(주식회사)는 물론 지방 및 지역 은행들을 포괄하며 자산 운용, 보험, 금융 서비스, 부동산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음.

²⁷⁾ Crédit Agricole S.A.(2023)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2022년 기준 프랑스 국내에 39개 지방(regional) 은행과 2,401개 지역(local) 은행이 소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46개 국가에 걸쳐 14만 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음(Crédit Agricole S.A., 2023).
- 개인, 농가, 소규모 기업, 지역 당국, 기관,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여 대략 5,300만 고객이 이용 중임.

○ 2022년 기준 크레디 아그리콜의 수입(revenue)은 237억 유로에 달하며 순 수입(net income)은 약 55억 유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Crédit Agricole S.A., 2023).

○ 이러한 2022년 수익 결과는 역사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인데, 이에 따라 2022년 연초에 공표한 그룹 내 미래 목표인 ‘Ambitions 2025’의 목표 달성은 물론 파리협정을 준수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룹의 지향점 추진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임.

2.2. 크레디 아그리콜의 장기적 전환 지원과 농식품산업

○ 앞서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와 유사하게 크레디 아그리콜 역시 미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으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기업 차원에서 분야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

○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 및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크레디 아그리콜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지원책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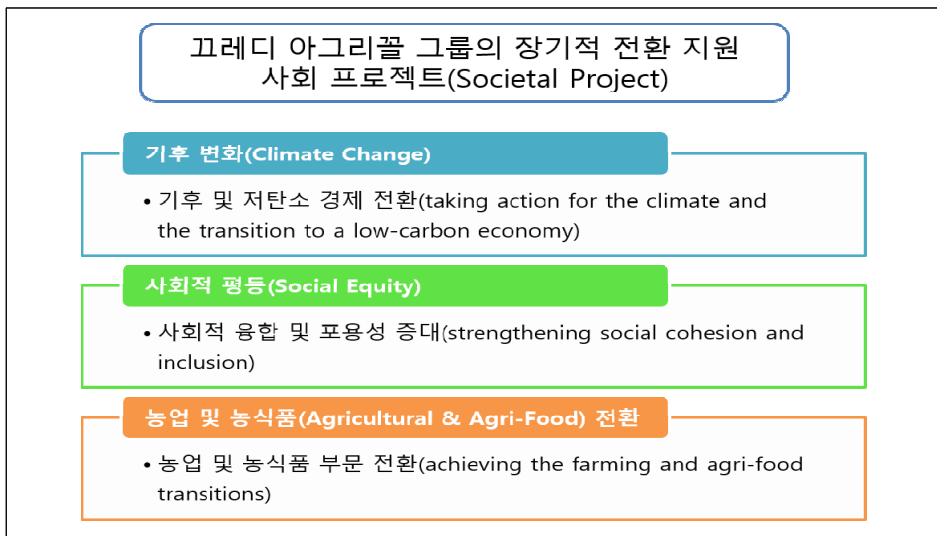
-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ESG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해당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응집력을 모으는 데에 초점을 맞춤.

- 구체적으로 ESG 전략 수행 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및 영세농가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응집력을 배가시키고자 함.

○ 이에 따라 크레디 아그리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사회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함<그림 4-4>.

- 첫째, 기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 둘째, 사회적 응집력과 포용성을 강화함.
- 셋째, 농업 및 농식품 전환을 달성함.

〈그림 3-4〉 크레디 아그리콜의 장기적 전환 지원 사회 프로젝트



자료: Crédit Agricole S.A.(2023)을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앞서 기술된 네덜란드 라보뱅크의 ‘푸드 시스템 전환(Food System Transition)’과 유사하게 크레디 아그리콜이 설정한 사회 프로젝트 중 ‘농업 및 농식품부문 전환’이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깊으며, 따라서 농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 기관의 투자 사례로 이해될 수 있음.

2.3. 크레디 아그리콜 농식품산업 투자 사례

○ 농업 및 농식품부문은 기후, 환경, 사회, 경제, 지정학적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임.

- 크레디 아그리콜은 그 태생이 농업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금융 기관의 역할은 물론, 농업부문의 오랜 파트너로서 농식품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

○ 앞서 제시된 사회 프로젝트의 3대 목표 중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농업 및 농식품부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크레디 아그리콜은 2021년 12월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 첫째,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농식품 시스템(agri-food system)을 위한 생산 기술의 혁신을 지원함.
- 둘째,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프랑스 농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강화에 기여함.

○ 나아가 2022년에 크레디 아그리콜은 ‘농업 및 농식품 전환 토대(Agricultural and agri-food transitions foundation)’라는 강령체계(action framework)를 마련하였음.

- 해당 체계는 5개 축(axes) 및 14개 조항(drivers)으로 구성되며 크레디 아그리콜 그룹 내 계열사들과 지방 은행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재정 및 투자 가이드로 활용됨.

○ 강령체계의 다섯 개의 축(axes)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첫째, 직업으로서 농업의 매력을 고취할 것.
- 둘째, 저탄소 식품(low-carbon food)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
- 셋째, 천연자원을 보전할 것.
- 넷째, 식습관을 변화시킬 것.
- 다섯째,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에 기반을 두어 생산할 것.

2.3.1. 재생 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 지원

○ 재생 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은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농장 내외 전체 생태계를 복원하고 향상하기 위한 일련의 농법을 의미함(Crédit Agricole S.A., 2023).

- 주로 토양 질을 복원하고 농업에 사용되는 토양, 수자원, 생물종다양성 등의 자원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농업 방식이 해당됨.

○ 2022년 5월, 크레디 아그리콜 소속 지방 은행 중 Nord-de-France, Brie-Picardie, Nord-Est, Champagne-Bourgogne의 4개 은행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생 농법이 장려되도록 이를 시행하는 감자 생산농가 및 가공업체들에 재정 지원을 제안함.

- 재생 농업으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농법, 장비, 기술 등에 기여 이 투자하려는 농가 및 공급업자들에게 은행 대출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다른 사례로는 크레디 아그리콜이 ‘브리타니의 토양(Sols de Bretagne)’이라는 프로젝트에 지원한 예를 들 수 있음.

-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브리타니(Brittany) 지역에서 1만 1,000ha 상당 규모의 면적을 재생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크레디 아그리콜은 '생계 펀드(Livelihood funds)'라 명명된 펀드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를 지원함.
- 또한, 이 프로젝트는 브리타니 지자체(Brittany Region)와 '생계 탄소 펀드(Livelihood Carbon Fund)'에 의해 공동으로 자금이 지원되며, 향후 10년 동안 14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CO₂)가 포집될 것으로 전망됨.

2.3.2. CA 보증(CA Assurance)의 공약(commitment)

○ 크레디 아그리콜 그룹 내 자회사인 'CA 보증(Crédit Agricole Assurances: CA Assurances)'²⁸⁾은 2025년까지 프랑스 내에서 작물 보험이 적용되는 농업 인 수가 2배가 될 수 있도록 작물 보험을 수정하는 것을 공약(commitment)하였으며, 이는 다음 사항들에 반영됨.

- 첫째, 농업인들이 모든 이해당사자 포커스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둘째, 농업인들이 작물 재배 시 기후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CA 보증을 통해 안내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문가들로부터 지원 시스템을 소개받는 경우.

○ CA 보증 내 계열사인 Pacifica²⁹⁾는 기후 변화 영향에 농업인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배 중인 작물 대부분에 보험을 적용함.

- 작물은 노지 작물(field crops), 포도나무(vines), 임목(tree crops) 등이 포함되며, 기후 변화 심화에 따른 기후 재해는 가뭄, 우박, 홍수, 범람, 태풍, 냉해 등이 해당함.

²⁸⁾ Crédit Agricole Assurances(<https://www.ca-assurances.com/>), 검색일: 2023. 5. 26.

²⁹⁾ Crédit Agricole Assurances(<https://www.ca-assurances.com/en/CAA/Compagnies/Pacifica>), 검색일: 2023. 5. 26.

- 특히 신규 유입 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농을 대상으로 보험료에 할인 사항을 제공함.
- 2025년까지 목표는 기후 불확실성에 직면한 농업인 4명당 1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Pacifica는 작물, 우박, 녹초지 등과 관련된 기후 보험 계약 2만 7,500건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지난 13년간 CA 보증은 대학 및 연구 기관들과 제휴하여 기후 변화와 관련된 농업부문 리스크에 대한 연구 계획(initiative)을 수행해 옴.

- 제휴 관계는 파리 도핀느 대학(Université Paris-Dauphine), 파리 낭테르 대학(University of Paris-Nanterre) 등 프랑스 내 대학들과 연구 기관들, 그리고 유럽 항공기업 Airbus 내 부서인 Airbus Defence and Space 간에 이루어짐.
- 연구 계획은 기후, 보건, 시장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였으며, CA 보증의 보험 상품인 ‘초지 보험(Grassland Insurance)’은 해당 연구 계획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임.

2.3.3.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 농식품 시스템 전환 지원

○ 크레디 아그리콜은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competitive and sustainable agri-food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사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원함.

- 농업 및 농식품 전환(agricultural and agri-food transitions), 생물 종 다양성 보전(preservation of biodiversity)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유로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조성함.

○ 아울러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해 농업의 전·후방산업은 물론 프랑스 국내 및 세계 시장 등 전 범위에 걸쳐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제품 계획(multi-product scheme)’을 수행함.

- 구체적으로 크레디 아그리콜 펀드 자금을 모바일로 공급하는 한편, 제삼자(third-party) 투자가나 다른 제휴사들과의 협업을 촉진함.

2.3.4. 기후 변화 대응

○ 크레디 아그리콜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프랑스 농업이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함.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과 천연 탄소 흡수대(carbon sinks)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프랑스 환경부(French Ministry of Ecological Transition)가 수립한 ‘저탄소 라벨 계획(Low Carbon Label scheme)’에 부합하는 농업탄소부문을 그룹 차원에서 구축 중임.

○ 2023년에는 프랑스 농업 및 산림 프로젝트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작하여 출시하는 것을 승인하였음.

- 해당 플랫폼은 ‘농업-환경 전환 계획(agri-environmental transition projects)’을 수행하는 농업인들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고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탄소 저감에 대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해당 플랫폼은 농업인들이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두어 전환 계획을 착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탈탄소(decarbonization) 전략에 동참하는 기업 고객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참고로 탈탄소 전략의 3대 원칙은 탄소 측정(measure), 탄소 저감(reduce),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여(contribute to carbon neutrality)로 구성됨.

2.3.5.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강화

○ 크레디 아그리콜 그룹은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pillar)을 설정하여 지원함.

- 첫째, 신세대 농업인들이 원활하게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
- 둘째, 직업으로서 농업의 가치를 고취함.
- 셋째, 공급 체인망을 단축하여 지속가능한 식품(sustainable food)을 장려함.

○ 그룹 내에서는 이러한 식량 자주권 이슈에 대한 확고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크레디 아그리콜은 미래 농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두 달에 걸쳐 전사적으로 설문 조사한 바 있음.

- 그룹 내 구성원들로부터 2,717여 개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은 결과 농업 및 농식품 전문가들이 12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개의 주제가 선정됨.

○ 앞서 언급된 식량 자주권 강화를 위한 세 가지의 축(pillar)에 대응하여 선정된 3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첫째, ‘세대교체(Generational Renewal)’와 관련해서 ‘Setting up 카페’나 ‘전환(transfer) 카페’ 등을 마련하는 것.
- 둘째, ‘농업 직업 장려(Promotion of the farming profession)’와 관련해서 농업인 간 ‘상호 원조(Mutual aid)’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셋째, ‘지속가능 식품(Sustainable Food)’의 예시로 ‘크리스마스 오렌지(Christmas Oranges)’를 활용하는 것.

3. 미국 농업조합금융시스템(Farm Credit System: FCS)과 세컨더리 시장³⁰⁾

3.1. 미국 FCS

3.1.1. 개황

- 미 의회는 1916년 상업 대출기관이 농장 대출을 기피하던 시기에 농촌지역에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신용 공급원을 제공하기 위해 FCS를 설립함.
 - FCS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미국 정부가 보증하지도 않고, GSE로 운영되는 차용자 소유 대출기관의 네트워크임.
 - 최종 대부업체가 아니라 농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권한이 있는 영리 목적 대부업체이고, 자본금은 월스트리트에서 채권 판매를 통해 조달됨.
- 4개의 대형 은행은 이 자금을 64개의 신용 협회에 할당하여 적격 신용 대출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임.
- 하원 및 상원 농업위원회의 규정 및 감독은 FCS 활동의 범위를 결정함(개정된 1971년 농장 신용법; 12 USC 2001 이하 참조).
 - FCS 대주 및 채권 보유자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같은 혜택도 제공함.

³⁰⁾ Farm Credit System은 주로 농협금융시스템(농업금융시스템)으로 인용됐고, 직역하자면 농업신용시스템도 가능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시중은행시스템과 구별되는 조합금융이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농업조합금융시스템이라고 의역하였음. 일반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FCS라고 적시하고 있음.

- 대출 자격은 농부와 목장주, 특정 농장 관련 기업체, 인구 2,500명 미만 마을의 시골 주택 소유자 및 협동조합으로 제한됨.
- 연방규제 기관은 농장 신용 관리국(FCA)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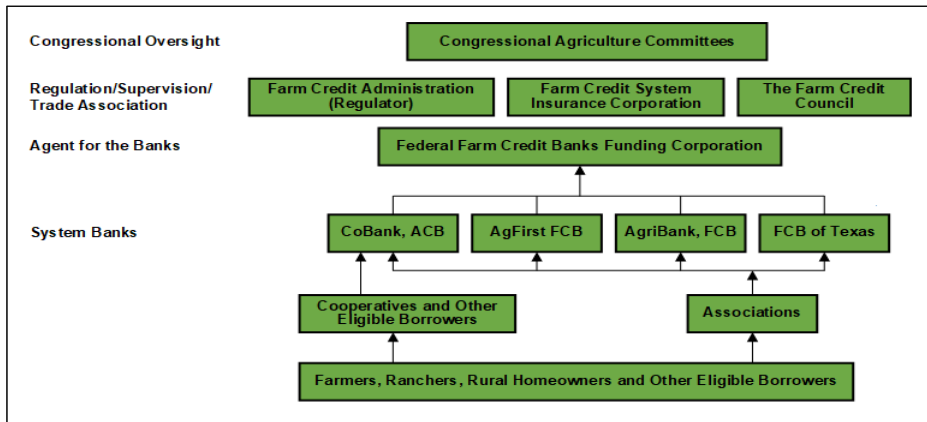
○ 2021년 말, FCS는 약 2,100억 달러의 농장 대출을 포함하여 총 3,440억 달러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보유함.

- FCS는 농장 부채의 약 44%를 보유함.

○ FCS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음<그림 5-5>.

- 의회는 안전성과 건전성을 포함하여 시스템 기관을 검사하고 규제하기 위해 시스템의 독립적인 연방 규제 기관으로 Farm Credit Administration을 설립함.
- 대출기관은 3개의 농업시스템은행(Farm Credit Banks)들과 신용은행(CoBank)임.
- 농업시스템은행(AgFirst, AgriBank 및 Texas)은 주로 제후 협회가 소유한 협동조합이고, 신용은행(CoBank)은 주로 협동조합, 기타 적격 대출자 및 관련 협회가 소유한 협동조합(ACB)임.
- 은행과 협회에는 각각 자체 이사회가 있으며 각 은행 및 협회는 자체 비즈니스 활동, 운영 및 재무 성과를 관리하고 통제함.

〈그림 3-5〉 Structure/Ownership of FCS



자료: Federal Farm Credit Banks Funding Corporation(2023), 2022 ANNUAL INFORMATION STATEMENT OF THE FARM CREDIT SYSTEM.

○ 은행은 Funding Corporation을 공동 소유함.

- 은행 및 협회의 대출 활동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ystemwide Debt Securities를 발행하고 판매함.
- 은행에 특정 회계 및 재무 보고 서비스를 제공: 시스템의 분기별 및 연간 정보 보고서와 이러한 정보 보고서에 포함된 시스템의 통합 재무제표 작성이 포함됨.
- 은행의 대리인으로서 자금 조달 회사는 재정 공개와 시스템의 재정 상태 및 성과에 관한 정보 공개를 주로 담당함.

○ FCS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고객 소유 조합 금융으로서 정부 지원 기관임(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 GSE).
- 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6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포함됨(2023년 2월 기준 시장 점유율 45%).
- FCA(농업신용관리청, Farm Credit Administration)가 관리함.

- 농업신용조합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농수산업 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대출을 제공함.

〈표 3-1〉 FCS와 다른 대출기관과의 차이점

구분	상업은행	FCS	정부대출
조직구조/소유권	기업/은행	협동조합/개인	정부기관/공공
이사회	은행 투자자·경영자	차용조합원	미국 의회
자금주체	예금, 자본시장, 수익	자본시장, 수익	정부채권, 세금
금리결정	이사회, 경영자	이사회, 경영자	정부
규제	FRB, OCC, FDIC	FCA	의회 감독
이익	주주분배	대출자 후원	납세자

자료: 황의식(2017),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해외연수》.

- 현재 FCS의 리스크 구조는 조합원 부실채권이 ‘조합(소매금융기관) → 농업 신용시스템은행 → 농업신용시스템보험공사 → 청산절차’ 등에 따라 진행되는 연대채무 특성이 있는데, 이는 불확실성에 취약한 농업대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있음.
 -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정보 수집과 분석이 농업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능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지리적 분산을 포함하여 다변화하는 등의 리스크를 관리, 강화하는 것이 가능함.
 - 농업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함.

3.1.2. FCS 연혁

- 태동기(설립~1930년대)
 - 1916년: 최초의 연방토지은행 및 연방토지은행조합을 설립함.
 - 1933년: ‘농업신용법’에 의하여 13개의 협동조합과 생산신용조합 설립, 농업신용관리청(FCA)을 설립함.

- 1939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농업신용관리청이 농무부의 산하기관이 됨.

○ 성장기(1940~60년대)

- 1942년: 연방예금보험공사로 연방신용조합의 인가·감독권을 이관함.
- 1953년: 농업신용관리청이 FCS의 검사·규제·감독을 담당하는 독립기구가 됨.

○ 정비기(1970~80년대)

- 1971년: FCS 관련법을 통합한 ‘농업신용법’을 제정함.
- 1981년: 농업신용법의 개정으로 조합 및 농업신용시스템은행의 금융 업무에 대해 농촌주택모기지, 리스산업 등으로 확대함.
- 1985년: 농업은행자본공사가 창설되어 채무증권의 판매를 관리함.
- 1987년: 농업금융시스템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보증하는 농업금융시스템보험공사(FCSIC)가 대출금의 2차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모기지공사(Farmer Mac)를 설립함.
- 1989년: 전국협동조합은행(CoBank)이 11개의 협동조합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정식 발족함.

○ 재도약기(1990년대 이후)

- 1992년: ‘FCS안전과건전성에관한법’을 통해 FCS의 의무와 보조금에 대한 100% 충당금 적립을 규정함.
- 2012년: U.S. AgBank와 CoBank가 합병하여 농업신용시스템은행이 4개로 축소됨(AgFirst, AgriBank, CoBank, FCB Texas).

3.2. Farmer Mac 주요 현황

3.2.1. 설립배경과 목적

- 금융기관의 대출자산은 인출자금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는 일정 기간 회수가 될 수 없는 채권이지만 조달자금(예수금)의 인출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2차 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대출채권을 판매하거나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투자자에게 2차 금융시장은 투자기회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함.
 - 농업금융기관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2차 금융시장제도로 Farmer Mac을 도입함.
- The Federal Agricultural Mortgage Corporation(Farmer Mac)은 연방 공인 민간 기업으로 1987년 농업 신용법(Pub. L. 100-233)에 의해 투자자에게 농업 2차 시장에서 이자와 원금의 적시 상환을 보장할 책임이 있도록 설립됨.
 - 농업부문 부동산담보대출의 2차 시장 개발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 Fannie Mae와 Ginnie Mae의 모델을 따라 농업인 신용의 대체 소스를 제공하고자 Farm Credit System의 40억 달러 구제금융 중(농산물가격 하락, 이자율 상승)에 설립함.
- 세컨더리 시장은 농업 모기지 마케팅 회사 또는 풀러에게 자격을 갖춘 농장 부동산 대출을 대출기관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Farmer Mac은 이러한 증권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적시 상환을 보장하고 1995년 승인된 권한에 따라 대출 풀러 역할을 할 수 있게 됨.
 - Farmer Mac은 Farm Credit System의 관리·감독을 받음.

- 감독기관은 Farm Credit Administration의 the Office of Secondary Market Oversight임.

○ (목적) Farmer Mac은 농촌 주택 대출, 농업 부동산 모기지 대출 등을 위한 2차 시장을 제공함.

- 농지 투자자와 농촌 대출자에게 대출기관이 효율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함.
- 농업부문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은 주로 장기 대출임. 2차 시장을 통해 장단기 채권을 다수 발행함으로써 금융 효율성 제고함.
- 안정적인 이자율로 미국의 농촌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 신용의 가용성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대출기관이 더 큰 유동성과 대출 능력을 제공함.

3.2.2. 주요 사업 내용

○ 주주³¹⁾ 소유의 연방 공인 기업인 Farmer Mac은 민간 자본과 공공 후원을 결합하여 사업을 수행함(NASDAQ 1988, NYSE 1999).

- ① 적격 대출을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구매(Farm & Ranch Loan Purchase): 투자로 확보된 의무 및 적격 대출을 구매해 농지 투자자 및 대출기관에 자금 제공(인수 플랫폼 AgPower 활용).

³¹⁾ •Farmers, ranchers and rural communities •Employees •Stockholders •Financial Institutions & Cooperatives •Congress •Regulators.

② 신용보호(Farm&Ranch Credit Protection)

- 적격 대출에 대한 장기 대기 구매 약정 발행(Farm&Ranch Purchase Commitment): 자산을 유동화하고 결과 증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적시 지급을 보장함.
- 농업모기지증권(Agricultural Mortgage-Backed Securities): Farmer Mac이 보증한 증권은 Farmer Mac이 보유하거나 기본 대출의 판매자가 보유하거나 제3자 투자자에게 판매함.

③ USDA 보증 대출 구매(USDA Guaranteed Loan Purchase, “Farmer Mac 2”): 농촌 대출기관인 FSA(Farm Service Agency) 및 RD(Rural Development) 대출을 시작하고 Farmer Mac에 이러한 대출을 판매함으로써 대출기관에서는 대출의 보장된 부분을 판매하고 난 후 추가 대출을 만드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생성함.

④ 도매금융(Wholesale Financing): 적격 농업 및 농촌 유틸리티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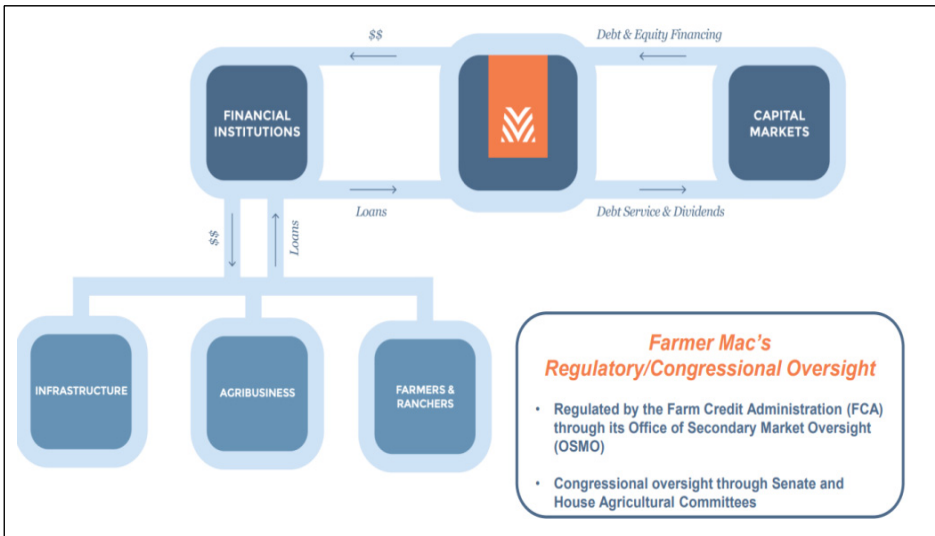
- 대출기관은 농촌 대출기관을 위해 설계된 AgVantage 시설을 통해 Farmer Mac에서 차용할 수 있으며 담보로 적격 대출을 제공함.
- 투자자와 농업자산소유자를 위해 설계된 Farm Equity AgVantage를 통해 사용하기 쉬운 시설에 낮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자산을 구매하거나 기존 자산을 개발, 농장 또는 기업을 확장하는 데 활용함.

○ Farm Credit System의 기관인 Farmer Mac은 다른 시스템 기관의 의무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Farmer Mac의 부채나 의무에 대해 다른 시스템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

○ 금융서비스, 채원조달(loan origination), 위험부담, 자금공급을 각기 분리하여 농업 저당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함.

- 원래 Farmer Mac은 1차 금융기관과 원저당대출에 의한 서비스를 풀링(pooling)하여 구매하는 것에 대해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 대출채권을 풀링하는 기관은 상업은행, 생명보험회사, 기타 대출기관, FCS기관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대출을 모두 모아서 자산을 구성(portfolios)하고 이것을 분할하여 증권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함.
- 투자자에게 원채무자가 부담할 원리금을 돌아가도록 하되 이를 대출을 풀링하는 자가 보증하는 시스템임.
- Farmer Mac은 이 증권에 대해 지급보장을 함.

〈그림 3-6〉 FamerMac 구조



자료: Farmer Mac(2022), FamerMac Equity Investor Presentation(2022, 3QT).

○ 파머맥의 리스크 구조는 대출채권을 재평가하여 자본시장에 유동화하기 때문에 기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함.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 국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고, 세컨더리 시장에서의 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1차 저당채권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로 연계됨.

- 실제로 파머맥의 리스크 관리는 바젤3(Tier1 Capital Ratio) 및 법정 최소 핵심자본 비율을 따름.³²⁾

3.2.3. Farmer Mac의 성장과정³³⁾

○ Farmer Mac은 1987년 입법으로 도입되었지만, 처음 대출을 풀링해서 활동을 개시한 것은 1991년이 되어서임.

- '94년까지 풀링기관은 8개에 불과하였으나 실질적인 풀링은 거의 없었음.

○ Farmer Mac의 성장이 더딘 것은 농업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고 대출수요가 약했으며, 대출 규모가 불확실하며, 자본화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이자율의 경쟁가능성이 의문시되었으며, 투자자들이 농업 저당시장의 독특하고 복잡한 양상에 대해 잘 수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임.³⁴⁾

32) 현재 법정 최소 핵심 자본 비율: 2.75%(on-balance)/0.45%(off-balance).

33) 정연호 외(1999)를 참고하여 작성.

34) 1) 원래 제2차 금융시장이 거론된 것은 1970년대 초로 그 당시에는 농업부문의 자금수요가 대단히 컸고, 금융기관의 영업성과도 매우 좋았음. 따라서 상업금융기관들은 농업부문에 대한 장기 대출을 늘리려 하였음.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상황이 반전되어 자금수요가 줄고, 신용공급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대출을 2차 금융시장에 팔 유인이 줄어들. 2)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과 FCS기관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원대출금(총대출금의 10% 이상)에 대한 자본보다는 총대출에 대한 일정기준의 자본 보유를 요구한 것도 2차 금융시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임. 즉, 감독당국은 90%의 대출채권을 팔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총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3) 잠재적인 pooler의 경우도 Farmer Mac program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였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자본매매에 필요한 대출규모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4) 또한, 이자율이나 대출기간도 채무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을 만큼 공급하면서 2차 금융시장에 내다 팔 대출을 해주는 데 자신이 없었음. 즉, 투자자들의 수요를 맞추면서 동시에 차입자의 요구도 만족하게 하는 금융상품을 만들 효율성에서 자신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투자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려면 대출이자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차입자가 자금을 외면할 것이기 때문임.

○ 1990년대 초 Farmer Mac은 감독당국으로부터 두 가지 기능을 부여받았는데 첫째, Farmer Mac 자체가 pooler가 될 수 있고, 둘째 Farmer Mac은 다른 정부출연기업과 비슷한 지위로 무담보부채를 차입하여 loan pool을 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음.

- 1990년 Farmer Mac은 Farmers Home Administration (FmHA)이 보증하는 대출에 대해 2차 시장을 위한 pooler가 되며, Farmer Mac2라고 함. 그 이전의 원래의 것을 Farmer Mac1이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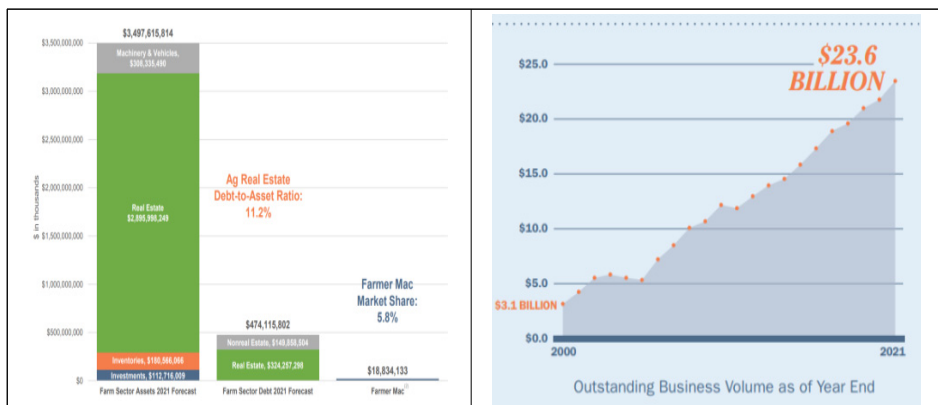
○ Farmer Mac1은 농촌주택저당 대출에 대한 2차 시장이고, Farmer Mac2는 USDA 신용보증부대출에 대한 2차 시장임.

3.2.4. Farmer Mac 주요 현황

○ Farmer Mac이 구입한 대출금은 2022년 3분기 기준 전체 농업 분야 부채(addressable)의 5.8%를 차지하는 188.3억 달러임.

- 농업 분야 자산은 3,497빌리언달러, 부채는 474빌리언달러로 부채비율은 11.2%임.

〈그림 3-7〉 US 농업 대차대조 및 FarmerMac 사업규모



자료: Farmer Mac(2022), FarmerMac Equity Investor Presentation(2022, 3QT); Farmer Mac(2022), Annual report(2021).

○ 증권화된 Farmer Mac의 사업규모는 2021년 말 현재 236억 달러로 전년보다 7.7% 증가함.

- 농업부문 176억 달러, 농촌시설 59억 달러, 재생에너지 87백만 달러임.
- 2021년에 발행(2022.8. close)한 농업저당담보부증권(agricultural mortgage-backed securities: AMBS)은 301백만 달러(2021.10 closing 299.4백만달러, 2023.2 closing 283.6백만달러)의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미국 농촌 지역에 자금 공급을 지속함.
- 사업규모는 2023년 3월 기준 \$26.5bills임.

〈표 3-2〉 Farmer Mac 사업 현황

	As of December 31, 2021	As of December 31, 2020
	(in thousands)	
Agricultural Finance:	17,632,473	16,537,009
Farm & Ranch	16,094,639	14,872,894
Loans	4,775,070	3,979,854
Loans held in consolidated trusts: Beneficial interests owned by third-party investors	948,623	1,287,045
IO-FMGS	12,297	-
USDA Securities	2,445,806	2,487,420
AgVantage Securities	4,725,000	4,425,000
LTSPCs and unfunded commitments	2,587,154	2,314,965
Farmer Mac Guaranteed Securities	578,358	378,610
Loans serviced for others	22,331	-
Corporate AgFinance:	1,537,834	1,664,115
Loans	1,123,300	909,539
AgVantage Securities	367,464	744,110
Unfunded Loan Commitments	47,070	10,466
Rural Infrastructure Finance:	5,981,990	5,387,086
Rural Utilities:	5,895,227	5,314,051
Loans	2,302,373	2,187,377
AgVantage Securities	3,033,262	2,565,837
LTSPCs and Unfunded Loan Commitments	556,837	556,425
Farmer Mac Guaranteed Securities	2,755	4,412
Renewable Energy:	86,763	73,035
Loans	86,763	73,035
Total	23,614,463	21,924,095

자료: FarmerMac(2022), Annual report(2021).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4.1. 농식품 투자의 방향 설정

- 글로벌 선도 금융기관인 네덜란드 라보뱅크와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의 해외 투자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환경 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농식품산업 분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음.
- 국내 농식품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논의는 농업 생산, 식품 가공 등 농식품산업 본연의 일차원적인 가치, 즉 농업경영체 및 농가의 이윤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어 온 측면이 강함.
 - 반면 해외 투자 사례를 통해 환경, 지속가능성, 혁신 등으로 논의의 패러다임이 확장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는 곧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익성이 낮아 민간 펀드 조성이 어렵다고 인식되는 국내 농식품산업 분야의 경우 글로벌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 탄소중립, 지속가능 개발 등의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민간 펀드 조성 및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4.2. 농식품 투자 평가를 위한 기반 구축

- 아울러 해외 투자 사례와 같은 기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를 함께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 역시 제기됨.
 - 일례로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의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하여 금융 지원 및 투자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가가 화두가 됨.

- 라보뱅크는 ‘지속가능성 정책(sustainability policies)’을 수립하여 대상 사업체의 ‘지속가능성 성과(sustainability performance)’를 측정함.
- 이에 따르면 농가를 대상으로 소유 토지 내 생물 종 다양성(biodiversity)이 어느 규모인지 측정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권고함.
- 또한, 기업체의 ESG 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성과에 따른 금융상품을 안내하고 투자 규모를 결정함.

○ 요컨대 해외 선도 은행들의 농식품산업 분야 투자는 환경친화적인 농업 및 농촌지역 재생,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논의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성과 그에 부응하는 혁신 기술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국내 농식품산업 분야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농식품산업 분야 투자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과 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4.3. 자본시장 활용을 통한 시장 신뢰도 제고

○ 미국의 FCS는 조합금융기관시스템으로서 금융시장 원리를 철저히 따르면서도 시장실패부문을 보완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거버넌스 구조임.

- 대출재원 조달 방식은 채권발행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토대로 결정되지만, 정부가 암묵적으로 FCS 발행 채권에 대해 상환보증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함.
- 낮은 조달 금리 유지를 위해 FCS 및 Farmer Mac은 GSE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없더라도 농업부문의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령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대통령이 감독기관의 대표를 임명함.

- FCS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1980년대 경영위기 상황에서 특별하게 정부보증 채권발행을 허용하였고, 세금감면 혜택을 협동조합방식의 유지함으로써 부여함.

○ 특히 Famer Mac은 1987년 경제위기 시 농업부문 구제금융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시장을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 활용도를 높임.

- 초기 도입 시 성장 속도가 느렸으나 농업부문 자산유동화 효율성이 입증되면서(정부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저비용 가능) 세컨더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음.
- 구제금융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시장을 별도로 도입한 것은 정부 신뢰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므로 승인 기능을 가진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
- 1987년 구제금융과 마찬가지로 2009년 금융위기 시 Freddie Mac(The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Fannie Mae(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에 대한 구제금융을 시행하였음.

○ 미국의 사례는 민간 금융기관과 정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자본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우리 농업정책금융과 비교하면, 자금 조달이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장금리와의 시차 없는 동행성 등에서 효율성이 발휘됨.

4.4. 농업부문 세컨더리 시장 도입

- 현재 연간 농지 거래 규모는 약 50조 원에 이르지만, 정책금융 신규공급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신규 투자를 위한 자본제약 존재를 예상할 수 있음.
- 대출채권을 재평가하고, 세컨더리 시장을 통해 신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면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될 뿐 아니라 예수금 이외의 자금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동성 효율화가 가능함.
 - Famer Mac은 자본조달을 위해 기존 농업부문 자산(부동산, rural infrastructure, 재생에너지, agri-business 등)을 재평가하여 다양한 기간을 가진 채권을 발행(30일~30년)하기 때문에 농업부문 자금공급과 수요 간 기간 격차 해소 가능
- 세컨더리 시장에서는 다양한 파생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농식품 분야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신규 자본을 조달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4

농업 분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농식품모태펀드 운영방안

1. 농식품모태펀드 운영 현황

1.1. 농식품모태펀드 운영체계

1.1.1. 농식품모태펀드 도입배경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ICT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보육 → 투자 및 가치증진 → 회수 및 재투자’라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인하였음.

- 불과 20여 년 만에 ICT 벤처를 모태로 하는 기업들이 KOSPI 시가총액 10위 (NAVER, 33.4조 원), 14위(카카오, 25.2조 원)에 자리하는 성과를 거뒀음.
- 또한,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며 ICT 분야에서 창업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음.

- 정부는 원활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공급자 위주의 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으로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과 회수재원을 기초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모태펀드를 20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임.
- 농산업 분야에서도 한국모태펀드를 벤치마킹하여 농식품 경영체의 발굴·육성과 민간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2010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를 결성하여 2040년을 존속기한으로 운영 중임.
 - 전통적 농업금융정책인 용자가 신용이나 담보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그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달리, 투자는 농식품 경영체의 사업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 여부가 결정됨.
 - 또한, 용자는 채권자가 약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정해진 이자만을 받을 뿐 기업 성장과 채권자 몫 간에 아무 관계가 없으나, 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고, 투자자는 기업 성장에 따라 보유한 지분에 비례하는 이익을 얻게 됨. 즉,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은 경영위험과 성장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 관계임.
 -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해 피투자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경영에 동참하게 됨.
 - 특히 농산업과 같이 산업 내 기업들의 경영역량이 부족하고 산업 자체의 고도화가 더딘 분야에서 투자자의 이러한 가치증진 활동은 해당 산업 내 기업의 성장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

〈표 4-1〉 투자와 용자 비교

구분	투자	용자/대출
주체	투자조합(투자회사)	금융기관(은행)
검토대상	사업성	신용도 또는 담보능력
관계	주주(파트너) 관계	채권자-채무자 관계
투자방법	주식, CB·BW(무담보), 개별 사업(프로젝트)	차입(신용 또는 담보)
경영참여	참여	미참여
회수방법	지분매각/수익배분	만기 시 원금+이자 상환
위험부담	투자자	채무자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22),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홍보 브로슈어》, 가온누리 인베지툰.

1.1.2. 농식품모태펀드 운영구조

○ 농식품모태펀드는 ‘모-자펀드 구조(Fund of Funds: FOFs)’로 설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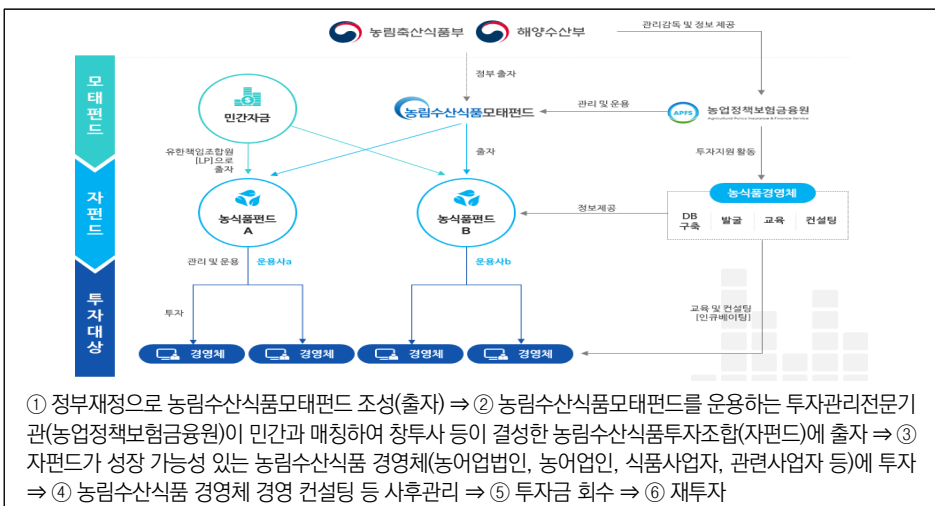
- FOFs 구조에서 모펀드인 농식품모태펀드는 자펀드를 결성하고 운용할 민간 벤처투자사(Venture Capital: VC)를 선정하고 자펀드에 자금을 내는 업무를 수행함.
- 현재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서 농식품모태펀드를 관리 및 운용하고 있음.
- VC는 농식품자펀드의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 GP)으로 펀드 운용업무를 맡아 유망 농식품 경영체 발굴, 투자, 사후관리 등 투자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민간 투자자금을 농식품자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으로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함.

○ 농식품모태펀드가 FOFs 구조를 선택한 것은 투자 리스크 분산, 민간자금 유입 확대, 민간의 투자 전문성 활용을 위한 것임.

- (투자 리스크 분산) 농식품모태펀드의 자산은 여러 농식품자펀드에 분산 투자되므로 특정 자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할 때 투자위험이 낮음.
- (민간자금 유입 확대) 농식품모태펀드 출자를 마중물로 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농식품 산업에 투자하는 농식품자펀드를 결성하므로, 정부가 단독으로 투자할 때보다 농식품 투자시장에 유입되는 투자금 확대가 가능함.
- (민간 투자 전문성 활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후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데 전문성을 지닌 VC가 투자업무 전반을 관리하므로 농식품 경영체의 빠른 성장, 농식품 산업 발전, 펀드의 수익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 가능함.

- 농산업은 타 산업 대비 산업 내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유망 투자기업 발굴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자펀드를 운용할 VC 선정 시 타 정책펀드와 비교하여 투자처 발굴과 투자 후 사후관리 업무 역량 보유 여부를 중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도 농식품 예비창업자 교육, 투자유치 컨설팅과 같은 투자지원 사업을 통해 농식품 경영체의 투자유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유망한 농식품 경영체와 자펀드 운용 벤처투자사를 연결하는 사업설명회(Investor Relations: IR)와 이미 투자된 농식품 경영체의 가치증진을 위한 구매상담회, 해외 마케팅 등도 지원하고 있음.
- 자펀드는 통상 8년의 존속기간을 지니며, 초기 4년은 투자기간, 후기 4년은 회수기간으로 운영됨.
- 존속기간이 완료된 자펀드는 청산 중인 조합으로 전환되며, 잔여 투자자산 매각 및 분배가 완료되면 최종 청산됨.

〈그림 4-1〉 농식품모태펀드 및 농식품자펀드 구조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https://www.apfs.kr/front/contents/sub.do?contId=44&menuId=5320#>), 검색일: 2023. 5. 15.

1.2.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및 농식품자펀드 결성·투자 현황

1.2.1.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현황

○ 2023년 5월 말 기준 농식품모태펀드 조성액은 총 6,307억 원임.

-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850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00억 원, 수산발전기금 850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07억 원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이후부터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과 수산발전기금에서만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출자규모는 2014년 700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18년 200억 원까지 줄어들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 400억 원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표 4-2〉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5	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07	-	-	-	-	-	-	-	-	-	-	-	-	-	50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500	500	500	600	-	-	-	-	-	-	-	-	-	2,1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	-	-	500	300	200	100	200	350	400	400	400	2,850
수산발전기금	-	-	-	-	100	100	100	100	100	70	70	70	70	70	850
농업정책보험금지원	0.3	-	-	-	-	-	-	-	-	-	-	-	-	-	0.3
계	507.3	500	500	500	700	600	400	300	200	270	420	470	470	470	6,307.3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지원 내부자료.

1.2.2. 농식품자펀드 결성 현황

○ 2022년 말 누적 기준으로 111개, 1조 8,108억 원 규모의 농식품자펀드가 결성되었음.

- 농식품모태펀드에서 1조 270억 원, 민간에서 7,838억 원을 출자하였음.
-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한 1조 270억 중 정부예산 및 기금을 통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액은 5,837.3억 원, 자펀드로부터 회수액은 4,432.7억 원임.
- 모태펀드에 투입된 정부예산 및 기금이 민간출자의 마중물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출자승수(자펀드 결성액/모태펀드 조성액)는 3.1배로 나타남.
- 농식품모태펀드가 최초 조성된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투자액 회수가 활발하지 않아 출자승수도 2배 안팎을 유지하였으나, 회수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4~5배로 상승하였고, 특히 2022년에는 5.8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표 4-3〉 농식품자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 원, 개

연도	농모태 출자			민간출자	합계(B)	결성펀드수	출자승수 (B/A)
	조성액 (A)	회수액 등	소계				
'10	507.3	39.7	547	623	1,170	5	2.3
'11	500	△5	495	545	1,040	6	2.1
'12	500	40	540	460	1,000	7	2.0
'13	500	10	510	390	900	7	1.8
'14	700	90	790	500	1,290	10	1.8
'15	600	100	700	510	1,210	8	2.0
'16	400	640	1,040	615	1,655	8	4.1
'17	300	400	700	470	1,170	7	3.9
'18	200	320	520	355	875	6	4.4
'19	270	475	745	586	1,331	8	4.9
'20	420	560	980	827	1,807	10	4.3
'21	470	577	1,047	886	1,933	12	4.1
'22	470	1,186	1,656	1,071	2,727	17	5.8
합계	5,837.3	4,432.7	10,270	7,838	18,108	111	3.1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출자승수가 4.6배로 농식품모태펀드 대비 높은 수준임.
- 이는 한국모태펀드의 주요 투자 분야인 ICT 산업, 유통·서비스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의 높은 수익성 덕분에 민간의 투자 유인이 높았던 점과 한국모태펀드가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자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온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글상자 4-1〉 2022년 말 기준 한국모태펀드 출자승수

- 한국모태펀드의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담당
- 한국모태펀드는 중진계정, 문화계정, 과기계정 등 19개 계정으로 구성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기관이 출자자로 참여
- 2022년 말 기준 한국모태펀드 조성액은 8조 2,153억 원, 자펀드 결성액은 37조 4,470억 원으로 출자승수는 4.6배를 기록
- 자펀드 결성액 중 한국모태펀드에서 조성액 8조 2,153억 원에 회수액 4조 1,947억 원을 더한 12조 4,100억 원을, 민간에서 25조 370억 원을 출자

〈글상자 표 4-1〉 2022년 말 기준 한국모태펀드 운용 현황

단위: 억 원, 개

한국모태출자			민간출자	합계(B)	결성펀드수	출자승수 (B/A)
조성액(A)	회수액 등	소계				
82,153	41,947	124,100	250,370	374,470	1,125	4.6

자료: KVIC Market Watch 4Q22 Vol. 29(2022.).

○ 자펀드 성격별로 살펴보면 일반펀드 48개, 9,769억 원, 특수목적펀드 63개, 8,339억 원을 결성하였음.

- 농식품 산업 전반에 투자 가능한 일반펀드의 비중은 54%,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 분야를 특정 분야로 한정한 특수목적펀드의 비중은 44%임.
- 초기에는 일반펀드의 결성 비중이 높았으나 농식품 산업 내 특정 분야 및 대상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농업금융 정책수단으로 농식품모태펀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특수목적펀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 4-4〉 일반펀드 및 특수목적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펀드 결성금액(개수)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일반 펀드	농림축산식품업	200 (1)	-	-	450 (3)	610 (4)	640 (3)	755 (2)	500 (3)	200 (1)	630 (2)	752 (2)	392 (2)	800 (2)	5,929 (25)	
	농림축산업	200 (1)	400 (2)	320 (2)	-	-	-	-	-	-	-	-	-	-	920 (5)	
	식품산업	250 (1)	370 (2)	320 (2)	-	-	-	-	-	-	-	-	-	-	940 (5)	
	소계	650 (3)	770 (4)	640 (4)	450 (3)	610 (4)	640 (3)	755 (2)	500 (3)	200 (1)	630 (2)	752 (2)	392 (2)	800 (2)	7,789 (35)	
특수 목적 펀드	수산업	200 (1)	70 (1)	160 (1)	150 (1)	150 (1)	150 (1)	200 (1)	150 (1)	150 (1)	350 (2)	-	150 (1)	100 (1)	1,980 (13)	
	8대 프로젝트	320 (1)	200 (1)	-	-	-	-	-	-	-	-	-	-	-	520 (2)	
	소규모 경영체	-	-	200 (2)	200 (2)	100 (1)	100 (1)	-	-	-	-	-	-	-	600 (6)	
	6차산업	-	-	-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	-	-	-	600 (6)	
	수출	-	-	-	-	130 (1)	100 (1)	100 (1)	-	-	-	-	-	-	330 (3)	
	R&D	-	-	-	-	100 (1)	-	-	-	-	-	-	-	-	100 (1)	
	AgroSeed	-	-	-	-	100 (1)	-	-	-	-	-	-	-	-	100 (1)	
	창업아이디어	-	-	-	-	-	120 (1)	-	-	-	-	-	-	-	120 (1)	
	스마트팜	-	-	-	-	-	-	500 (3)	-	-	-	-	-	-	-	500 (3)
	ABC	-	-	-	-	-	-	-	420 (2)	-	100 (1)	-	-	-	-	520 (3)
	농식품벤처	-	-	-	-	-	-	-	-	125 (1)	125 (1)	260 (2)	225 (2)	395 (3)	-	1,130 (9)
	지역특성화	-	-	-	-	-	-	-	-	100 (1)	-	110 (1)	-	-	-	210 (2)
	세컨더리	-	-	-	-	-	-	-	-	-	200 (1)	-	-	520 (1)	-	720 (2)
	마이크로	-	-	-	-	-	-	-	-	-	-	125.5 (2)	65 (1)	65 (1)	195 (3)	450.5 (7)
	징검다리	-	-	-	-	-	-	-	-	-	-	-	220 (1)	-	216 (1)	436 (2)
	영파머스	-	-	-	-	-	-	-	-	-	-	-	100 (1)	105 (1)	105 (1)	310 (3)
	스마트농업	-	-	-	-	-	-	-	-	-	-	-	-	150 (1)	410 (2)	560 (3)
	그린바이오	-	-	-	-	-	-	-	-	-	-	-	-	150 (1)	400 (2)	550 (3)
	창업보육	-	-	-	-	-	-	-	-	-	-	-	-	71.4 (1)	-	71.4 (1)
	수산업	-	-	-	-	-	-	-	-	-	-	-	300 (2)	105 (1)	96 (1)	501 (4)
	직접투자(매칭형)	-	-	-	-	-	-	-	-	-	-	-	-	-	10 (1)	10 (1)
	소계		320 (1)	200 (1)	200 (2)	300 (3)	530 (5)	420 (4)	700 (5)	520 (3)	525 (4)	350.5 (4)	1,055 (8)	1,391.4 (9)	1,827 (14)	8,338.9 (63)
	합 계		1,170 (5)	1,040 (6)	1,000 (7)	900 (7)	1,290 (10)	1,210 (8)	1,655 (8)	1,170 (7)	875 (6)	1,330.5 (8)	1,807 (10)	1,933.4 (12)	2,727 (17)	18,107.9 (111)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1.2.3 농식품자펀드 투자 현황

○ 2023년 4월 말 기준 625개 경영체에 969건, 1조 2,333억 원의 투자가 집행되어 결성금액 1조 8,108억 원 대비 투자소진율은 68.1%를 기록함.

-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이에 따른 벤처투자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농식품자펀드의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은 2021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다만 2022년 들어서는 고금리로 인한 벤처투자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모두 감소추세로 전환하였고, 2023년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건당 투자금액은 2018년 14.4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에 있음. 이는 사업개시 5년 미만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 건당 5억 원 이내로 투자하는 마이크로 펀드, 만 49세 이하 청년농에게 건당 5억 원 이내로 투자하는 영파머스 펀드 등 초기 농식품 경영체에 소규모로 투자하는 특수목적펀드 결성 증가의 영향으로 판단됨.

〈표 4-5〉 농식품자펀드 투자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억 원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4	합계
투자건수	8	30	54	93	76	73	81	91	82	84	141	126	30	969
투자금액	160	473	730	1,273	867	986	1,063	1,308	1,161	1,062	1,504	1,399	347	12,333
건당 투자금액	20.0	15.8	14.1	13.4	11.4	12.2	13.1	14.4	14.2	12.6	10.7	11.1	11.6	12.7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 계정별로 살펴보면 농식품투자 계정에서 520개 경영체에 834건, 1조 535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소진율 67.4%를 기록하고, 수산투자 계정에서 105개 경영체에 135건, 1,798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소진율 72.5%를 기록함.

〈표 4-6〉 계정별 투자 현황

단위: 개, 건, 억 원, %

계정 구분	농식품투자 계정	수산투자 계정	합계
자펀드 개수	94	17	111
자펀드 결성 총액(A)	15,627	2,481	18,108
투자 경영체 개수	520	105	625
투자건수	834	135	969
투자금액(B)	10,535	1,798	12,333
투자소진율(B/A)	67.4	72.5	68.1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 농식품 산업부문별 투자 현황은 투자건수 및 금액 모두 농·축·수산 관련 산업,³⁵⁾ 식품산업,³⁶⁾ 비농업, 식품 관련 산업,³⁷⁾ 농·축·수산업³⁸⁾ 순으로 나타남.

- 1차산업인 농·축·수산업에 대한 투자실적은 건수 기준 9%, 투자금액 기준 10.1%로 나타남.

〈표 4-7〉 농식품 산업부문별 투자 현황

단위: 건, 억 원, %

구분	투자건수(비중)	투자금액(비중)
농·축·수산업	87(9.0)	1,244.7(10.1)
식품산업	298(30.7)	3,792.9(30.8)
농·축·수산 관련 산업	312(32.2)	4,070.8(33.0)
식품 관련 산업	118(12.2)	1,420.4(11.5)
비농업	154(15.9)	1,804.2(14.6)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35) 농·축·수산물 이용 비식품산업, 농·축·수산 기자재 관련 산업 등.

36) 농·축·수산물 가공 및 유통.

37) 식품 제조용 기자재 또는 식품 관련 플랫폼 산업 등.

38) 농·축·수산물 재배 및 생산업.

○ 농식품 계정에 한해 지역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³⁹⁾ 전체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수도권 64.5%, 비수도권 35.5%, 주목적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수도권 61%, 비수도권 39%를 기록하였음.

〈표 4-8〉 농식품 계정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건, 억 원, %

구 분		전체 투자				농식품 투자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소계	537	64.3	6,800	64.5	430	60.7	5,498	61.0
	서울	333	39.9	4,259	40.4	262	37.0	3,322	36.9
	인천	20	2.4	159	1.5	13	1.8	95	1.0
	경기	184	22.0	2,382	22.6	155	21.9	2,081	23.1
비수도권	소계	297	35.7	3,735	35.5	277	39.3	3,515	39.0
	부산	10	1.2	90	0.9	9	1.3	83	0.9
	대구	6	0.7	68	0.7	6	0.8	68	0.8
	대전	35	4.2	391	3.7	31	4.4	336	3.7
	광주	4	0.5	64	0.6	4	0.6	64	0.7
	울산	-	-	-	-	-	-	-	-
	강원	30	3.6	364	3.5	28	4.0	344	3.8
	충북	53	6.4	880	8.3	49	6.9	830	9.2
	충남	25	3.0	398	3.8	24	3.4	383	4.3
	전북	21	2.5	201	1.9	21	3.0	201	2.2
	전남	32	3.8	392	3.7	29	4.1	372	4.1
	경북	44	5.3	442	4.2	42	5.9	429	4.8
	경남	23	2.8	264	2.5	21	3.0	234	2.6
	제주	14	1.7	181	1.7	13	1.8	171	1.9
합계		834	100	10,535	100	707	100	9,013	100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39) 수산계정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일부 지역에만 투자가 이루어져 분석에서 제외함.

〈글상자 4-2〉 지역별 벤처투자 동향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조합 투자금액과 창업투자회사 직접투자금액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 투자비중은 7.8%로 낮은 수준임.
- 이는 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투자대상인 ICT 산업, 유통·서비스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기업이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 영향 때문임.
- 농식품 계정의 지방 투자비중이 전체 벤처투자의 지방 투자비중보다 높은 것은 농식품 기업의 경우 1차 생산 기반이 위치한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글상자 표 4-2〉 최근 5년간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수도권	금액	25,299	30,685	30,985	57,673	49,485	194,127
	(비중)	(73.9)	(71.7)	(72.0)	(75.1)	(73.1)	(73.4)
5대광역시	금액	3,126	4,718	4,756	7,134	6,692	26,426
	(비중)	(9.1)	(11.0)	(11.0)	(9.3)	(9.9)	(10.0)
지방	금액	2,630	3,229	3,901	5,660	5,199	20,619
	(비중)	(7.7)	(7.6)	(9.1)	(7.4)	(7.7)	(7.8)
해외	금액	3,194	4,145	3,403	6,335	6,264	23,341
	(비중)	(9.3)	(9.7)	(7.9)	(8.2)	(9.3)	(8.8)
계	금액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264,513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3), 《2022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

○ 투자방식별 투자 현황은 투자건수와 금액 모두 지분증권 투자, 채무증권 투자, 프로젝트 투자, 혼합투자 순으로 나타남.

- 농·축·수산업의 경우 지분증권투자 비중이 낮고 채무증권투자와 프로젝트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식품산업, 식품 관련 산업, 농·축·수산 관련 산업의 경우 지분증권투자 비중이 높고 채무증권투자와 프로젝트 투자 비중은 낮게 나타남.
- 이는 투자 리스크가 높은 1차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용이한 채무증권과 프로젝트 투자 위주로, 기업가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식품 관련 산업, 농·축·수산 관련 산업의 경우 자본이득 실현이 용이한 지분증권으로 투자하려는 경향 때문임.
- 지분증권투자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채무증권투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를, 프로젝트 투자는 경영체의 특정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를, 혼합투자는 지분증권투자와 채무증권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함.

〈표 4-9〉 투자방식별 투자 현황

단위: 건, 억 원, %

산업 분야	지분증권투자	채무증권투자	프로젝트투자	혼합투자	합계
투자건수					
농·축산업	25 (32.9)	21 (27.6)	25 (32.9)	5 (6.6)	76 (100)
수산업	0 (0.0)	6 (54.5)	5 (45.5)	0 (0.0)	11 (100)
식품산업	179 (60.1)	53 (17.8)	30 (10.0)	36 (12.1)	298 (100)
농·축·수산 관련 산업	185 (59.3)	67 (21.5)	35 (11.2)	25 (8.0)	312 (100)
식품 관련 산업	91 (77.1)	13 (11.0)	5 (4.3)	9 (7.6)	118 (100)
비농업	124 (80.5)	9 (5.9)	0 (0.0)	21 (13.6)	154 (100)
합계	604 (62.3)	169 (17.5)	100 (10.3)	96 (9.9)	969 (100)
투자금액					
농·축산업	254 (24.7)	281 (27.3)	392 (38.0)	103 (10.0)	1,030 (100)
수산업	0 (0.0)	120 (55.8)	95 (44.2)	0 (0.0)	215 (100)
식품산업	2,078 (54.8)	850 (22.4)	253 (6.7)	612 (16.1)	3,793 (100)
농·축·수산 관련 산업	2,327 (57.2)	928 (22.8)	411 (10.1)	405 (9.9)	4,071 (100)
식품 관련 산업	1,047 (73.7)	134 (9.4)	26 (1.8)	214 (15.1)	1,420 (100)
비농업	1,431 (79.3)	124 (6.9)	0 (0.0)	249 (13.8)	1,804 (100)
합계	2,356 (38.7)	2,114 (34.7)	1,168 (19.2)	455 (7.5)	12,333 (100)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 업력별 투자 현황은 투자건수와 금액 모두 후기, 중기, 초기 순으로 나타남.

- 이는 VC들이 투자 리스크 감소를 위해 업력이 오래된 후기 농식품 경영체에 우선하여 투자해 온 영향으로 보임.
- 다만 초기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마이크로펀드, 영파머스펀드 등 특수목적펀드 조성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후기투자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초기 및 중기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4-10〉 업력별 투자 현황

단위: 건, 억 원, %

구분	초기(~3년)	중기(3~7년)	후기(7년~)	합계
건수(비중)	294(30)	316(33)	359(37)	969(100)
금액(비중)	3,158.6(26)	3,837.6(31)	5,336.7(43)	12,332.9(100)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글상자 4-3〉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조합 투자금액과 창업투자회사 직접투자 금액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최근 5년간 초기기업 투자비중은 28.6%, 중기기업 투자비중은 41.2%, 후기기업 투자비중은 30.2%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후기기업 투자비중이 줄어들고, 중기기업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벤처투자 시장 내 유동성 증가, 투자기법의 다양화, 투자 관련 정보의 생산과 활용 증가에 따른 정보 비대칭 감소,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중기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영향 때문임.

〈글상자 표 4-3〉 최근 5년간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초기 (~3년)	금액	9,810	13,901	13,205	18,598	20,050	75,564
	(비중)	(28.6)	(32.5)	(30.7)	(24.2)	(29.6)	(28.6)
중기 (3~7년)	금액	11,935	17,662	17,268	34,814	27,305	108,984
	(비중)	(34.8)	(41.3)	(40.1)	(45.3)	(40.4)	(41.2)
후기 (7년~)	금액	12,504	11,214	12,572	23,390	20,285	20,285
	(비중)	(36.5)	(26.2)	(29.2)	(30.5)	(30)	(30.2)
계	금액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264,513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3), 《2022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

1.3. 농식품자펀드 회수·청산 및 출자자 현황

1.3.1. 농식품자펀드 회수 현황

○ 유형별 회수 현황⁴⁰⁾을 살펴보면 회수건수 기준으로는 상환(30.6%), 제3자매각(16.1%), 장외매각(16.1%), 프로젝트(15.3%), IPO(9.9%), 기타(9.6%), M&A(2.3%) 순이며, 회수금액 기준으로는 IPO(23.8%), 상환(23%), 장외매각

⁴⁰⁾ 회수 완료된 투자건 기준이며 일부 회수된 투자 건은 제외.

(18.1%), 제3자매각(12.4%), 기타(10.9%), 프로젝트(10.1%), M&A(1.7%) 순으로 나타남.

- 회수건수와 회수금액 모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단순 상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금이 농식품 경영체에 유보되어 지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IPO는 금액 기준으로는 23.8%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수 기준으로는 9.9%에 불과하며, 금액과 건수 모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표 4-11〉 유형별 회수 현황

단위: 건, 억 원, %

회수방법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4	합계
회수건수														
IPO	-	-	2 (33.3)	1 (9.1)	4 (16.7)	3 (9.1)	7 (23.3)	8 (14.3)	4 (8.7)	1 (2.7)	3 (5.7)	1 (2.4)	1 (7.1)	35 (9.9)
M&A	-	-	-	-	-	1 (3.0)	-	3 (5.4)	-	-	4 (7.5)	-	-	8 (2.3)
프로젝트	1 (100)	-	1 (16.7)	4 (36.4)	7 (29.2)	7 (21.2)	6 (20)	8 (14.3)	8 (17.4)	7 (18.9)	2 (3.8)	3 (7.3)	-	54 (15.3)
장외매각	-	-	-	-	3 (12.5)	5 (15.2)	2 (6.7)	7 (12.5)	10 (21.7)	9 (24.3)	10 (18.9)	10 (24.4)	1 (7.1)	57 (16.1)
제3자매각	-	-	-	-	-	7 (21.2)	1 (3.3)	5 (8.9)	7 (15.2)	7 (18.9)	13 (24.5)	10 (24.4)	7 (50.0)	57 (16.1)
상환	-	1 (100.0)	2 (33.3)	4 (36.4)	9 (37.5)	9 (21.2)	12 (40)	24 (42.9)	11 (23.9)	10 (27.0)	15 (28.3)	10 (24.4)	3 (21.5)	108 (30.6)
기타	-	-	1 (33.3)	2 (18.2)	1 (4.2)	3 (9.1)	2 (6.7)	1 (1.8)	6 (13.0)	3 (8.1)	6 (11.3)	7 (17.1)	2 (14.3)	34 (9.6)
전체	1 (100)	1 (100)	6 (100)	11 (100)	24 (100)	33 (100)	30 (100)	56 (100)	46 (100)	37 (100)	53 (100)	41 (100)	14 (100)	353 (100)
회수금액														
IPO	-	-	151.7 (60)	29.7 (11.2)	268.6 (43.1)	70.7 (10.2)	251 (38.1)	508.5 (42.2)	129.1 (18.2)	17.4 (3.4)	104.6 (11.0)	23 (5.5)	9.1 (3.7)	1,563.4 (23.8)
M&A	-	-	-	-	-	21.8 (3.0)	-	44.3 (3.7)	-	-	45.9 (4.8)	-	-	112 (1.7)
프로젝트	5.6 (100)	-	15 (5.9)	56.3 (21.3)	69.7 (11.2)	79.9 (11.5)	83.7 (12.7)	100.9 (8.4)	97.4 (13.7)	75.7 (14.6)	56.8 (6.0)	21.8 (5.2)	-	662.8 (10.1)
장외매각	-	-	-	-	54.6 (8.7)	337.3 (48.6)	31.4 (4.7)	125.7 (10.4)	96.2 (13.5)	157.6 (30.3)	172.7 (18.1)	193 (46.3)	19.6 (7.9)	1,188.1 (18.1)
제3자매각	-	-	-	-	-	27.3 (3.9)	16.2 (2.5)	65.5 (5.4)	111.2 (15.7)	108 (20.8)	265.2 (27.9)	54.2 (13.0)	168.3 (68.1)	815.9 (12.4)
상환	-	10.2 (100)	10.9 (4.3)	64.5 (24.4)	230.3 (36.9)	95.3 (13.7)	204.2 (31.0)	289.4 (24.0)	128.2 (18.1)	100.1 (19.3)	205 (21.5)	123.4 (29.6)	45.2 (18.3)	1,506.7 (23.0)
기타	-	-	75.4 (29.8)	113.8 (43.1)	0.5 (0.1)	61.6 (8.9)	72.6 (11.0)	71.3 (5.9)	147.9 (20.8)	60.4 (11.6)	101.8 (10.7)	1.4 (0.4)	4.9 (2.0)	711.6 (10.9)
전체	5.6 (100)	10.2 (100)	253 (100)	264.3 (100)	623.7 (100)	693.8 (100)	659.1 (100)	1,205.6 (100)	709.9 (100)	519.2 (100)	952.1 (100)	416.9 (100)	247.1 (100)	6,560.5 (100)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 2022년 기준 전체 벤처투자 유형별 회수금액 비중은 매각(56.5%), IPO(24.3%), 상환(9.6%), 프로젝트(8.8%) 순으로 나타남.
- 반면 2022년 기준 농식품자펀드의 유형별 회수금액 비중은 IPO 5.5%이며 M&A는 실적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글상자 4-4〉 유형별 벤처투자 회수 현황

- 회수 유형별 비중은 매각, IPO, 상환 또는 프로젝트 순서로 나타남.
- 상환과 프로젝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IPO의 경우 2020년 38.9%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19와 연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22년 24.3%까지 감소
- 매각은 2020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IPO를 통한 회수 부진의 영향으로 2022년 56.5%까지 증가

〈글상자 표 4-4〉 최근 5년간 유형별 벤처투자 회수 현황

단위: %

구분	'18	'19	'20	'21	'22
IPO	24.3	26.7	38.9	32.1	24.3
매각	46.0	43.0	36.3	48.8	56.5
상환	11.2	12.5	13.3	9.8	9.6
프로젝트	17.2	16.6	10.1	8.7	8.8
기타(배당, 이자 등)	1.3	1.2	1.4	0.6	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3), 《KVCA MONTHLY MAGAZINE》 vol. 176.

1.3.2. 농식품자펀드 청산 현황

○ 2022년 말 기준 총 16개 펀드(농식품계정 15개, 수산계정 1개)가 청산하였음.

- 단순 수익배수(분배금액/납입금액)는 151%, IRR(내부수익률)은 10.1%를 기록하였음.
- 청산 펀드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AJU-Agrigento 1호 투자조합으로 31.49%, 수익률이 가장 낮은 펀드는 이앤-농식품 프로젝트 투자조합으로 △ 1.62%임.
- 양질의 투자실적을 보유한 펀드부터 우선하여 청산하는 점, 향후 청산예정 펀드 중 정책목적이 강한 특수목적펀드의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청산펀드의 수익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4-12〉 청산 자펀드 현황

단위: 건, 억 원, %

계정	펀드명	청산일	결성액	납입액(A)	분배액(B)	수익배수(B/A)	IRR
농식품	그린농림수산물투자조합	*18.5.31.	200	200	284	142	9.69
농식품	현대-동양농식품사모투자전문회사	*18.6.28.	320	266	303	114	4.15
농식품	솔리더스글로벌농식품바이오투자펀드1호	*18.7.17.	170	170	381	224	16.99
농식품	AJU-Agrigento1호투자조합	*18.11.30.	200	200	514	257	31.49
농식품	컴퍼니케이파트너스농림축산투자조합	*19.1.14.	200	200	350	175	19.98
농식품	나우농식품투자펀드1호	*19.8.30.	200	188	233	124	5.61
농식품	나눔농축산전문투자조합1호	*19.10.25.	200	164	164	100	0.02
농식품	KDBC식품산업투자조합1호	*19.12.19.	160	160	216	135	7.71
농식품	이앤-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20.7.17.	100	100	93	93	△1.62
농식품	메가농축산성장투자조합2호	*21.3.31.	100	90	96	107	1.63
농식품	메가농식품투자조합1호	*21.8.31.	150	150	181	121	4.85
수산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21.11.24.	150	135	193	143	8.35
농식품	유류아이피농림수산물투자조합 제1호	*21.12.24.	100	100	102	102	0.29
농식품	나우농식품 투자펀드2호	*22.7.27.	160	160	194	121	4.63
농식품	미래에셋 애그로 프로젝트 투자조합	*22.12.21.	200	160	296	185	11.96
농식품	노루-미래에셋 애그로스타프로젝트 투자조합	*22.12.21.	160	128	272	212	22.85
합 계			2,770	2,571	3,872	151	10.10

자료: 농업정보보험금융원 내부자료.

1.3.3. 농식품자펀드 출자자 현황

○ 2022년 말 기준 농식품자펀드 출자자 구성은 정책기관(58.2%), 운용사(21.9%), 일반법인(12.9%), 금융기관(6.3%), 기타단체(0.39%), 개인(0.22%), 연기금(0.09%) 순으로 나타남.

- 정책기관과 운용사의 출자 비중이 80%에 달해 민간 LP의 출자 비중이 낮으며, 민간 LP도 일반법인과 금융기관이 대부분임.
- 운용사가 펀드 결성 시 결성액의 1% 이상만 출자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21.9%의 높은 출자비율을 기록한 것은 민간자본 유치 부족분만큼 운용사가 출자를 부담하였기 때문임.

- 한국모태펀드는 정책기관(40%)과 운용사(10.6%)의 출자 비중이 50% 수준으로 농식품모태펀드보다 낮고, 민간 LP도 금융기관(17%), 연기금(12.2%), 일반법인(12.2%), 기타단체(4.2%)로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표 4-13〉 자펀드 출자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정책기관 ¹⁾	금융기관 ²⁾	연기금 ³⁾	운용사	일반법인	기타단체 ⁴⁾	개인	외국인	합계
농모태	10,487 (58.2)	1,142 (6.3)	15 (0.09)	3,956 (21.9)	2,319 (12.9)	70 (0.39)	38 (0.22)	-	18,027 (100)
한국모태	149,938 (40)	63,512 (17)	45,533 (12.2)	39,787 (10.6)	45,589 (12.2)	15,770 (4.2)	4,919 (1.3)	9,421 (2.5)	374,470 (100)

주 1)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 모펀드, 기금.

2)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3) 연기금: 연금, 공제회.

4) 기타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한국벤처투자(2022), 《KVIC Market Watch 4Q22》 Vol. 29.

2.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모태펀드 운영방안

2.1. 농식품모태펀드의 대외 환경

2.1.1. 벤처투자 시장 위축

- 최근 금리인상 기조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벤처투자 시장이 급격한 위축을 겪고 있음.

- 2022년 벤처투자는 전년 대비 9,162억 원, 11.9% 감소하였음. 분기별로 살펴보면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8.6%,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3.9% 감소하여 감소추세가 매우 가파른 상황임.
- 향후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 벤처투자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4-14〉 최근 3년간 분기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년	'21년	'22년	'21년 동기 대비	
				증감액	증감률
1분기	7,732	13,187	22,214	9,027	68.5
2분기	8,821	19,053	19,315	262	1.4
3분기	12,371	20,913	12,843	△8,070	△38.6
4분기	14,121	23,649	13,268	△10,381	△43.9
합계	43,045	76,802	67,640	△9,162	△11.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3), 《2022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

2.1.2. 투자 및 회수 부진

○ 농식품 투자시장 역시 유동성 감소, 펀드 민간출자자(LP)의 요구수익률 상승, 기존 투자기업의 경영악화 및 IPO 연기 등으로 인한 회수지연에 따라 시장 내 민간 투자자금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2년 2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던 투자금액이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8.3%,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하였음.

- 농식품 투자시장 위축에도 2022년 투자액이 전년 대비 7% 감소에 그친 것은 2022년 농식품자펀드 결성액이 전년 대비 794억 원 증가(2021년 1,933억 원 → 2022년 2,727억 원)한 영향으로 판단됨.

〈표 4-15〉 최근 3년간 분기별 농식품자펀드 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년	'21년	'22년	'21년 동기 대비	
				증감액	증감률
1분기	252	247	281	34	13.8
2분기	158	360	461	101	28.1
3분기	390	358	221	△137	△38.3
4분기	262	539	436	△103	△19.1
합계	1,062	1,504	1,399	△105	△7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 특히 회수금액이 전년 대비 51.6% 감소하는 등 기존 투자 건의 회수 부진으로 ‘투자→ 회수 →재투자’의 농식품 벤처투자 선순환에도 악영향이 예상됨.

〈표 4-16〉 최근 3년간 분기별 농식품자펀드 회수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년	'21년	'22년	'21년 동기 대비	
				증감액	증감률
1분기	67	364	200	△164	△45.1
2분기	166	530	388	△142	△26.8
3분기	170	439	119	△320	△72.9
4분기	286	475	167	△308	△64.8
합 계	689	1,808	874	△934	△51.6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 이에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농식품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경영체 발굴 → 펀드 조성 및 투자 → 회수’의 단계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 투자단계별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2.2.1. 농식품 경영체 발굴단계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 경영체와 민간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투자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 플랫폼은 농식품 유관기관⁴¹⁾ 간 협업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 또는 투자한 농식품 경영체의 투자유치 관련 정보를 농식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 민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

41)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 또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 경영체에 농식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 민간 투자자의 투자경력, 희망 투자 분야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네트워킹을 활성화함.
- (정보통합) 유관기관별 산재한 정보를 표준화하고 시스템을 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 정보를 일괄 등록 및 주기적으로 갱신함.
- (구성) 기업·투자자·투자유치(IR) 전용 공간으로 구성하여 농식품 기업의 기본정보, IR 정보, 투자자 정보 등을 등록·집적 및 통합에 대해 제공함.
- (활용) 펀드 운용사 외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자 공간을 개방하여 농식품 분야에 대한 관심 및 투자 촉진을 유도,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투자 관련 지원사업 등 수시 정보제공 및 펀드 운용사와의 온라인 IR·오프라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함.

〈그림 4-2〉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 구성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 이 플랫폼을 통해 향후 농식품 투자 관련 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생산한 농식품 기업 정보, 시장 분석 리포트, 산업 동향 보고서 등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에 등록된 농식품 경영체 정보를 기반으로 보조 및 융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정보도 맞춤형으로 적시에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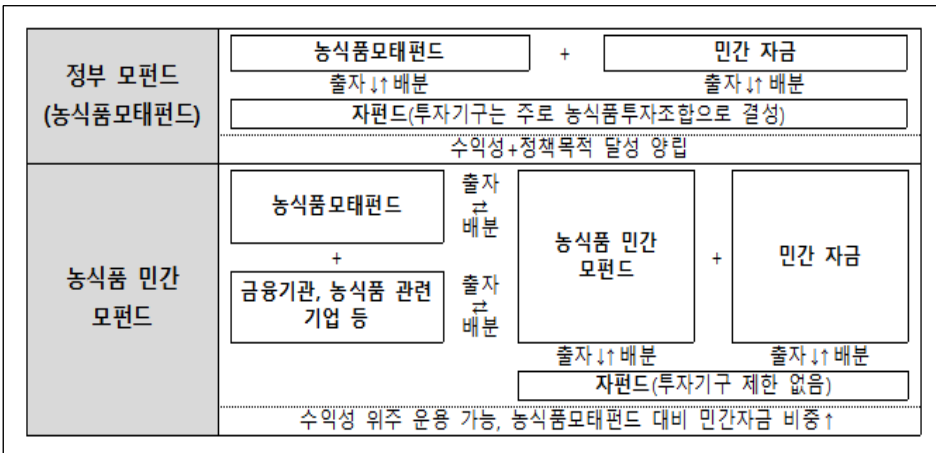
2.2.2. 펀드 조성 및 투자단계

가) 농식품 민간 모펀드 조성

○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확대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식품모태펀드와 별도로 민간 주도로 결성·운영되는 농식품 민간 모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모펀드의 경우 정책펀드인 농식품모태펀드와 달리 소규모 경영체 우선투자 의무⁴²⁾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수익 극대화 운용 전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한 민간 출자자 모집 확대를 지원함.
-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모펀드가 주도하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농식품모태펀드가 주도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운영이 필요함.

〈그림 4-3〉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 모펀드 비교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42) 매출액 100억 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 농식품 경영체에 펀드 결성액의 12% 이상을 투자.

○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까지 이루어진 상태임.

- ‘벤처투자촉진법’ 제63조의2 신설(2023. 4. 18)을 통해 민간 모펀드의 등록, 결성자격, 규제적용 예외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023. 5. 26)를 통해 민간 모펀드의 출자금 총액을 1,000억 원 이상, 자본금 20억 원 이상 및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인 자에 한해 운용사 자격 부여, 상장 법인 보유제한 비율 완화, 수익성 중심의 자율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출자 허용, 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비율을 60%로 하는 등 운용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민간 모펀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부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4-17〉 농식품 민간 모펀드 세제혜택 부여(안)

구분		세부내용(안)
소득세 (개인)		· (소득공제) 민간 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양도차익) 개인이 출자한 민간 모펀드로부터 출자받은 자펀드에서 발생한 농식품 경영체의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법인세	내국 법인	· (세액공제) 민간 모펀드를 통하여 농식품 경영체 투자 시 농식품 경영체 투자금액의 5%에 대하여 직전 3년 대비 투자 증가분의 3%를 공제 *최대(모펀드 출자금액의 60%, 모펀드 출자 자펀드의 농식품 경영체 투자금액)×5%+당해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증가분×3% 공제
	모펀드 운용사	· (양도차익)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농식품 경영체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부가가치세		·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공급하는 출자 관리·운용 용역은 면세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나) 창업기획자의 농식품자펀드 결성 허용

○ 창업 초기기업 발굴·육성 및 투자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도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창업기획자는 창업 초기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자본금,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영리 및 비영리법인을 의미함.

-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창업기획자는 417개사로 6,487개 기업에 1조 3,091억 원을 누적 투자함. 특히 2022년 2,079개 기업에 5,787억 원을 투자하여 전년 3,705억 원 대비 56.2% 증가한 수치를 기록함.
- 3년 미만 초기기업에 대한 누적 투자액이 1조 116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 대비 77.3%⁴³⁾에 달하는 등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업가치 향상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현행법상(농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 1항)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특정요건을 갖춘 유한회사,⁴⁴⁾ 농·수·산립조합 및 중앙회만 단독으로 농식품자펀드 결성이 가능함.

-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도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초기·소규모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식품 투자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⁴⁵⁾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⁴⁶⁾ 도입

○ 법 개정(농식품투자조합법 제2조 2호)을 통해 농식품자펀드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을 활용한 투자를 허용함.

- 현행 ‘농식품투자조합법’에서는 투자방법으로 지분투자,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부인수권부사채 인수, 프로젝트 투자만 허용하고 있음.
- 투자검토과정에서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이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부문은 기업가치 산정 단계로, 특히 매출액, 영업이익 등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한 벤처기업은 기업가치 산정 시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43) 벤처투자촉진법상 창업기획자는 창업 초기기업에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 투자 의무 보유.

44)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보유.

45)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SAFE): 지분인수계약 형태로 투자하되 미리 지분가격을 설정하지 않고 향후 후속투자 유치 시 지분가격을 정하는 투자 방식.

46) Convertible Note(CN): 주식 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로 투자하되 미리 전환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향후 후속 투자유치 시 전환조건을 정하는 투자 방식.

- 벤처투자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는 신속한 투자를 위해 기업가치 산정 없이 우선 투자를 시행하고, 향후 후속투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 기존 투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SAFE와 C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선진 벤처금융기법을 반영한 다양한 투자방법을 도입하여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4-18〉 조건부지분인수계약-조건부지분전환계약 비교

구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대상	혁신 벤처·창업기업(초기기업 중심으로 활용)	
성격	지분+계약형 투자방식 (지분 인수권은 이자·만기 없음)	계약+채권형 투자방식 (전환사채 인수권+사채)
전환 시기	책정한 기업가치에 따라 지분가격 설정 (후속투자 유치 시)	책정한 기업가치에 따라 지분가격 설정 (후속투자 유치 시)
수익 비교	원금보장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高위험-高수익 구조 (후속투자가 없을 때)	상대적으로 中위험-中수익 구조 (원금·이자 보장이 가능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2),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라) 농식품자펀드의 투자목적 차입 허용

○ 현행법상(농식품투자조합법 제14조 5항 2호) 농식품자펀드의 투자목적 차입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

- 농식품자펀드의 유동성 확보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후속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자펀드의 투자목적 차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조합원 보호와 투자위험 관리를 위해 조합 명목이 아니라 조합이 설립하고 100% 지분을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를 통해 차입을 시행함.

○ 법 개정을 통해 SPC 설립 및 금융기관 차입 근거 마련, SPC의 업무집행 사항, SPC에 대한 보증조항 등을 신설함.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SPC 차입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도록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표 4-19〉 투자목적회사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개정 내용	사유
· 농식품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완전자회사(100% 지분 보유)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제14조의2(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운영) 신설	· 현행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의 차입 불가능(농식품투자조합법 제14조 5항 2호) ·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 농식품투자조합의 SPC 설립과 SPC를 통한 차입 허용
· SPC의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	· 현행 농식품투자조합법의 제14조(업무의 집행), 제15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제16조(결산보고), 제22조(조합의 공시)를 농식품투자조합이 설립한 SPC에도 준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은 SPC에 대한 보증 가능 * 농신보 외 기보, 신보 등 활용 가능한 보증제공기관은 고시에 모두 포함	· SPC의 금융기관 차입을 농신보 등이 보증하여 SPC를 통한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
· 농식품투자조합법 제28조 행정처분 또는 제30조 등록 취소 사유에 위법한 SPC 설립·운영을 추가	· 농식품투자조합이 신설되는 제14조의2를 위반한 SPC를 설립·운영할 경우 등록취소,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가능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 장기적으로는 M&A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자펀드의 SPC 지분 100% 보유 규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M&A 목적으로 SPC를 설립하는 경우 다양한 투자구조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임원 등의 SPC 출자를 허용하여 원활한 M&A를 지원함.

마)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도입

○ 투자조건부 융자는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초기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한 형태임.

- 초기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추가자금을 공급받고, 이후 후속투자 유치 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이며, 금융기관은 그 대가로 별도의 신주인수권(warrant)을 부여받음.

○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은 통상 리스크가 높으나,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은 직후 약 3~4년간은 부도율이 낮음에 착안함.

- (방식) 스타트업은 대출 시 지분희석을 최소화하는 수준(통상 융자금액 1~2%)의 신주인수권을 금융기관에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저리로 대출을 실행함.
- (시기) 대출심사 시 VC의 실사자료 활용을 위해 통상 VC 투자와 동시 또는 직후에 시행하며, VC와 금융기관 간 정보교환·협력이 필요함.
- (상환방법) 충분한 현금 흐름이나 담보가 없는 스타트업도 상환할 수 있도록 후속 투자금을 대출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장점) ① 일반대출보다 자금 조달 용이, ② 투자와 비교 시 지분희석 낮음, ③ 초기투자 후 후속투자까지 자금부족 해소 가능함.
- (사례) 미국의 벤처금융 전문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은 ‘벤처기업-VC-SVB’ 간 협업관계를 기반으로 성공한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트위터(Twitter) 등 수많은 스타트업에 투자조건부 융자를 제공한 바 있음.

〈표 4-20〉 투자조건부 융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비교

구분	투자조건부 융자 (Venture Debt)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대상	벤처투자 유치기업 (Series A 단계 이상)	모든 일반기업	
방식	일반 융자방식 (융자기관)	사채+신주인수권 (채권시장)	신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 (채권시장)
신주 인수권	별도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 (융자계약과 별개)	유사 개념으로 신주인수권 증권(분리형 BW) 존재	신주인수권 개념 없음 (융자금액 자체가 신주로 전환)
규모	통상 융자금액의 1~2% 수준 (협상으로 지분희석 최소화)	융자금액의 100% 수준	
융자 및 상환	벤처투자자와 동시 또는 직후 융자 후속 벤처투자 유치 시 상환	-	
기타	투자기관-융자기관 간 강한 네트워크·신뢰관계 존재	신주인수권과 채권은 서로 별개로 존속	신주 전환 시 채권 소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2),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2.2.3. 회수단계

가) 세컨더리 펀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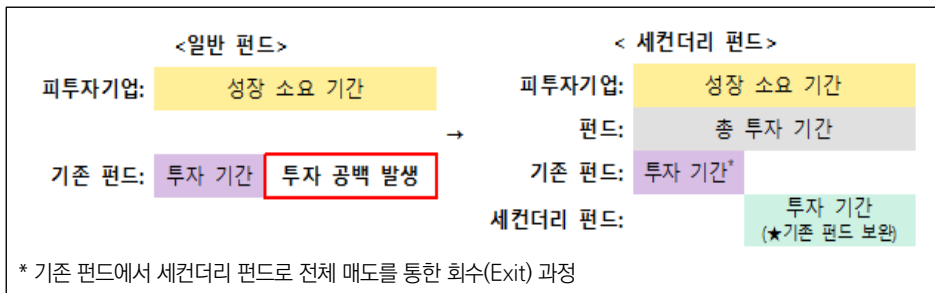
○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는 기업에 직접투자(Primary Fund)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구주)이나 펀드에 출자한 출자자(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펀드임.

- 투자자로서는 초기기업 투자보다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타 산업 대비 투자 후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농산업의 투자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농식품 투자시장의 특성상 구주와 펀드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의 회수와 재투자를 도와 투자시장 활성화가 가능함.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한 세컨더리 펀드는 720억원 규모에 불과하였으나, 동 기간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 세컨더리 펀드 규모는 1조 7,000억 원에 달함.

-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농식품 투자자산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확대하여 기존 투자자의 중간회수와 회수금액의 재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림 4-4〉 일반 펀드와 세컨더리 펀드 비교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 LP 지분유동화 형태의 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세컨더리 펀드 형태는 구주 세컨더리와 LP 지분유동화로 구분됨.
- 구주 세컨더리는 기존 투자자나 펀드가 보유한 개별 투자지분을 인수하는 형태이며, LP 지분유동화는 개별 투자지분이 아닌 펀드에 출자한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임.
- 구주 세컨더리의 경우 운용사가 우량 투자건만 선별하여 인수하려는 경향이 강할 경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존재함.
- 이에 ① 전체 펀드의 수익률에 기반을 두어 지분을 매입하여 선별매수로 인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② 민간 LP에게 지분회수 기회를 직접 제공하여 세컨더리 거래 활성화와 민간 투자자의 투자시장 유입을 달성할 수 있는 LP 지분유동화 펀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에 ① 기존 VC와의 네트워크(투자 포트폴리오 확보), ② 개별 피투자기업에 대한 가치 측정·분석 역량 향상, ③ 주식(구주) 보유 주체와 거래 시 협상 능력 향상 지원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회수시장 다양화

- 농식품자펀드가 보유한 투자자산 회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회수시장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활성화된 회수시장을 통한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구조가 긴요함.
 - 특히, 장외 유통 플랫폼은 IPO보다 기업 공시부담이 적고 투자자금의 회수 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음.
- 다양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 농식품자펀드가 보유한 투자자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한국거래소 등)과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4-21〉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현황

구분	KSM(KRX Startup Market)	VC 구주유통망	K-OTC 시장
개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 활성화 등을 위한 장외시장	구주거래 활성화로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돕기 위한 플랫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 법인의 주식 거래를 위한 플랫폼
운영기관	KRX 한국거래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시기	2016. 11.	2012. 7.	2014. 8.
등록기업	131개	1,304개	153개
특징	코스닥, 코넥스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종합 인큐베이터 역할	등록된 매물정보를 검색하여 회원 간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방식	시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매 체결 시 결과가 안전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

5

AgTech 전망과 기술금융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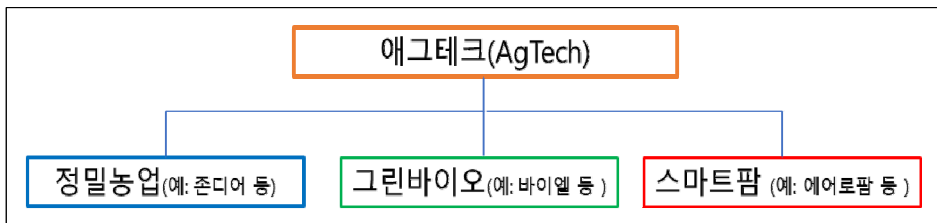
1. AgTech 현황과 전망

1.1. AgTech의 의의 및 부상 배경

- ICT, 빅데이터 등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산업 대비 농산업을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은 데다가 그 발전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에 속한다는 인식이 그간 지배적이었음.
- 여기에,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 인구의 급감, 고령화 추세,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훨씬 더 강해지게 되었음.

- 그러나 최근 농산업은 단순히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ICT, 빅데이터, AI 등의 최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농업 생산물의 최적화, 가공 및 유통, 고객 맞춤형 농축산물 제공 등 농식품 Value Chain 전반에 걸쳐 유용한 정보를 수집·분석, 가공, 유통 등 확장된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최근에는 북미, 중국, 유럽 등 농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결합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⁴⁷⁾

〈그림 5-1〉 AgTech 주요 기술구성도



자료: 저자 작성.

- 농업이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중심에는 애그테크(AgTech) 기술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동 기술의 개요, 주요 진출 분야 및 주요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전망해보고자 함.⁴⁸⁾
-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농업생산과 관련된 투입(Input)을 효율화하고 생산(Output)을 극대화하여, 농업 생산물의 재배와 수확의 혁신을 가져오는 기술임.

47) 농업의 미래(2017), 《애그테크 스타트업》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상황에 맞게 각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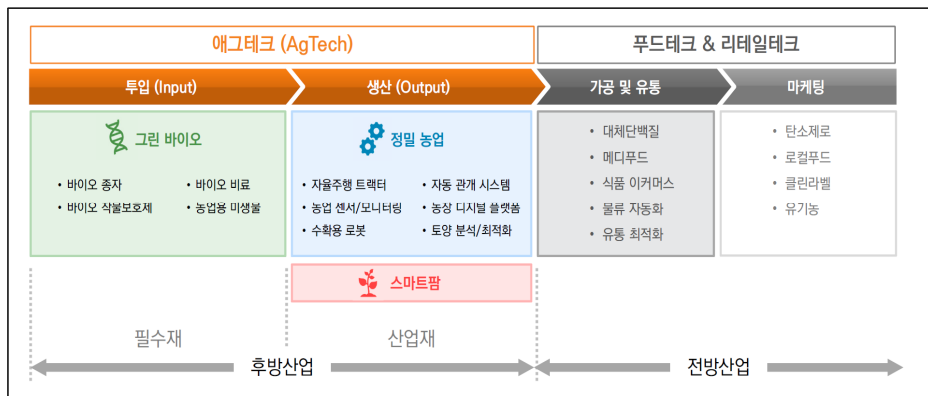
48) 타 보고서에 이미 국내외 시장전망 등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본고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주요 스타트업 진출 분야와 후방사업과 전방산업 내 주요 기술들의 특징을 살펴본 후, 주로 애그테크 투자현황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애그테크의 대표적인 구성 기술로는 그린바이오(바이오 종자, 바이오 작물보호제 및 비료, 농업용 미생물 등), 정밀농업(자율주행 트랙터, 센서/모니터링, 농업용 로봇, 디지털 등), 스마트팜(재배환경 향상성 유지, 농업데이터의 클라우드, 빅데이터화 등) 등으로 분류됨.⁴⁹⁾

○ 요컨대, 애그테크란 농업의 스마트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린바이오, 하드웨어(첨단기기 및 장비),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분야로 ‘농업의 후방산업’ 전체를 의미함.⁵⁰⁾

- 애그테크 산업의 가치사슬에 대하여 주요 단계별로 재정리하면, 투입(input)단계는 Pre-production 단계이기도 하며, 육종, 채종, 육묘에 이르는 종자산업 중심의 그린바이오에 해당함.
- 생산(Production) 단계는 생산의 정밀화와 자동화, 수확과 선별에 이르는 농사 진행단계로써, 이 단계의 핵심기술 분야는 정밀농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5-2〉 애그테크(AgTech) 산업 가치사슬 및 전후방산업 연관도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2023), 《기회의 애그테크 변화의 중심》.

49)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2023), 《기회의 애그테크 변화의 중심》.

50) 리딩투자증권(2022), 《Agtech》.

- 애그테크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농업 관련 수요환경과 공급환경 모두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먼저 수요환경 변화로는 인구증가(2050년 까지 100억 명까지 증가⁵¹⁾), 바이오 연료 수요증가, 대체 단백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음.
- 농산물 공급환경 면에서는 농경지가 국내외적으로 감소 중이고, 노령화와 더불어 농촌 인구 역시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
- 여러 가지 농업을 둘러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로 활용됨에 따라 애그테크는 집중 조명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주요 식량 생산국 교역 금지 등으로 촉발된 식량안보에 대해 위기의식 증대
 - 폭염과 홍수 등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농약 활용 감축 의무화 추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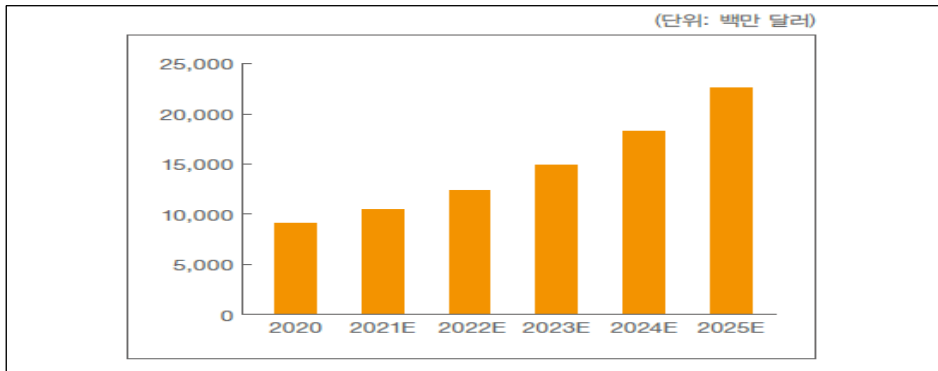
1.2. 애그테크(AgTech) 국내외 시장전망

- 글로벌 애그테크 시장 규모는 '20년 약 91억 달러 수준을 기록한 바 있으며, 연평균 16.4% 성장해 '25년 226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 전 세계 경종부문 자동화 기기 규모는 '19년 약 3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연평균 13.9%씩 증가해 '25년 8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화 기기부문 중 드론과 위성기반 위치시스템 분야 성장세가 강함.

⁵¹⁾ UN(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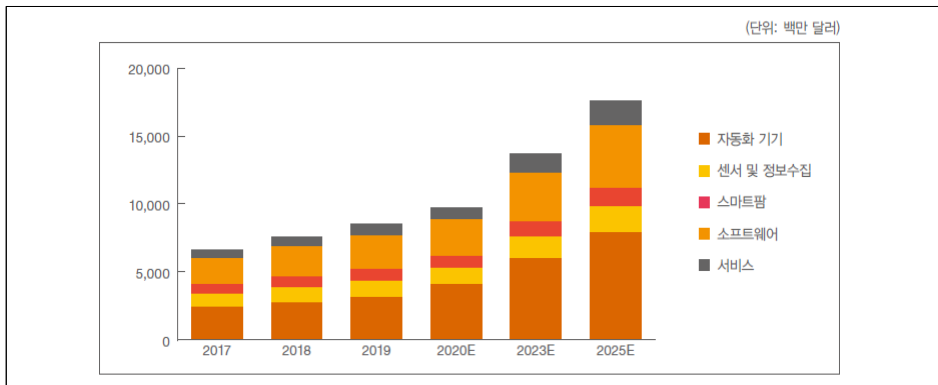
-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의 경우, '19년 약 9억 달러 규모를 형성했으며, CAGR 7.6%로 성장해 '25년 약 13억 달러가 될 전망이고, 공기조화 장비 부분의 성장성이 높게 평가됨.
- 연평균성장률 11.9%가 예상되는 소프트웨어부문은 클라우드 기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⁵²⁾

〈그림 5-3〉 전 세계 애그테크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2022), 《푸드테크의 시대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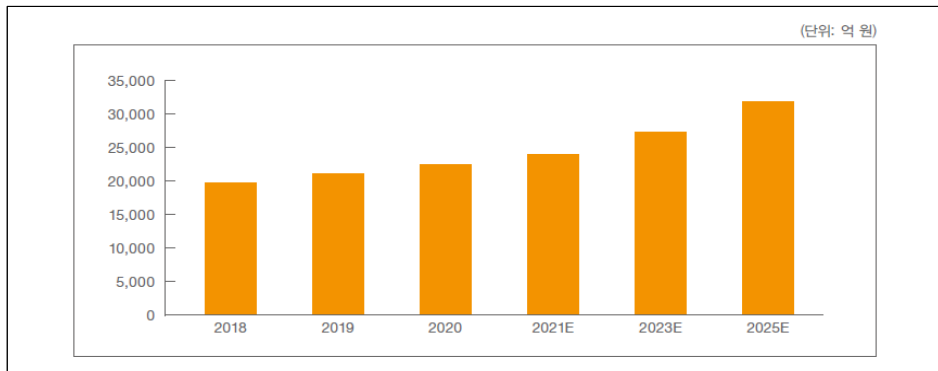
〈그림 5-4〉 전 세계 경종부문 애그테크 세부 시장별 규모 및 전망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2022), 《푸드테크의 시대가 온다》.

⁵²⁾ 삼일PWC 경영연구원(2022), 《푸드테크의 시대가 온다》.

〈그림 5-5〉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2022), 《푸드테크의 시대가 온다》.

- 국내 스마트팜 규모는 '20년 2.2조 원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성장률 9%로 성장해 '25년 3.2조 원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 인구증가로 일정 수준의 농업생산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화 및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장 확대는 불가피해 보임.

2. AgTech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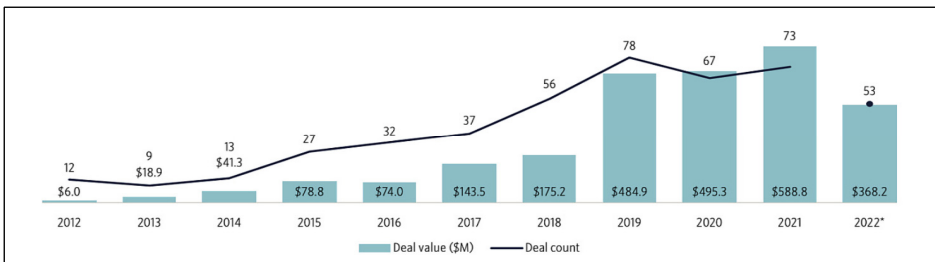
2.1. AgTech 분야 연도별 벤처투자 동향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사태 지속 등은 식량공급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음.
- 기후 변화, 증가하는 세계 인구, 지정학적 문제로 식량공급 및 식량안보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따라서 생산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음.

○ 자동화, 인공 지능 및 기계 학습(AI&ML), 컴퓨터 비전 및 기타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농기구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최근에 기술상용화를 대부분 앞두고 있음.

○ 이에 AgTech(로보틱스와 스마트 필드 장비 기준) 분야에서 벤처투자는 2012년 6백만 달러에서 2021년 588.8백만 달러까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기록적인 자금 조달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6〉 연도별 로보틱스와 스마트 필드 장비 분야 벤처투자건수



자료: PitchBook(2022), 2023 industrial technology outlook.

○ 시장정보업체 PitchBook(2022)에 의하면, 스마트 농업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는 농업과 애그테크(AgTech) 분야에 주목하며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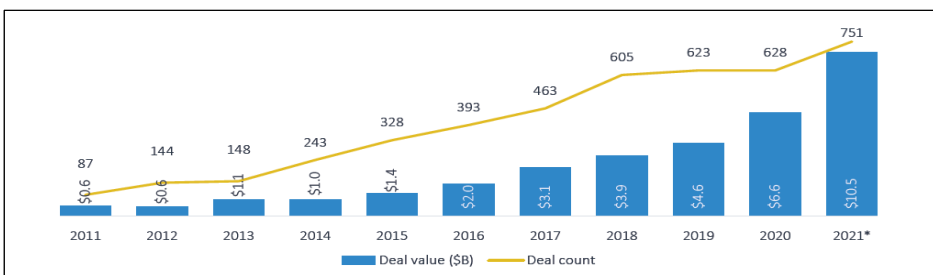
○ 특히 사모펀드(Private Equity: PE) 및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의 투자 열기가 높음.

○ 또한, 애그테크 관련 기업으로 해마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PE·VC·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자가 스마트 농업 및 애그테크 분야 기업에 투자한 건수는 연평균 24.5%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음.

- 2021년 한 해 동안만 보더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건수는 751건으로 기록되며, 이는 2011년 87건과 비교하면 약 9배 이상에 달함.
-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털 투자 특성상 투자액을 미공개 처리하는 딜(Deal)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투자규모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이를 고려하고 거래액이 공개된 딜을 대상으로 살펴봤을 때, 글로벌 PE 및 VC,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는 2021년 10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스마트 농업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글로벌 투자자가 관련 분야에 투자한 총 자금은 연평균성장률 13.3% 수준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⁵³⁾
- 삼정KPMG 보고서에 의하면, 애그테크 투자의 경우, 미국 기반 벤처캐피털 리스트 혹은 액셀러레이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애그테크 스타트업들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 대비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기 때문임.

〈그림 5-7〉 연도별 애그테크(AgTech) 투자 Deal 거래 현황



자료: PichBook(2022), industrial and emerging tech research 2023 industrial technology outlook.

⁵³⁾ 삼정KPMG(2020), 《스마트 농업과 변화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 또한, 동 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농장 관리진단 소프트웨어, 첨단 농업 장비, 위성 항공 이미지 분석, 신규 농업 시스템 등 관련 기업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음.

〈표 5-1〉 애그테크(AgTech)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 현황

투자자	유형	투자건수 (10-19)	주요투자기업 (16-19)	분야
SOSV	벤처캐피털 (미국)	44	Nordetect	농장·농작물 관련 소프트웨어 (농작물 진단 플랫폼)
			ThingC	농장·농작물 관련 소프트웨어 (로보틱스 기반 농장관리)
			AGRON Solutions	농장·농작물 관련 소프트웨어 (토양진단 도구)
			Tensorfield Agriculture	로보틱스·기계화·농업 장비
			Hexafly	혁신식품
			Re-Nuble	바이오에너지·소재 (바이오 소재 활용 폐기물 처리)
Techstars	엑셀러레이터 (미국)	37	SkyWatch	위성·항공 이미저리(Imagery) (지구관측데이터 분석)
			ImagoAI	중간단계 기술 (첨단 이미지 솔루션 및 AI 식품안전관리)
			Natufia	신규 농업 시스템(수직농법)
Y Combinator	엑셀러레이터 (미국)	27	Vinsight	농장·농작물 관련 소프트웨어 (농작물 수확량 예측)
			Bear Flag Robotics	로보틱스·기계화·농업 장비 (자율주행 트랙터)
			Shiok Meats	혁신식품, 대체식품 식물성 고기 제조
			Grubmarket	어그비즈 마켓플레이스
SVG Ventures	벤처캐피털 (미국)	26	Agrosmart	농장·농작물 관련 소프트웨어
			Arable Labs	농장·농작물 관련 소프트웨어
			FarmWise Labs	로보틱스·기계화·농업 장비
			Tortuga AgTech	신규 농업 시스템(수직농법 솔루션)

자료: 삼정KPMG(2020), 《스마트 농업과 변화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 국내 투자자들도 세계적인 애그테크 투자열풍에 힘입어 친환경 먹거리 및 첨단 농업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

○ 이들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면서도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과 성장 여력이 높은 국내 농업 기업을 주요 투자처로 인지하고 유망 첨단 농업 기업 물색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내 주요 투자자들의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2〉 애그테크(AgTech)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현황

투자자	투자대상	시기	내용
카카오인베스트먼트 (구 케이벤처그룹)	만나 CEA	2015년	카카오 산하의 투자전문회사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구케이벤처그룹)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활용한 스마트팜 솔루션과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만나CEA에 100억 원(지분 약 33%)을 투자
DSC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	더파머스	2015년	2014년 12월 농산물 도소매업, 이커머스(E-commerce)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설립됨. 온라인 식품플랫폼 '마켓컬리'를 운영 중인 더파머스가 창업했을 당시, 50억 원을 투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AJ캐피탈파트너스	그린 플러스	2016년	AJ캐피탈 파트너스 및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그린플러스 투자를 위해 62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펀드 '마이다스 AJ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을 결성. 그린플러스는 첨단 유리온실의 설계·시공 및 식물공장시스템 설치 관련 사업을 영위
유류아이파트너스 외	엔싱	2018년	유류아이파트너스 및 티비티 등 벤처캐피탈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컨테이너 형태의 모듈형 스마트팜 솔루션 제조업체에 25.5억 원을 투자. 엔싱은 스마트팜 단지 구축에 대부분 자금을 활용하며 향후 재배농작물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스톤브릿지벤처스 외	더플랜잇	2019년	순식물성 대체식품 관련 플랫폼 및 제품개발 업체 더플랜잇은 스톤브릿지벤처스, 롯데액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KDB캐피탈로부터 15억 원의 투자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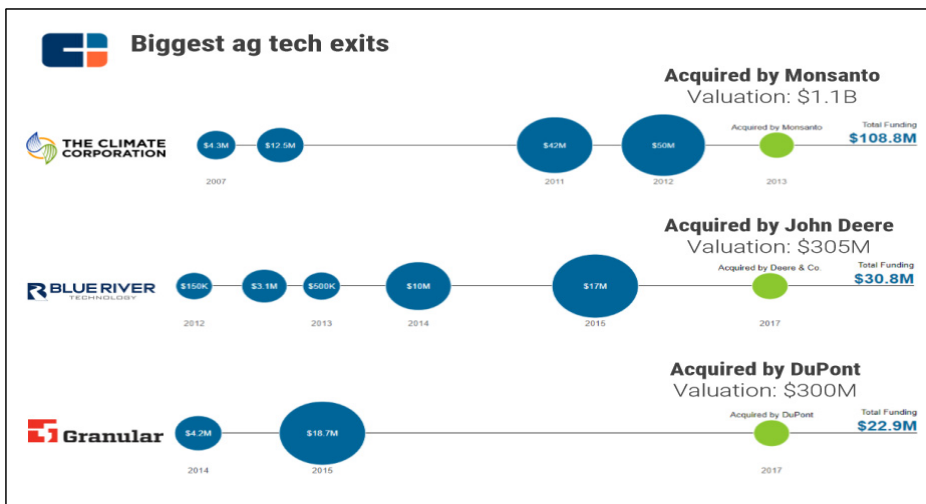
자료: 삼정KPMG(2020), 《스마트 농업과 변화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2.2. AgTech 분야 큰 규모의 투자 출구(Exit) 현황

○ AgTech 분야에서 대규모 가치평가를 통해 실제로 대규모 펀딩이 성사된 기업으로 아래와 같이, 몬산토에 의해 108.8백만 달러에서 인수된 더 클라이메이트 코퍼레이션, 농기계 전문업체 존디어사에 의해 305백만 달러에서 최종 인수된 블루리버 그리고 듀폰에 의해 300백만 달러에서 인수된 그랜놀라 등이 있음.

○ 이처럼, AgTech 스타트업의 투자의 출구(Exit)는 몬산토, 듀폰, 존디어사 등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IPO 경로뿐만 아니라 기술특례상장, SPAC 합병상장 등 투자자들의 출구방안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첨단 AgTech 스타트업 기업들의 스케일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8〉 AgTech 분야 큰 규모의 투자 출구(Exit) 현황



자료: CB Insights(2017). the agtech market map 100 startups powering the future of farming and agribusiness.

2.3. 국내 기술금융 현황 및 농식품 기술금융 현황

2.3.1. 국내 기술금융 현황

- 그간 국내 기술금융은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기술금융 실적 평가 시행 등 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성장이 이루어졌음.
- 즉, 기술금융 초기 금융당국의 기술금융 실적 평가 반영을 통한 인센티브 정책은 기술신용대출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작용했던 것임.
- 또한, 금융회사도 정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확충 및 자체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 기술 심사 역량을 강화하였음.
- 현재는 주요 시중은행 기술평가 전문인력 수준이 평균 20명에서 22명까지 확충되었으나, 지방은행은 아직 7~10명 수준에 불과함.
- 국내 은행들은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금융을 중소기업 영업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 목표로 선정하고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9월 기술신용대출 잔액 191조 7,000억 원 규모를 나타냈는데, 이는 동일 시점 중소기업 전체 대출 잔액 736조 1,000억 원 대비 2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015년 15%밖에 차지 않던 것이 거의 2배 가까이 그 비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⁵⁴⁾

⁵⁴⁾ 전국은행연합회 기술금융 담당자와의 인터뷰 자료와 하나은행 기술금융연구소 2020년 기고문(“국내 기술금융 지원 현황 및 시사점”)을 토대로 정리함.

○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연도별 주요 분야별 기술금융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음.

-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금융시장은 2015년 4,115억 원 규모에서 2021년 2조 5천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2021년 기준 IP보증대출 33.72%, IP담보대출 24.31%, IP투자 41.96%로써, 총 IP대출이 58.04%로 여전히 투자보다는 대출의 비중이 더 높음.
- 다만, 2015년 기준의 경우, IP보증 68.68%, IP담보 20.44%, IP투자의 비중이 10.89%를 나타내어 시간이 지날수록 IP투자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졌음.
- 이는 IP대출 일변도에서 IP대출, IP투자 등 기술금융의 형태가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5-3〉 연도별 주요 분야별 기술금융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IP보증	2,826	4,934	4,930	4,872	7,240	7,089	8,445
IP담보	841	202	866	884	4,331	10,930	6,088
IP투자	448	638	1,075	1,876	1,933	2,621	10,508
합계	4,115	5,774	6,871	7,632	13,504	20,640	25,041

자료: 특허청 보도자료(2022. 2. 22.), “지식재산금융 6조원 돌파, 지난해 2.5조원 신규 공급”.

2.3.2. 농식품 기술금융 현황

○ 농식품 분야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IP보증대출액이 3억 원(전체 7,089억 원), IP담보대출액이 100억 원(전체 1조 930억 원), IP투자액은 448억 원(전체 2,621억 원), 현물투자금액은 8.78억 원으로 나타났음.

○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은 전체 기술금융 분야별 금융 발생 수준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 5-4〉 농식품 분야 연도별 주요 분야별 기술금융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IP보증 금액	IP담보 금액	IP투자 금액	현물투자 금액
2017	0	8.8	70	1.69
2018	2.97	0	139.5	4.91
2019	18.8	24	260.57	0
2020	11.34	57.14	434.48	8.75
2021	3	100.4	448.19	8.78
2022	0	30	15	3.08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내부자료.

2.3.3. 기술신용대출 현황

〈표 5-5〉 연도별 TCB(기술신용대출) 현황

단위: 조 원, 천 건, 천 개

구분	'14	'15	'17	'19	'20	'21	'22.10
대출잔액	8.9	60.6	127.7	205.5	266.9	316.4	341.7
누적평가건수	13.3	78.3	344.4	781.5	1,117.3	1,514.9	1,857.2
누적평가기업	12.0	47.2	116.7	219.2	311.3	392.0	450.8

자료: 금융위원회(2022), 《22년 상반기 은행권 Tech 평가 결과발표》.

○ 기술신용대출은 시중은행이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대출하는 금융상품으로, 상기의 〈표 5-3〉, 〈표 5-5〉와 같이, 기술금융 규모('21년 기준, 2조 5,041억 원) 대비 기술신용대출은 압도적으로 큰 규모(341조 7,000억 원)를 보이고 있음.

- 기술신용대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가장 대표적인 기술금융 기반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임.

○ 기술정보 DB(TDB)를 기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된 기술평가신용(TCB)은 기술신용등급을 평가하여 담당 은행에 제공하며, 기술신용평가 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은행은 기업의 대출가능 여부를 결정함.

○ <표 5-5>와 같이,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누적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450조 8,000억 원, 건수는 약 186만 건(누적건수)을 기록하였음.

○ 전체 시중은행에서 농식품 분야 TCB 비중은 파악하기는 어려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농협 TCB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 분야 TCB를 추산하였음.

- 농식품 분야의 TCB 비중은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6.33%, 평가건수로는 8.86%로서 타 산업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5-6> 연도별 TCB(기술신용대출) 현황

구분		'23년 4월(억 원)	비중	'23년 4월(건수)	비중
특수 은행	기업	1,024,864	31.30%	244,225	29.65%
	산업	42,232	1.29%	2,129	0.26%
	수출입	746	0.02%	40	0.00%
	농협	207,364	6.33%	72,958	8.86%
	수협	11,141	0.34%	3,021	0.37%
시중 은행	국민	432,521	13.21%	135,962	16.51%
	신한	442,487	13.51%	104,572	12.69%
	우리	412,413	12.60%	81,739	9.92%
	하나	434,524	13.27%	118,776	14.42%
	씨티	1,313	0.04%	123	0.01%
	SC	303	0.01%	58	0.01%
지방 은행	경남	80,085	2.45%	17,485	2.12%
	광주	16,434	0.50%	3,484	0.42%
	대구	76,417	2.33%	17,124	2.08%
	부산	89,290	2.73%	21,252	2.58%
	전북	138	0.00%	81	0.01%
	제주	1,879	0.06%	724	0.09%
합계		3,274,149	100%	823,753	100%

자료: 전국은행연합회(2023), 《2023년 4월 기술금융 월보집계-은행별 기술신용대출 금액 및 평가건수 현황》.

○ 국내 벤처투자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음.

- 업종별로는 ICT서비스가 2조 3,518억 원, 유통/서비스 1조 3,126억 원, 바이오/의료 1조 1,058억 원의 순으로 투자되었음. 농식품 업종으로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
- 상기에 구분된 업종 중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기타 업종에 농식품 업종도 포함되어 있는데, 2022년 기준, 기타 업종은 6조 7,640억 원의 벤처투자 금액 대비 5.5%에 불과함.
- 즉, 농식품업체에 대한 투자는 타 업종들에 대한 투자 대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표 5-7〉 연도별 국내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ICT제조	1,566	1,489	1,493	1,870	3,523	2,987
ICT서비스	5,159	7,468	10,446	10,764	24,283	23,518
전기/기계/장비	2,407	2,990	2,036	2,738	5,172	4,108
화학/소재	1,270	1,351	1,211	1,765	2,297	2,871
바이오/의료	3,788	8,417	11,033	11,970	16,770	11,058
영상/공연/음반	2,874	3,321	3,703	2,902	4,161	4,604
게임	1,269	1,411	1,192	1,249	2,355	1,615
유통/서비스	4,187	5,726	8,145	7,242	14,548	13,126
기타	1,283	2,077	3,518	2,546	3,693	3,753
합계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내부자료.

○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에 대한 비중은 기술평가 전체 건수 대비 농식품 분야 기술평가 비중으로도 유추할 수 있음.

- 다만, 획득 가능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술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건수를 토대로 농식품 분야 기술평가 비중을 산출하였음.

- 산출결과, 농업의 경우, 0.23%(47건)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음.
- 요컨대, 농식품 분야의 경우, 정책자금이든, 민간이든 여전히 그 비중이 낮아, 다음 절에서 논하게 될 농업 기술금융 확대방안 등을 통해 기술금융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5-8〉 2022년 상반기(1. 1.~7. 1.) 기술보증기금 업종별 기술평가 현황

단위: 건 수

기계	재료 금속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학	건설	기타 제조	사업 서비스	섬유	환경	농업	기타	합계
4,753	2,450	2,664	3,198	2,108	414	2,016	1,902	555	17	47 ^{주)}	633	20,757

주: 농식품 분야 특화 기술평가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경우, 2022년에 기술평가 33건을 수행함.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사업부 내부자료.

3. 농업 분야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과제

3.1. 기본 방향

- 농식품 산업이 발전하려면 통신, 기술,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분야의 활용과 융합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애그테크 산업의 육성 및 고도화는 매우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농식품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풍부한 시장 자본이 유입되어야 할 것임.
- 다만, 농식품 산업에서 민간에서의 기술금융 유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첫째는 농식품 기술금융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둘째, 민간 투자를 위한 금융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비농업인 출자 제한, 농업법인 관련 규정 등에서 민간의 대규모 투자 유인을 제한하는 규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다양한 기술금융 확대방안(선진 농업국가들의 미니채권 사례 벤치마킹, IP-SLB 등)을 통하여 민간의 자금 유입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외에도 농식품 분야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감면, 농축산물 관련 의제 매입세액⁵⁵⁾ 공제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같이 농식품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다양하게 마련해놓을 때 기술금융 확대방안은 좀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고에서는 기술금융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와 기술금융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함.

3.2. 농식품 기술금융 저해요인⁵⁶⁾과 대응방안

3.2.1. 기술가치 평가 인식 개선

- 기술가치 평가는 어렵다는 인식이 농식품 기술금융을 채택 및 운용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자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을 사용하여 자본을 확보하는 데 중요함.

⁵⁵⁾ 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임.

⁵⁶⁾ WIPO(2022), WIPO and Intangible Asset Finance: Moving Intangible Asset Finance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 그러나 기술가치 평가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로서 일반적인 유형자산 가치평가 대비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며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에는 자연적인 한계가 있음.

- 즉, 현행 농식품 기술금융(IP담보대출, IP보증대출, 현물출자, IP투자 등)의 기준이 되는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는 점, 농식품 분야에 특화되고 동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그테크에 대한 높은 기술 이해도를 두루 갖춘 기술금융 전문가의 부족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술가치 평가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 일관된 기준이 없어 평가 전문가 간의 평가 결과의 공신력 있는 비교 분석 등이 불가능한 점 등도 농식품 기술금융을 금융권에서 타 산업 대비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 이에, 일관된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기술금융 의사결정 가이드라인 구축이 시급해 보임.

○ 이를 위해서 우선은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표준산업별 로열티율 데이터, 할인율 데이터, 각종 재무비율 데이터 등의 현행화가 선행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농식품 분야별 기술금융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비율과 할인율 등에 대한 자료를 고도화하였으나, 상당히 제한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해당 자료를 활용한 기술금융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농식품 분야 전문가, 기술평가 전문가, 그리고 금융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의사결정을 준행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적화 이후에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농식품 분야에 일관된 특화 및 기술가치 평가 기준의 수립임.

- 기준 수립에서 국제가치평가 기준서인 IVSC(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uncil)의 IVS 210을 참조함.
 - IVS 210은 가치 기반, 평가 접근 방식 및 방법, 시장 접근 방식, 소득 접근 방식, 비용 접근 방식, 기술(지적재산)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을 다룸. 기술(지적재산)의 할인율/수익률, 기술(지적재산)의 경제적 수명 및 세금감면 혜택 등 다양하게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것임.
- 다만, 범용적인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농식품 분야 특히 애그테크에 부합하도록 최적화 작업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전문평가 기술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기술가치 평가가 어려워 활용하기 꺼리는 것을 어느 정도 해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기술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의 중심 역할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평가 커뮤니티 구축 및 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는 기술금융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공인 감정사(Chartered Valuer and Appraiser: CVA⁵⁷⁾)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가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음.
- 현지 평가 전문가가 IVS(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에 따라 실무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시아 최초의 비즈니스 평가 인증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임.

⁵⁷⁾ Singapore Accountancy Commission CHARTERED VALUER AND APPRAISER PROGRAMME BODY OF KNOWLEDGE.

- 이 프로그램은 기업, 특정 자산 및 산업 평가에서 회사의 여러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섯 가지 모듈로 구성됨.⁵⁸⁾
- 예컨대, 네 번째 모듈인 ‘재무 보고를 위한 비즈니스 평가’에서는 개념적 프레임워크, 다양한 접근 방식에서의 평가 프로세스, 사용된 실용적인 통찰력 및 방법론을 포함하여 기술자산의 평가를 다루고 있음.
- 그리고 자메이카에서는 JIPO(Jamaic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가 자메이카에서 IP 평가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음.
- 2021년에는 중소기업 및 실무자와 함께 일련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영국의 숙련된 IP 평가 컨설턴트로부터 고급 IP 평가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받은 IP 평가자 집단, 은행가, 비즈니스 및 금융 전문가, Bank of Jamaica 대표 등이 본 과정에 참여함.
- 이 전략적 참가자 조합은 자메이카 최초의 IP 평가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JIPO에서 지도 및 지원을 받고 있음.
- 요컨대, 농식품 분야 특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관련 가치평가 핵심 변수 데이터베이스의 집적화와 국가 인증 공인 감정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치평가가 난해하다(기준이 모호하고 평가자마다 너무 상이하여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공신력도 제고시킬 수 있어, 동 분야 기술금융 의사결정의 실행가능성을 보다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⁵⁸⁾ 모듈1(비즈니스 평가 소개), 모듈2(법률과 가치평가), 모듈3(기술거래를 위한 가치평가), 모듈4(재무 보고를 위한 가치평가), 모듈5(응용화된 비즈니스 가치평가), 모듈6(캡스톤 모듈).

3.2.2. 무형자산 이해 제고

- 많은 대출기관과 투자자는 무형자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도 기술금융 발전의 저해요인임.
- 농식품 분야는 특히 기술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받아들여 주는 투자자와 전문기관의 수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임.
- 법적 복잡성과 현금 창출 잠재력을 이해, 예측 및 귀속시키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IP기반의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대출기관의 전문성과 친숙한 판단 기준 밖에 있음.
- 종종 자본조달 집행 의사 결정자들은 친숙함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무형자산을 위험하다고 인식함. 그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존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에 쉽게 맞지 않기 때문임.
- 이와 같이 상업 대출기관은 역사적으로 무형자산을 부채 조달을 위한 적절한 담보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무형자산에 대해 자본을 제공한 경험이 거의 없음. 많은 투자자, 특히 개발도상국 투자자들은 이 자산군을 다루는 경험이 제한적임.
-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무형자산 금융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대출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음.
- 여기에는 일본(일본 특허청의 IP 금융 촉진 프로젝트)에서 예시된 것처럼 지역 비즈니스 대출기관의 신용 의사 결정 프로세스 지원이 포함될 수 있음.
- 아래에서는 대출 커뮤니티가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IP 중심 회사에 참여하여 회사 IP에 대해 배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줌.

- 2015년에 도입된 일본 특허청의 IP 금융 촉진 프로젝트⁵⁹⁾는 많은 지역 금융기관이 IP 중심 이니셔티브(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에 참여하게 했음.
-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술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지역 금융기관 담당자들은 이전에는 대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재무정보에만 중점을 두었지만, IP금융 활용 대출자의 기술사업화 경쟁력 및 성장동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사내에 변리사와 기술가치 평가 가치결론 도출 등의 기술평가 전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착한 결과라고 판단됨.
- 또한 이는 결국 유망한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이 지역 상업 대출기관의 25%까지 신장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음.
- 일본 지역금융기관들은 IP금융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IP관련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 산업 전문가 등이 모여 결성된 IP관련 신용위원회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요코하마 시는 상공조합 중앙금고와 ‘요코하마 지식재산 미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요코하마 시는 독자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미래기업’ 인증을 부여함.

⁵⁹⁾ 일본 특허청은 기술(지식재산) 사업 평가서 작성 지원, 기술(지식재산) 대출설명서 작성, 기술(지식재산) 금융 심포지엄 개최와 같은 지원을 함. 이 지원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 대출에 연결하기 위함임.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의 작성지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 조사기관이 작성함. 이 평가서는 금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어 중소기업의 대출 지원 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됨.

- 대출 금액은 운영자금의 경우 5천만 엔 이내이며(5년), 설비자금의 경우 1억 엔 이내(10년) 조건으로 용자를 지원함.
- 대출 지원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 조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판로 개척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음.⁶⁰⁾
- 요컨대, 기술금융에 대하여 이해도가 낮고 보수적인 지역 농업 분야 금융기관 당국자들에 대한 기술금융에 대한 교육, 사내에 기술금융 전문가와 변리사 등 기술금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문가 영입과 사내 인력들의 기술금융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지자체 혹은 정부차원에서 기술금융 인증을 받은 농식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을 병행하는 가운데, 민간금융기관의 농식품 분야 시장에 자본유입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⁶¹⁾⁶²⁾

3.2.3. 기술금융 관련 비용 부담 완화

- 세 번째 저해요인으로는 기술금융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금융 관련 제반 비용을 들 수 있음.
- 예컨대 농식품 분야에서 가치평가를 받게 되면, 기술금융 가치결론 금액이 1억~5억 원 사이로 형성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의 판결이 불인정될 경우, 현물출자를 인정받기 위해 투입된 제반 비용(법무사 대행 비용 수백만 원, 가치평가 수수료 약 1,500만 원 이상, 그 외 제반 행정처리 비용 등)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도 낮은 기술금융에 대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모두의 시도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

⁶⁰⁾ 배순구 외(2016), APEC 회원국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을 위한 IP 비즈니스 매뉴얼 개발.

⁶¹⁾ WIPO(2022), WIPO and Intangible Asset Finance : Moving Intangible Asset Finance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⁶²⁾ 특허청(2017), 《APEC 회원국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을 위한 IP 비즈니스 가이드북》.

- 농식품 분야의 기술가치 평가 및 광범위한 실사와 관련된 복잡성 때문에 무형 자산 금융은 다른 거래보다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불분명한 요구 사항과 맞춤형 프로세스의 필요성 때문에 전체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음.
- 기술금융을 추구하는 회사의 경우 가치평가 및 기타 필요한 관리 작업과 관련된 자본 지출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선급이며 파이낸싱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함.
 - 이는 매몰 비용의 위험을 증가시켜 IP 자금 조달 모델의 매력을 감소시킴.
- 이에, 유망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식품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관련 제반 비용 (평가수수료, 법무사 혹은 변리사 서비스 비용, IP담보대출 혹은 현물출자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 등)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농식품 분야에서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 간에 이루어지는 기술금융 활동은 현행보다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3. 농식품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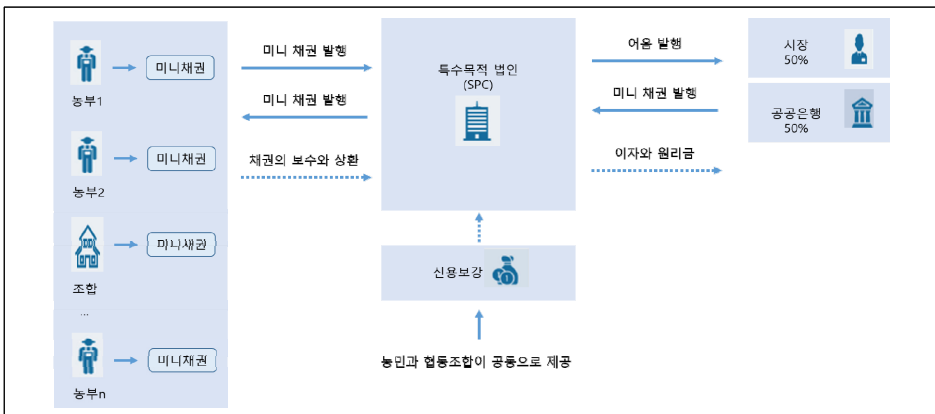
3.3.1. 미니채권 발행 활성화

- 미니채권(Mini Bond) 발행⁶³⁾을 활성화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농식품 혁신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함<그림 5-9>.

⁶³⁾ 미니 채권은 전통적인 은행 자금 조달의 제한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자본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 이탈리아 시장에 출시된 중·장기 채무 상품이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농산업체 혹은 협동조합 등이 채권을 발행하고 전문적이고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인수하는 채무증권임. 이와 관련하여 소형 트랙터 업체인 Antonio Carraro도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9만 유로의 미니채권을 발행한 실제 사례도 있었음.

- 농식품 분야는 혁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혁신에 대한 이해도 더디며, 주로 농업인과 소기업이 직면하는 재정적 위험 때문에 발생함.
- 상업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음. 이로 인해 농식품 가공 및 포장 분야의 많은 농부와 소기업이 스마트 기술을 채택하지 못함.
- 그러나 지역, 국가수준에서 미니 채권을 발행하면 이러한 장벽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5-9〉 미니채권 발행에 기초한 재무구조도



자료: The European Commission(2019), How finance can boost innovation in agri-food.

- 이러한 위험 공유구조는 농업인과 소기업에게 혁신에 투자할 추가자금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다른 농업인 및 기업과 위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실제로 미니 채권을 발행하여 농식품 분야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성공한 이탈리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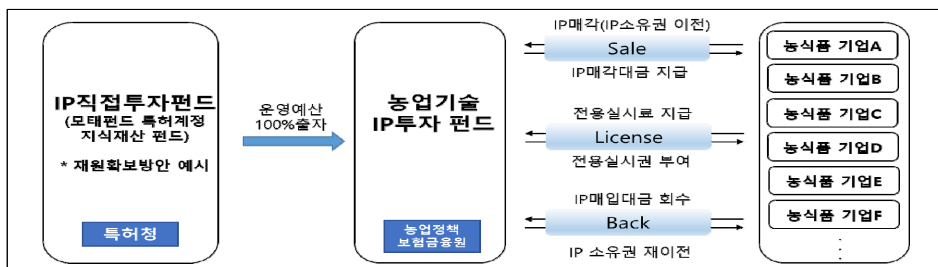
- 즉, 2012년과 2013년에 이탈리아는 국가 부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직원이 1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2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을 위한 미니 채권 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도입했음.
- 어드바이저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은 미니채권을 발행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했음.
- 2016년 이탈리아 협동조합인 Faro Società Cooperativa Agricola는 미니 채권을 발행하여 농식품부문에 자금 유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으며, 이와 유사한 미니 채권 시장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및 노르웨이에도 존재함.
- 법적 프레임워크와 거래 시스템이 마련되면 혁신적인 증권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음(예: 이탈리아의 미니 채권시장 플랫폼 ‘ExtraMOT Pro’) 2014년에 Viveracqua 베네토 지역의 8개 이탈리아 수도 시설에서 EIB(유럽투자은행)와 함께 기능을 입증하는 구조를 개발했음.
- 이 구조는 잘 확립된 이탈리아 증권화 법적 프레임워크와 함께 미니 채권을 사용하여 위험 프로필로 인해 장기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 농업 법인에 적시에 필요자금을 지원하였음.
- 이는 증권기업이 은행을 중개하지 않고 증권화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체 자금을 조달한 최초의 사례였음.
- 유럽의 농부, 협동조합 및 소규모 농식품 사업체에서도 유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은 교차 담보로 발행된 미니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혁신에 투자할 수 있음.
- 그러면 신용 강화 도구로 지원되는 더 큰 대출이 가능해짐. 농업인과 기업은 위험 분산 및 신용 강화 시설로 인해 더 나은 신용 상태를 갖게 됨.

- 미니 채권은 여러 가지 잠재적 이점을 제공함. 발행자는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 부채 다각화, 은행자금 조달에 대한 의존도 감소, 브랜드 홍보, 더 나은 대차대조표(자금 조달 출처의 평균 만기 연장 및 신용 안정성) 및 세금 인센티브(특히 발행이자에 총 영업이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될 수 있음).
- 미니 채권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률, 낮은 위험 프로필(특정 상황에서 발행은 부분적인 국가 보증의 혜택) 및 세금 혜택을 특징으로 하는 혁신적인 중·장기 채무 상품의 혜택을 받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거주 투자자를 포함하여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를 받는다는 것임.
-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 당국에서도 이탈리아의 미니채권 발행과 관련된 전용 시장 인프라 구축 및 제반 제도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통하여 농식품 기업에 특화된 미니채권 발행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농식품 산업에서의 기술금융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길 바람.

3.3.2. IP-SLB 활성화

- 농식품 분야에 IP-SLB⁶⁴⁾를 통한 직접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장착하도록 하는 것임.

〈그림 5-10〉 농식품 분야 IP-SLB 자금흐름도(안)



자료: 윤홍근(2021), "농식품 IP-SLB 자금흐름 절차".

⁶⁴⁾ SLB(Sale and license Back): IP보유기업이 사업화 자금 마련을 위해 IP 매각 및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다가 계약종료 시점에 IP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

○ 이를 위하여 ‘농업기술 IP투자펀드’ 조성 후, 출자펀드에서 직접 IP를 취득하여 S&LB 방식으로 투자·운용하는 것을 제안함.

- 주요 투자대상으로는 우수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종자기업, TCB 평가기관에서 T2 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 IP보유 농업법인, IR52 혹은 NET 등 공신력 높은 인증을 보유한 농산업체 등으로 함.
- 운용방식으로는 IP(품종보호권, 특허권 등)를 IP-SLB 투자조합 등에서 매입 하되 로열티 산정 등 적정 기술가치 평가를 시행하고, 라이선싱하고, 약정기간 도래하면 회수하는 구조이며, 이에 대한 구조도는 <그림 5-10>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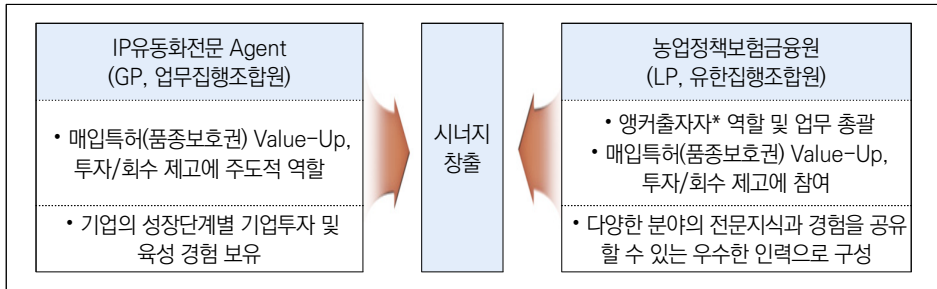
○ 농식품 IP-SLB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는 IP유동화 전문 Agent와 공동협업을 통한 IP S&LB 펀드 직접투자·운용 방식임. 이와 관련하여, 존속기간은 평균 8년 정도(VC 평균투자 회수기간, 투자 4년+회수 4년)이며, 투자 수익 제고 및 회수 RISK 상쇄를 위한 분산투자 방식으로 운용함.

○ 이와 관련하여, 최초투자 시 SLB 단독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VC와 함께할 수 있는 우량기업 선정함. 그리고 대상기업 핵심IP(매출발생)를 통한 거래로 투자비 회수위험을 완화하고 기술사업화 효과 극대화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서는 혹시나 있을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서 선택사항, 회사 상환능력, 계약조항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성장단계별 투자비용 차별화로 회수 위험상쇄(late stage 60% : Seed or Early stage 40%)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5-11〉 농식품 IP-SLB 운용방안 개념도



자료: 윤홍근(2021), “농식품 IP-SLB 자금흐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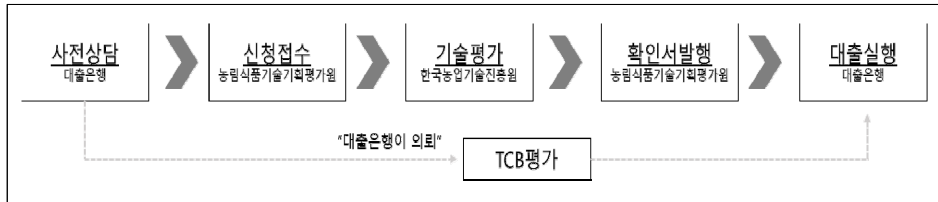
3.3.3. 농식품 분야 기술신용대출 확대

- 농신보 또는 TCB(기술신용평가기관)와의 협력으로 농식품 분야 기술신용대출을 확대하여 기술금융을 촉진코자 함.
- 이를 위하여 먼저 농신보 혹은 주요 기술신용평가기관(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등)과 농식품 기술금융협력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간에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술금융 협력관계를 구축함.
- 그 이후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의 기술창업자금지원사업⁶⁵⁾ 등을 활용한 TCB(기술신용평가기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함.
- 이를 위해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협력업체 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서 대출 취급은행을 현 농협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으로 확대 추진하여 기술금융 융자지원을 확산함.

⁶⁵⁾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행기관이 되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우수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운전자금 및 시설 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임.

- 다만, 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2조 3항의 개정이 필요해 보임. (농협 → 시중은행) 마지막으로, 우수기술평가 정보를 TCB와 공유하여 TCB 평가 수수료 감액을 유도함.

〈그림 5-12〉 농신보 혹은 TCB(기술신용평가기관)와 농업 기술금융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 구성에 따른 기술금융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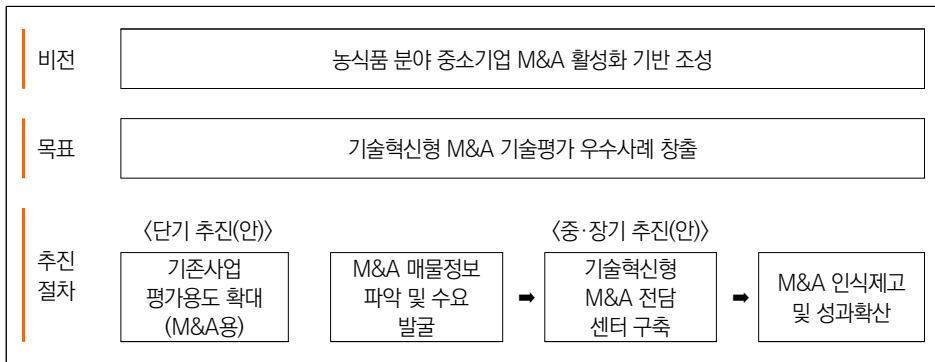
자료: 윤홍근(2021), “TCB사와 농식품 기술사업화 기관간 협력체계 안”.

3.3.4. 기술혁신형 인수합병 적극 추진

-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기술평가 우수사례 창출을 통하여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을 촉진함.
-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⁶⁶⁾ 우수사례 창출 기반을 구축하여, 각 세부 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절차 단계별로 시행하되, 병행추진도 가능함.

⁶⁶⁾ 기술혁신형 M&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에 의한 것으로,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5% 이상의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일컬으며,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주는 제도임.

〈그림 5-13〉 농식품 기술혁신형 M&A 우수사례 창출 추진절차(안)



자료: 윤홍근(2021), “기술혁신형 M&A 우수사례 창출안”.

- 먼저, 한국농업기술지흥원 등의 현행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통한 평가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술금융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임.
- 즉, 현행 지원사업에는 누락된 투자연계 참조용 평가용도를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와 인수합병(M&A)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임.
- 이는 이미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국가 지원사업에 평가용도만 확대하는 것이라 별도의 예산 편성이나 수립이 필요하지 않아, 단기간에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하여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실무담당자와 기술혁신형 M&A를 통한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컨센서스를 구축하여 얻은 아이디어, 정보 등을 토대로 세부 계획을 고도화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거래가능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금융 수행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음.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조합, 관련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기관 간에 상호 업무협의 기반 구축을 통한 유망한 농식품 시장정보 파악, 한국벤처캐피탈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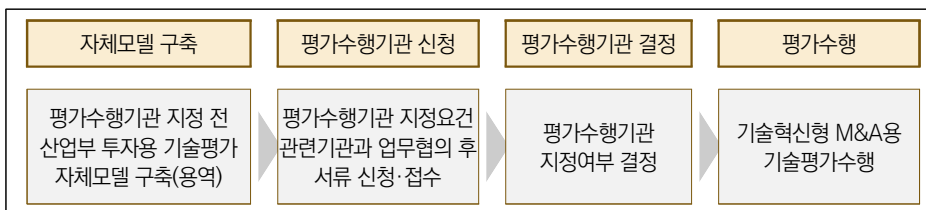
회 ‘M&A 거래정보망’을 활용한 M&A 매물 파악, M&A 자문기관 및 기관 별 M&A 지원센터와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M&A 수요기업(매수, 매도) 발굴 등을 들 수 있음.

- 주체별 역할로는, M&A 자문기관 등과 같은 곳에서는 유망 수요기업 발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과 같은 기술사업화 기관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조합 등은 실제로 투자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기술금융 우수사례를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창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3.5. 기술혁신형 M&A 플랫폼 구축

○ 기술혁신형 M&A 전담센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선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과 같은 기술사업화 전담 기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이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M&A 기업가치평가비용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술평가를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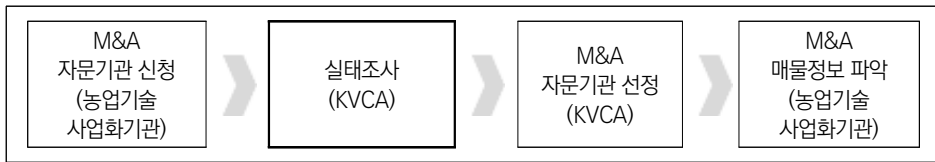
〈그림 5-14〉 기술혁신형 M&A 기술평가 수행기관 지정절차(안)



주: 현행 평가수행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KISTI, KED, 한국발명진흥회.
자료: 윤홍근(2021. 12), 《기술혁신형 M&A 우수사례 창출안》.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과 같은 농업기술사업화 기관이 ‘M&A 자문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물정보를 간접적으로 획득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획득 발굴함으로써, 관련 기술평가 수행건수를 늘릴 수 있을 것임. 이는 실제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우수사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출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임.

〈그림 5-15〉 농업 기술사업화 기관의 M&A 자문기관으로 지정받는 절차(안)



주: 최근 3년간 M&A실적, M&A컨설턴트 보유현황 등에 대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의 실태조사 및 심사 후 지정여부 결정.

자료: 윤홍근(2021), 《기술혁신형 M&A 우수사례 창출안》.

- 궁극적으로는 농식품 기술사업화 기관이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M&A 지원센터로 신규지정을 받거나, 혹은 벤처기업법상 M&A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등 전담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기술금융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그리고 그 외 기술혁신형 M&A 인식제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M&A 세미나를 정례화시킴으로써, 농식품 매수 및 매도 희망 기업, 관련 금융기관 등에 기업성장전략으로서의 인수합병 인식을 제고하고, M&A 희망기업 IR 개최(기업별 발표 및 컨설팅 진행), M&A 매칭·상담회(매수, 매도기업 1:1 매칭,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 개최 운영 등을 통하여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이차보전 전환을 통한 농업정책 금융 효율성 제고 방안

1. 서론

- 경영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금융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시장실패가 나타나기도 함.
 - 개인과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소기업, 농림수산업, 경제적 취약 계층 등에게 낮은 이자율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신용보조를 제공하기도 함.
- 정부의 신용보조 활동 중 하나인 재정융자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재정에서 조성된 자금을 정책 대상자에게 저리로 빌려주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자원 배분의 역할을 수행함.
 - 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에서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정부의 자금을 대출하고 회수하는 활동을 재정융자라고 정의하며, 직접대출과 전대가 이에 해당함(한국재정정보원, 2019).

- 재정용자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상자를 지원하여 금융 소외 계층의 자금 부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

○ 최근 재정부문의 적자, 국가채무의 급증, 정부 사업 집행의 효율성 등 금융과 재정 여건이 변화하면서 재정용자제도의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정부가 대규모로 자금을 조성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재정용자는 정부가 직접 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 복잡한 재정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용자 원금의 기회비용 등이 발생함.
- 재정용자의 대안으로 재정용자를 실세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만큼을 보조하는 이차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농업부문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민간 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정부의 정책금융이 제공됨.

- 고령농가의 비중 증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농지의 담보력, 낮은 수익성,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함.
- 농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시장 실패에 대응하고자 정책금융이 제공되며, 정책금융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의 증대가 기대됨.

○ 다른부문의 재정용자와 같이 농업부문의 재정용자도 정부의 대규모 자금 조성, 용자 집행과 관리의 비효율성, 복잡한 재정체계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됨.

- 농업부문에서도 정부의 재정용자제도의 대안으로 재정용자의 이차보전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정부 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농업 부문 재정용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농업부문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집행 및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 연구는 현재 농업부문 회계와 기금에서 운용하는 재정용자의 이차보전 전환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농업부문 재정용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정용자 중에서 이차보전 전환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순편익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여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이차보전 전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재정금융정책 및 용자제도⁶⁷⁾

2.1. 재정금융정책

○ 협의의 개념으로서 정부의 정책목표를 위하여 특정부문을 우대하여 공급하는 여신, 광의의 개념으로는 정책금융이 시장 원리로 해결하지 못하는 금융 수요를 보완하는 금융으로 정의됨.

- 정부 재정을 직간접으로 투입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우대 금융을 의미하며, 정부가 재정 자원을 사용하여 특정부문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말함.

⁶⁷⁾ 박정수(2022)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함.

- 정보의 비대칭, 수익 저조, 높은 미상환 위험 등 시장 실패로 해결하지 못하는 금융 수요를 보완하는 금융으로, 일부 산업이나 개인은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때, 부족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장의 한계를 보완함.
 - 중소기업, 신용도가 낮은 개인, 농업 등과 같이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주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조되며, 이러한 주체들은 보통 자본, 신용 또는 정보의 제한으로 금융시장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움.
-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가장 근본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함.
- 정책금융은 시장을 선도하거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시장의 불완전성이 커지고, 금융 관련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정책자금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에 대한 금융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

2.2. 재정융자제도

-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 주체에게 금융적인 성격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부 활동임.
- 정책자금은 부처, 회계, 기금 등으로 구분되거나 유사한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 융자사업이나 정책사업은 자금을 집행 목적에 따라 세분하는 것을 의미함.
 - 재정융자사업은 대출금의 회수와 운용자 성격을 가지며, 대출금 회수는 이후에 이루어지며, 회수된 자금은 다시 재정융자사업이나 다른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

○ 재정용자의 재원은 국세 또는 세외수입 등 경상수입의 일부, 기금의 여유자금, 외국으로부터 차관 조달이 있음.

- 회수된 만큼 다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지출되면 회수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출연금과 차이가 있으며, 한 연도 내에서는 전체 용자금에서 회수금만큼을 제외한 순용자금액이 실제 정부 용자 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량을 나타내는 척도로 중요함.

○ 재정용자는 용자 수혜 주체에 대해 용자금의 회수 의무, 즉 채권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도로, 항만 등 공공 투자와 같은 물적 자산(physical asset)을 증가시키는 직접투자 활동과는 구분되는 간접투자 활동에 해당함.

- 공공 투자로 취득한 도로, 항만 등은 사용료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매각 시 매각 수입이 발생하므로 직접투자라고 하며, 이자 수취·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용자와 수입 발생 방식이 다름.

○ 재정용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투자, 경기조절, 금리지원의 역할을 수행함.

-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력을 상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자금 획득이 어려운 경제주체에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개발도상국, 선진국에 상관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거나 복지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의 기업과 개인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함.

2.3. 재정용자제도 현황

○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 원 규모의 용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지출 대비 6.6%임.

- 재정용자사업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2023년 전체 재정용자사업 재원 가운데 기금이 41조 871억 원으로 전체의 98.2%, 특별회계는 7,509억 원으로 1.8%를 차지함.
- 전년 대비 전체 재정용자 규모는 4조 7,814억 원 감소하였고, 이 중 기금이 4조 6,117억 원, 특별회계가 1,696억 원 감소함.
-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추이를 보면 2019~2021년은 용자 규모가 증가했으나, 2022년 2.2% 감소하였고 2023년은 10.3%의 큰 폭으로 감소함.

〈표 6-1〉 최근 5년간 재정용자 현황

단위: 조 원,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금	36.7	43.8	46.6	45.7	41.1
기타특별회계	0.5	0.9	1.0	0.9	0.8
합계(재정용자)	37.3	44.6	47.7	46.6	41.8
전년 대비 증가율	7.3	19.7	6.8	-2.2	-10.3
총지출 대비 용자 비중	7.7	8.1	7.9	7.7	6.6

주: 2019~2021년은 결산, 2022년은 본예산,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박정수·우수연(2022), 《FIS ISSUE&FOCUS 재정용자사업》.

○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용자사업이 24조 3,796억 원으로 전체 용자사업의 58.3%를 차지함.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1조 원 규모 이상의 재정용자사업을 수행함.

- 특별회계의 경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62.8%(4,714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소관 부처별 재정용자사업의 규모는 재원별 규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재정용자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재정용자 규모가 24조 3,795억 원으로 가장 큼.

-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이 1조 원 이상의 용자 규모를 보임.

○ 분야별로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용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용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 원이고 비중은 64.3%를 차지함.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 원 규모이며, 전체 용자 규모 중 20.3%를 차지. 이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해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세에 있음.
-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2023년도에 3조 6,407억 원으로 비중은 8.7%임.
-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 교육, 국방,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통신, 환경 분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고, 농림수산,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통일·외교 분야는 비율 면에서 증가함.

○ 최근 5년간의 재정용자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

- 회계별로 2021년 재정용자 집행률은 90.8%로 전년 대비 4.2%p 감소했으며, 기금 집행률은 90.8%, 기타특별회계 집행률은 90.0%를 보임.
- 분야별로 2021년 용자사업 집행률이 높은 분야는 통신, 농림수산, 일반·지방행정 분야 순으로 나타남.

3. 농업부문 금융정책

3.1. 개요⁶⁸⁾

- 농식품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농업과 식품제조업을 구분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과 같이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므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
 - 식품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농업정책 금융에서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나, 영세한 업체 대상 정책금융은 존재함.
- 농업은 생산을 위주로 하는 일차산업이 중심이므로 제조업과 달리 금융시장에서 소외됨.
 - 농업 관련 사업자는 농업의 한계 때문에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정부의 정책금융이 제공되어야 함.
- 정부가 제공하는 농업정책금융은 융자, 보증, 투자 등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됨.
 - 융자 또는 대출은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기관 등 다양한 자금보유자가 개인이나 기업 등에 향후 이자 수입을 기대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임.
 - 보증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요구하는 담보나 신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소정의 보증료를 받고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신용을 보강하는 행위임.
 - 투자는 담보와 신용이 필요한 대출과 달리 기술력과 사업성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여 향후 투자원금과 배당 및 자본이익을 기대하는 행위임.

⁶⁸⁾ 권오상 외(2018)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함.

3.2. 특징⁶⁹⁾

- 농업정책금융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데 불리한 농가와 영세 농산업체에 직접대출하거나 금융기관에 전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융자 방식과 시장금리와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이 있음.
 - 재정융자는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이용하여 직접대출하는 방식, 금융기관 자금을 공급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대방식의 재정융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자기 자금을 시장이자로 대출하되 정부가 대출금리와 저리의 정책금리 간 차이만 보전하는 재정 보조 방식임.
- 직접대출 방식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성하고 대상자 선정, 대출금액 결정 등 대출업무까지 담당하므로 대출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정부도 사업운영에 따른 수입 기대가 가능함.
 - 다만, 대출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고, 직접 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예산부담이 있으며,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그림 6-1〉 직접융자 지원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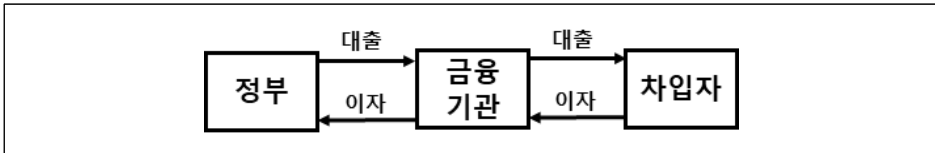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2023).

- 전대방식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직접대출과 같지만, 농가나 농산업체가 아닌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이 정부의 기준(대상자 자격, 대출금리 등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⁶⁹⁾ 권오상 외(2018)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함.

- 정부가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금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임.
- 별도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활동을 유도하며 직접 개입은 최소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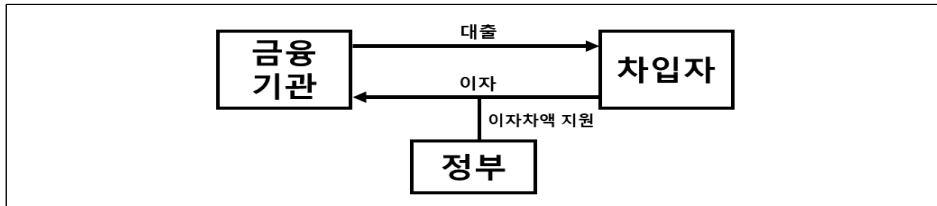
〈그림 6-2〉 전대 지원 방식



자료: 저자 작성(2023).

- 정부가 금융기관에 전대한 정책자금은 차입자의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정부에 상환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수입은 정부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불과함.
 - 금융기관은 상환위험을 떠안으려 하지 않으므로 대출에 소극적이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짐.
 - 정부는 직접대출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자금조성을 위한 거액의 예산을 조달해야 함.
- 이차보전은 재정용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사이의 이차 차액만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방식임.
 - 정부가 대규모 자금의 투입 없이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를 보전하여 정책 대상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므로,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농업부문 외에도 다양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이차보전을 활용함.
 - 기본적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이 용자되므로, 상환 여부가 금융기관의 이윤에 직접 영향을 줌.
 -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위험성, 자금의 조성비용과 유동성, 대출과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자를 결정함.

〈그림 6-3〉 이차보전 지원 방식



자료: 저자 작성(2023).

○ 직접대출이나 전대 등의 재정용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면 사업에 투입 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직접대출은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용자금 관리와 회수에 노력이 필요하므로 비용은 늘어남.
- 전대는 직접대출보다 적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여전히 용자금을 재정에서 제공해야 하며, 회수와 관리 결과에 따라 손실이 증가할 수 있음.
- 이차보전은 용자금이 시중자금으로 진행되고 용자금 관리와 회수가 금융 기관에 있어 이차보전 비용 외에는 투입되는 비용이 적음.

○ 이차보전 방식은 재정수지를 개선할 수 있음.

- 재정에서 용자금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줄어들어 재정수지가 향상될 수 있음.
- 농가나 농산업체가 대출받고자 할 때 은행이 대상자의 신용이나 경제력 등을 토대로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므로 은행 기준에 따라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예도 있음.
- 대상자에게 대출이 어려우면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용자금이 인식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감소하지만, 실제 재정적자 규모를 과소평가하게 되어 국가부채를 숨기는 결과를 초래함.

3.3. 농업부문 예산 현황

3.3.1. 일반 및 특별회계 현황

○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 에너지및자원사업, 국가균형발전, 양곡관리 등 4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됨.

- 2023년 일반회계는 세입 212억 원, 세출 5조 5,372억 원이며, 2022년 대비 세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출은 감소함.
- 특별회계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는 2023년 세입 13조 5,821억 원, 세출 12조 963억 원이며, 2022년 대비 세입과 세출 모두 증가함.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 세입 429억 원, 세출 152억 원으로 다른 회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023년 세입이 143억 원, 세출이 7,262억 원으로 2022년 대비 감소함.
-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2023년 세입과 세출이 2조 3,248억 원으로 2022년 대비 증가함.

〈표 6-2〉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표

단위: 백만 원

회계·기금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A)	2023년 예산(B)	증감(B-A)	
일반회계		세입	6,089	20,710	21,170	460
		세출	3,973,569	5,794,324	5,537,241	△257,083
특별 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입	16,989,705	12,388,358	13,582,092	1,193,734
		세출	12,628,772	10,485,487	12,096,305	1,610,818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세입	24,590	42,949	42,929	-20
		세출	25,132	22,051	15,150	△6,90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	25,110	15,005	14,332	△673
		세출	750,716	752,558	726,243	△26,315
	양곡관리 특별회계	세입	2,785,858	2,242,820	2,324,848	82,028
		세출	2,059,902	2,242,820	2,324,848	82,02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3.3.2. 기금별 현황

○ 농업부문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짐.

- 농산물안정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개선을 촉진하고자 설치하였으며, 2023년에는 전년보다 2,568억 원이 감소한 2조 3,27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됨.
- 농업구조개선차원에서 농지규모화를 위해 조성된 농지관리기금은 2023년에 전년 대비 4,436억 원 증가한 3조 7,2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됨.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 1,62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됨.
-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지불기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 2조 8,57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됨.
- 2023년도 자유무역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에 각각 5,107억 원, 905억 원, 1조 1,4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됨.

〈표 6-3〉 기금 총괄표

단위: 백만 원

회계·기금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A)	2023년 예산(B)	증감(B-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22,826	2,584,159	2,327,368	△256,791
농지관리기금	2,796,174	3,278,386	3,721,984	443,598
축산발전기금	1,058,777	1,044,546	1,062,803	18,257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지불기금	2,418,361	2,422,186	2,857,596	435,410
자유무역이행지원기금	672,074	472,139	510,734	38,595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77,645	145,032	90,451	△54,581
양곡증권정리기금	225,587	727,051	1,141,884	414,83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3.3.3. 재정용자사업 내역

○ 특별회계와 기금 예산 중 재정용자는 2023년 기준 총 3조 2,331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85억 원, 기금은 3조 2,247억 원이며, 기금에서는 재정용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재정용자 예산은 85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작은 규모임.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 재정용자 예산은 1조 2,269억 원으로 전체 기금 예산의 약 52.7%를 차지함.
- 농지관리기금 중 재정용자 예산은 1조 3,847억 원으로 전체 기금 예산의 약 37.2%를 차지함.
- 축산발전기금 중 재정용자 예산은 4,843억 원으로 전체 기금 예산의 약 45.6%를 차지함.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중 재정용자 예산은 1,288억 원으로 전체 기금 예산의 약 25.2%를 차지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지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에는 2023년도에 재정용자사업을 위한 예산이 없음.

○ 2023년 재정용자사업 예산은 전년과 비교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제외하고 모든 기금에서 감소하였음.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는 294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26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는 2,758억 원, 축산발전기금에서는 186억 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서는 336억 원이 감소하여 총 3,600억 원이 감소함.

〈표 6-4〉 특별회계 및 기금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회계·기금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B-A)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재해대책비	1,252	28,500	-	△28,500
	동물약품의약품산업종합지원	4,350	9,400	8,460	-940
	소계	5,602	37,900	8,460	-29,440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5,416	2,646	-	△2,646
	소계	5,416	2,646	-	△2,646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23,721	26,000	28,000	2,000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365,697	402,882	458,446	55,564
	식품외식종합자금	183,153	161,800	144,633	△17,167
	산지유통종합자금	656,297	712,501	409,320	△303,181
	도매유통활성화지원	72,920	105,000	109,000	4,00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7,138	20,405	25,630	5,225
	인삼특용작물계열화	20,281	20,281	-	△20,281
	공공급식운영활성화지원	14,722	15,000	15,000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43,170	38,850	36,907	△1,943
	소계	1,387,099	1,502,719	1,226,936	△275,783
농지 관리 기금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297,895	307,700	290,700	△17,000
	맞춤형농지지원	771,785	812,314	857,726	45,412
	농지연금	184,815	210,568	228,237	17,669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6,870	6,870	8,000	1,130
	소계	1,261,365	1,337,452	1,384,663	47,211
축산 발전 기금	축산물수급관리	16,271	30,000	23,190	△6,810
	사료산업종합지원	39,956	64,749	64,749	-
	말산업육성지원	266	240	120	△120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336,500	355,000	355,000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450	405	-	△40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2,662	2,548	2,079	△469
	가축분뇨처리지원	60,917	49,906	39,130	△10,776
	소계	457,022	502,848	484,268	△18,580
자유무역 협정이행 지원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	40,470	43,493	30,070	△13,423
	원예시설현대화	7,920	3,373	-	△3,373
	스마트팜(CT)용·복합확산	3,240	2,052	-	△2,052
	축사시설현대화	113,434	113,567	98,727	△14,707
	소계	190,117	162,352	128,797	△33,555
총계		3,306,621	3,545,917	3,233,124	△312,79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3.3.4.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현황

○ 농업자금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금융기관에 정책금리와 실세 대출금리의 이차 차액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최근 5년간 예산액 기준(추경 포함)으로 총 1조 7,861억 원이 이차보전 사업에 투입되었음.
- 2019년 4,20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00억 원 안팎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신규 이차보전 사업의 도입으로 예산이 4,519억 원 수준으로 증가함.

○ 2023년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의 예산은 총 4,519억 원이며, 22개 4,433억 원 규모의 기존 이차보전 사업, 8개 30억 원 규모의 신규 이차보전 전환 사업, 2개 157억 원 규모의 신규 이차보전 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까지 농축산경영자금, 재해농가이자감면, 재해복구융자금 사업 등으로 약 4,433억 원이 이차보전 사업으로 진행됨.
- 2023년에 재해대책비, 인삼계열화 계약, 산지유통 활성화지원 사업 등에서 약 30억 원을 재정융자사업에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되었음.
- 해외곡물망확보 용자 지원, 사료구매자금 등 약 157억 원이 이차보전사업으로 신규 지원됨.

〈표 6-5〉 2023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 원, %

내역사업명		2023년 예산	2023년 평잔	이차율
기존자금	농축산경영자금	20,111	1,023,317	1.53-2.00
	재해농가이자감면	616	24,616	2.50
	재해복구융자금	16	628	2.53
	RPC운영자금	26,961	1,225,483	2.20
	농업종합자금	167,284	7,882,761	1.00-3.03
	농촌주택개량	62,017	3,223,675	0.91-2.03
	협동조합합병	703	17,432	4.03
	후계농업인육성	51,363	1,590,611	2.00-3.03
	귀농귀촌정착지원	39,512	28,650	2.00-2.03
	긴급경영안정자금	667	297,975	2.23
	도축가공업체지원	4,806	449,607	1.00-4.03
	축사시설현대화자금	11,824	164,645	2.03-4.03
	축산경영종합자금	3,125	62,462	1.00-4.03
	인삼계열화수매자금	914	52,898	1.00-1.53
	6차산업 창업지원	1,071	134,804	2.00-2.03
	정책자금상환연기	3,411	134,804	2.53
	연대보증해소지급	2	169	1.06
	농업경영회생자금	1,830	60,382	3.03
	정책자금대체자금	1,981	78,298	2.53
	부채상환인센티브	98	350,338	1.00-5.00
	특별사료구매자금	34,694	1,145,000	3.03
	축산물수급관리	303	10,000	3.03
이차보전 전환사업	재해대책비	64	2,513	2.53
	인삼계열화 계약	189	4,686	4.03
	산지유통 활성화지원	2,661	86,822	1.03-4.03
	특용작물계열화자금	14	491	1.00-4.03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4	237	1.00-2.03
	온실현대화지원자금	12	592	1.00-2.0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자금	39	1,940	2.03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자금	1	30	2.03
신규자금	해외곡물망확보 융자 지원	1,265	50,000	2.53
	사료구매자금	14,384	645,000	2.23
합계		451,942	18,750,866	

주: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의 2023년 기준금리는 4.03%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4. 이차보전 효율성 분석

4.1.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간 순편익 비교

4.1.1. 순편익 비교 개요

- 정책 대상자의 금융 혜택이 같으면 이차보전이 재정용자와 비교하여 비용이 적음.
 - 재정용자 중 직접대출에 필요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조직이나 관리 주체가 필요하지 않고, 전대방식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취급수수료도 지출할 필요가 없음.
 - 만일 민간 금융시장에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이차보전에 따라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면 이차보전 전환이 가능함.
- 이차보전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을 평가하고자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방식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적 유불리를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사업의 순편익을 비교·분석하였음.
 - 이차보전과 재정용자의 순편익 비교는 임소영(2014)과 황성현 외(2002)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이용하였음.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차보전 확대 효과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용자와 이차보전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직접용자의 이차보전 전환 가능성, 원칙,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음.
- 순편익 비교 방법은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방식을 이용하여 도출하고, 이를 같은 사업에서 대출한다는 가정하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함.

- 순편익 분석에 이용한 변수는 D (대출 원금), i_f (재정용자 용자금리), i_s (재정용자 대출금리), b (재정용자 취급 수수료율), n (대출 기간), r_B (은행의 실제 대출 금리), r_D (정부 사업 평가 할인율), α (원금상환율), $\beta (= 1 - \alpha$, 채무 불이행률), m (정부의 직접대출 관리 비용비율)임.
- 재정용자 용자금리, 대출금리, 원금상환율은 모두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며, 재정용자 대출금리는 용자금리에 수수료율을 더한 값으로 변환할 수 있음.

4.1.2. 전대와 이차보전의 비교

○ 정부는 용자사업에서 시행 첫해에 대출금(D)을 용자하고 매년 i_f 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음.

- 대출기간 마지막 해에 대출원금을 돌려받으며, 상환액은 $\alpha \cdot D$ 가 됨.
- 동일한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시행하면 매년 $r_B - i_s$
- 만큼의 이차보전 지출이 발생함.

○ 용자사업 실행 시 정부의 재정용자 비용은 대출금 D 와, 다음과 같은 향후 받을 이자와 대출상환액의 현재가치 차이로 정의함.

$$PV = \frac{i_f D}{1 + r_D} + \frac{i_f D}{(1 + r_D)^2} + \dots + \frac{i_f D}{(1 + r_D)^n} + \frac{\alpha D}{(1 + r_D)^n} = \frac{i_f D}{r_D} + \frac{\alpha(r_D - i_f)D}{r_D(1 + r_d)^n}$$

- 따라서 재정용자 방식의 비용은 다음과 같음.

$$C_1 = D - PV = \frac{(r_D - i_f)}{r_D} \left[1 - \frac{\alpha}{(1 + r_D)^n} \right] D$$

○ 이차보조는 정부가 대출기간 동안 매년 이차만큼 지원해주는 구조임.

- 이자율 차이는 $r_B - i_s$ 이며, 해당 금리 차이만큼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이차보전 비용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음.

$$C_2 = \frac{(r_B - i_s)D}{1 + r_D} + \frac{(r_B - i_s)D}{(1 + r_D)^2} + \dots + \frac{(r_B - i_s)D}{(1 + r_D)^n} = \frac{r_B - i_s}{r_D} \left[1 - \frac{1}{(1 + r_D)^n} \right] D$$

○ 이차보전 방식의 순편익을 평가하고자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Delta C = C_1 - C_2 = \frac{r_D - i_f}{r_D} \left[1 - \frac{1}{(1 + r_D)^n} \right] D - \frac{i_s}{r_D} \left[1 - \frac{1}{(1 + r_D)^n} \right] D$$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음.

$$\Delta C = \frac{r_D + b - r_B}{r_D} \left[1 - \frac{1}{(1 + r_D)^n} \right] + \frac{(r_D - i_f)\beta}{r_D(1 + r_D)^n} D$$

○ 실세 대출금리가 할인율과 취급수수료율의 합보다 높고, 원금회수율이 100% (채무불이행률 0%)라면 이차보전 비용이 재정용자 비용보다 높아 재정용자가 더 유리함.

- 이 경우 우변의 첫째 항은 항상 음수이고 둘째 항은 사라지므로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의 차이가 음수임.

○ 실세 대출금리가 할인율과 취급수수료율의 합보다 높지만, 원금회수율이 100%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면, 재정용자 비용이 이차보전보다 항상 큰 것은 아님.

- 비용의 차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우변의 둘째 항에 포함된 대출기간 (n)에 따라 결정됨.

- 대출기간이 짧으면 긴 경우보다 우변의 둘째 항은 커져 재정용자 비용이 증가하며, 이차보전이 유리할 가능성이 큼.
 - 반대의 경우는 둘째 항이 작아져 재정용자 비용 증가가 상쇄되어 재정용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큼.
- 할인율과 취급수수료율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다면, 원금회수율과 관계없이 재정용자 비용이 이차보전 비용을 초과하여, 이차보전이 더 유리함.
- 이 경우 우변의 첫째 항이 양수, 둘째 항도 0 또는 양수이므로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의 차이는 항상 양수이므로, 이차보전 비용이 재정용자 비용보다 낮음.

4.1.3. 직접대출과 이차보전의 비교

- 직접대출은 전대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재정용자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대출의 실행과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급해야 함.
- 전대는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의 실행·관리 업무를 전담하지만, 직접대출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방법임.
- 직접대출과 전대의 차이는 직접대출이 재정용자를 실행·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전대는 해당 비용이 절약됨.
- 직접대출 방식의 비용은 다음과 같음.

$$C_1 = D - PV = \frac{(r_D + m - i_f)}{r_D} \left[1 - \frac{\alpha}{(1 + r_D)^n} \right] D$$

- m 은 직접대출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관리비용비율로, 직접대출 실행 시 매년 관리비용으로 mD 의 비용을 지출함.

- 직접대출 방식의 비용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직접대출과 이차보전의 차이를 정의할 수 있음.

$$\Delta C = \frac{r_D + b + m - r_B}{r_D} \left[1 - \frac{1}{(1 + r_D)^n} \right] D + \frac{(r_D - i_f)\beta}{r_D(1 + r_D)^n} D$$

○ 직접대출과 이차보전의 비용분석은 관리비용비율을 제외하고 전대와 이차보전의 비용분석과 동일함.

- 관리비용비율(m)이 0보다 크면, 직접대출이 전대보다 비용이 상승하여 이차보전에 따른 편익의 증가가 더 큼.

4.2. 이차보전 효율성 분석

○ 재정용자(전대와 직접대출)와 이차보전의 사업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한 결과 실세 대출금리, 재정용자의 취급수수료, 금융기관의 실세 대출금리, 원금 회수율, 사업(상환) 기간 등에 따라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의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남.

- 원금회수율이 100%라는 가정에서는 실세 대출금리가 할인율과 취급수수료의 합보다 크면 재정용자가 유리하고, 할인율과 취급수수료의 합이 실세 대출금리보다 크면 이차보전이 유리함.
- 원금회수율이 100% 미만이라는 현실적인 가정에서 할인율과 취급수수료의 합이 실세 대출금리보다 크면 이차보전이 유리하지만, 실세 대출금리가 할인율과 취급수수료의 합보다 크면 장기에서는 재정용자, 단기에서는 이차보전이 유리함.
- 직접대출은 전대나 이차보전에는 없는 정부 조직 또는 공공기관 운영·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전대보다 항상 불리함.

〈표 6-6〉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의 효율성 분석

	원금회수율 100% ($\alpha = 1$)	원금회수율 100% 미만($\alpha < 1$)		비고
		장기 사업	단기사업	
실세 대출금리가 할인율과 취급수수료의 합보다 클 때 ($r_D + b - r_B < 0$)	재정용자 유리(이차보전 불리)		이차보전 유리 (재정용자 불리)	전대는 직접대출보다 항상 유리 ($m > 0$)
할인율과 취급수수료의 합이 실세 대출금리보다 클 때 ($r_D + b - r_B > 0$)	이차보전 유리(재정용자 불리)			

자료: 임소영(2014)을 수정 인용하여 저자 작성.

- 상기 결과를 토대로 할인율과 시장금리, 대출기간, 전대와 직접대출 등의 조건에 따라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의 효율성을 사회적 후생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재정용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함.

4.2.1. 할인율과 시장금리

- 임소영(2014)과 황성현 외(2002)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정부사업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실세금리가 같다면 이차보전에 은행 취급수수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항상 이차보전이 비용이 적음.

- 재정자금 집행의 국민경제적 기회비용을 평가하려면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할인율과 취급수수료의 합은 언제나 시장 실세금리를 초과하므로, 이차보전이 유리함.
- 자본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시장이자율은 소비자의 시간적 선호를 반영함과 동시에 자본의 한계생산성과도 일치해야 함.

- 할인율을 시장이자율이나 실세금리가 아닌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을 적용하더라도 이차보전이 재정용자보다 순편익이 더 큼.

-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정책의 수행을 통해 현재부터 미래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율’로 정의함.

- 현재 정부 사업 경제성 평가에서 활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연 4.5%이며, 여기에 농업금융의 일반적 취급수수료인 1.25~1.5%를 합하면 5.75~6.0%로 2023년 5월 실세금리인 5.2%⁷⁰⁾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차보전이 재정용자보다 유리함.

〈표 6-7〉 할인율에 따른 재정용자(전대)와 이차보전의 비용 차이

단위: 백만 원

할인율	회수율 100%		회수율 90%		회수율 80%	
	1년	5년	1년	5년	1년	5년
4.5%	5,263	24,145	69,672	78,156	134,082	132,167
5.0%	10,000	45,460	83,260	105,731	156,520	166,002
5.2%	11,882	53,821	88,659	116,506	165,436	179,192
5.5%	14,692	66,189	96,719	132,403	178,746	198,617

주: 재정용자 용자금리 1.0%,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1.25%, 실세 대출금리 5.2%, 대출기간 1년 또는 5년으로 설정하여 대출금 1조 원 실행 시 할인율과 회수율에 따른 비용 차이를 평가함.

자료: 저자 작성.

○ 만일 할인율을 시장이자율이나 사회적 할인율이 아닌 국채수익률 등과 같이 더 낮은 이자율로 설정한다면 재정용자 순편익이 이차보전보다 클 수 있음.

- 그러나 만일 재정용자가 단기라면 순편익 비교 결과에 따라 이차보전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음.

○ 만일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에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할인율은 실세금리보다 높고, 사회적으로 최적인 할인율이 정부 사업 평가에 적용된다는 조건에서는 이차보전이 항상 재정용자보다 적은 비용이 투입됨.

- 농업금융이 사회 후생을 증대하는 농업 분야에서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이자율은 항상 개별 이자율보다 높다는 것에 동의함.
- 따라서 개별 할인율은 실세 대출금리보다 낮더라도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은 개별 할인율보다 높아 이차보전이 여전히 유리할 가능성이 있음.

70) 2023년 5월 은행권 금융기관 평균대출금리임.

○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에서는 이차보전보다는 직접대출 방식의 재정용자가 필요함.

- 김지영·박상원(2008)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직접 정책 대상자를 선택할 때 투자 결과가 좋은 유형의 차입자를 선정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차보전의 사회적 후생이 직접대출이나 전대보다 큼.
- 농업금융의 목적이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투자 수익률이 높은 차입자에게 보통 이상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정책은 사회적 후생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4.2.2. 대출 기간

○ 일부 재정효과 비교 실증연구에서는 장기로는 이차보전이 재정용자보다 누적 손실액이 많아 재정용자의 순편익이 이차보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유옥동, 2022; 전영환·윤남수, 2003), 순편익 분석 결과 항상 재정용자가 유리한 것은 아님.

- 용자는 돈이 남아 있고, 보조는 돈이 사라진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재정용자를 선호한다. 하지만 자금운용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으로, 적절한 할인율로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할인율과 취급수수료가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대출 기간과 관계없이 이차보전의 편익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회수율이 100% 미만이면 대출 기간에 따라 재정용자가 더 편익이 클 가능성이 있음.

- 대출 기간이 장기면 단기와 비교하여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의 비용 차이가 상쇄되어 재정용자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큼.

○ 농업부문 용자사업이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면, 운영자금은 1년 안팎의 단기, 시설자금은 5년 이상 장기인 경우가 많음.

- 회수율이 100% 미만이라고 가정하면 단기자금인 운영자금은 이차보전, 장기자금인 시설자금은 재정용자로 실행하는 것이 순편익이 높은 방법으로 판단됨.

○ 수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급수수료를 1.25%, 실세 대출금리를 5.2%, 회수율을 90%로 설정하고, 할인율을 실세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를 뺀 것 (3.95%)보다 더 낮게 설정한 경우, 대출기간이 증가할수록 이차보전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에는 재정용자의 비용이 이차보전보다 높아 이차보전이 순편익 측면에서 유리함.

〈표 6-8〉 대출기간에 따른 재정용자(전대)와 이차보전의 비용 차이

단위: 백만 원

할인율	대출기간						
	1년	3년	5년	7년	9년	12년	15년
2.50%	13,996	-14,626	-41,869	-67,799	-92,480	-127,289	-159,613
2.75%	21,074	-3,084	-25,966	-47,640	-68,169	-96,948	-123,477
3.00%	28,118	8,326	-10,330	-27,915	-44,490	-67,587	-88,723
3.25%	35,128	19,605	5,044	-8,614	-21,426	-39,172	-55,293
3.50%	42,103	30,755	20,162	10,273	1,041	-11,668	-23,132

주: 재정용자 용자금리 1.0%,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1.25%, 실세 대출금리 5.2%, 회수율 90%로 설정하여 대출금 1조 원 실행 시 할인율과 대출기간에 따른 비용 차이를 평가함.

자료: 저자 작성.

4.2.3. 관리비용 및 규모·범위의 경제

- 재정용자를 직접대출로 실행하면 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며, 조직의 운영·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있음.
 - 직접대출은 대출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정부 조직이나 공공기관이 존재하므로, 해당 조직을 운영하는 데 관리 비용이 투입되며, 민간조직과 비교하여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차보전과 전대는 별도의 조직 없이 금융기관이 이를 대행하므로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⁷¹⁾의 2023년 추정대차대조표⁷²⁾를 분석한 결과 직접대출을 실행·관리하는 데 투입되는 지출은 연간 대출금의 약 1.1%로 추정됨.
 - 2023년 추정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단기대출채권 예산은 7,317억 원, 장기대여금 및 대출채권은 2,827억 원임.
 - 2023년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르면 금융원가 중 이자비용은 52억 원, 금융사업인건비와 사업경비는 37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 사업비 15억 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원 사업비 7억 원으로, 총 112억 원 규모의 지출이 발생함.
 - 전체 대출금 예산액 대비 직접대출 관련 비용 비율은 1.1%로, 직접대출과 이차보전과 비교하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함.
- 전대와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증가함.

⁷¹⁾ 직접대출을 취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재무제표에서 금융원가를 자세히 제공하지 않아 관리비용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관리비용비율만을 산정함. 황성현 외(2002)에 따르면 관리비용비율을 대략 1.0%에서 1.5% 수준으로 가정하여 논의를 진행함.

⁷²⁾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s://www.at.or.kr/contents/apko341810/view.action>), 검색일: 2023. 5. 13.

-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므로 거래비용을 낮춰 효율성을 높여줌.
- 직접대출은 정부나 공공기관 조직이 기금의 용자사업만을 취급하므로,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없음.

4.2.4. 이차보전 전환 전략

- 농업부문의 재정용자 중에서 직접대출을 중심으로 이차보전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직접대출이 순편익 측면에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이차보전 전환 시 더 많은 순편익을 획득할 수 있음.
- 농업부문 재정용자사업 중에서 단기자금을 중심으로 이차보전 전환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할인율이 실세 대출금리와 유사하면 대출 기간과 관계없이 이차보전의 순편익이 많지만, 할인율이 낮고 대출금 회수율이 100% 미만이라면 장기용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장기와 시설자금보다는 단기와 운영자금을 중심으로 이차보전 전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제조 및 유통업체, 수출업체,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용자를 우선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재정용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에 의해 농업인과 같은 금융 소외 계층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용자를 이용한 신용 제공이 사회적으로 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됨.

5. 이차보전 전환 방안

5.1. 기금별 재정용자 현황 분석

○ 기금별 재정용자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재정용자사업 중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편익 증대 가능성이 큰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 농업부문 기금의 재정용자사업을 조사하여 대상자 특성, 대출금리와 기간 등을 분석함.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사업의 순편익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차보전 전환 조건을 기준으로 이차보전 전환 시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5.1.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내 용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농식품글로벌 육성지원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산지유통종합자금, 도매유통활성화지원,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공공급식운영활성화지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은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생산자조직과 유통가공업체에 직접대출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2.0%에서 30%, 대출 기간은 5년임.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업체에 직접대출하는 사업으로 운영자금은 2.5%에서 3.0%의 금리로 1년간 대출하며, 시설자금은 2.0%에서 3.0%의 금리로 10년간 대출함.

- 식품외식종합자금은 식품가공원료매입,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조업체와 외식전처리 업체에 직접대출하며, 운영자금은 금리 2.5%에서 3.0%로 1년, 시설자금은 금리 2.0%에서 3.0%로 10년간 대출함.
- 산지유통종합자금은 수급안정지원, 발식량작물수매지원, 두류·맥류계약 재배 사업으로 구성되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가 지역 농협, 농업법인, 유통법인에 직접대출한다. 수급안정지원과 두류·맥류계약재배는 무이자 1년 또는 5년, 발식량작물수매지원은 2.5%에서 3.0%의 금리로 5년 대출함.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은 도매시장출하촉진, 공판장출하촉진, 화훼유통개선 지원,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농식품거래소정산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가 생산자, 소비자, 도매시장 종사자, 유통업자 등에 1.0%에서 3.0%의 금리로 1년간 직접대출함.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는 가락시장 대상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접대출하며, 금리는 3.0%, 대출기간은 10년임.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지원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급식업체,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업체에 2.5%에서 3.0%의 금리로 1년간 직접대출하는 사업임.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은 사이버거래소결제자금과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업인에게 무이자에서 3.0%의 금리로 1년 이내 직접대출하는 사업임.

〈표 6-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사업 내역

사업명	예산(일자)	시행주체	융자형태	수혜자	금리(%)	상환기간(년)	
						거치	상환
농산물글로벌 육성지원자금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농협경제지주	직접대출	생산자조직, 유통기업업체	2.0~3.0	2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운영 시설	453,646	직접대출	수출업체	2.5~3.0	3	7
		4,800					
식품외식 종합자금	식품가공원로매입	96,833	직접대출	제조업체, 외식전처리업체	2.5~3.0	1(2)	1
		농식품					
		운영					
		시설					
	외식업체육성 시설	9,000					
		운영					
		시설					
		15,000					
산지유통 종합자금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지원	23,800	직접대출	농협, 농업법인, 유통법인	2.5~3.0	3	7
		운영					
	수급안정지원	359,924	직접대출	농협, 농업법인, 유통법인	0.0	5	1
		발식광작물수매지원					
	두류·맥류계약채배	8,484			2.5~3.0	5(두류), 1(맥류)	
		40,912					
도매유통 활성화지원	도매시장출하촉진	42,000	직접대출	생산자, 소비자, 도매 시장 중사자, 유통인	1.0~3.0	1	
		공판장출하촉진					
	화훼유통개신지원	15,000	직접대출	생산자, 소비자, 도매 시장 중사자, 유통인	1.0~3.0	1	
		13,000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35,000	직접대출	생산자, 소비자, 도매 시장 중사자, 유통인	1.0~3.0	1	
		4,00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농식품거래소정산지원	25,630	직접대출	도매시장	3.0	7	13
		가락시장(다른 시장은 보조)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공공급식운영활성화지원	15,000	직접대출	급식, 로컬푸드, 식재료기업체	2.5~3.0	1	
		사이버거래소결제자금					
		24,937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11,970	직접대출	농업인	0.0~3.0	50일	1
		24,937					

주: 금리는 고정금리이며, 일부 사업에서는 수혜 대상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5.1.2. 농지관리기금

○ 농지관리기금의 용자사업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맞춤형농지지원, 농지연금,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시행 주체는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이며 직접대출로 사업을 진행함.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은 농지소유자에게 직접대출하는 사업으로 금리 2.0%에 대출 기간은 7년에서 10년임.
- 맞춤형농지지원은 공공임대, 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부활, 선임대 후매도, 스타트업단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농업인 등에게 직접대출하는 사업으로 금리 1%에 대출 기간은 11년에서 30년임.
-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60세 이상 농업인에게 직접대출하는 사업으로 금리 2.0%, 대출 기간은 5년 이상임.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자에게 직접대출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1.5%에서 2.0% 수준이며 대출 기간은 5년임.
-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대출을 통해 재정용자사업을 진행하며 금리는 1.5%에서 2.0%로 상대적으로 낮음.
- 상환기간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맞춤형농지지원, 농지연금 등에서는 최소 5년에서 최대 종신행까지 가능함.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도 낮은 금리에 상환기간이 5년으로 시설자금이 아닌 용자로 장기임.

〈표 6-10〉 농지관리기금 융자사업 내역

사업명		예산 (용자)	시행 주체	융자 형태	수혜자	금리(%)	상환기간(년)	
							거치	상환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290,700	한국 농어촌공사	직접 대출	농지소유자	2.0	7~10	
맞춤형 농지지원	공공임대, 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분할, 선임대 후매도, 스타트업단지조성	763,470	한국 농어촌공사	직접 대출	농업인 등	1.0	11~30	
농지연금		228,237	한국 농어촌공사	직접 대출	농업인 (60세 이상)	2.0	5~종신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8,000	한국 농어촌공사	직접 대출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자	1.5~2.0	5	

주: 금리는 고정금리이며, 일부 사업에서는 수혜 대상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5.1.3. 축산발전기금

○ 축산발전기금 내 재정융자사업은 축산물 수급관리, 사료산업종합지원, 말산업육성,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등이 있음.

- 축산물수급관리는 계란공판장 출하촉진과 오리민간자율비축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계량공판장과 오리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전대하는 사업으로 금리 1%, 대출기간 1년임.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은 사료원료구매와 사료제조시설 사업으로 구성되며 농협경제지주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에 전대하여 사료제조업자에게 사료구매 목적으로는 금리 2.5%에서 3.0% 수준으로 2년간, 사료제조시설로는 2.0%에서 3.0% 수준으로 10년간 대출하는 사업임.
- 말산업육성은 농어촌형승마시설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마사회가 금융기관에 전대하여 금리 2.0%에서 3.0%로 농업인 등에게 10년간 대출하는 사업임.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에 전대하여 축산농가에 1.8%의 금리로 2년간 대출하는 사업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은 조사료생산·가공·운영과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대하여 축산농가에 1.8%의 금리로 2년간 대출하는 사업임.
- 가축분뇨처리지원은 축산악취개선, 공동자원화, 친환경퇴비생산시설, 자연순환농업활성화에 지방자치단체가 전대하여 축산농가에 대출하는 사업으로 2.0%에서 3.0%의 금리로 3년에서 10년간 대출함.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상 취급수수료는 1.0%, 대손보전 수수료는 0.25%로, 대출취급기관 취급수수료는 1.25%임.

〈표 6-11〉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 내역

사업명		예산 (용자)	시행 주체	융자 형태	수혜자	금리(%)	상환기간(년)	
							거치	상환
축산물 수급관리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13,190	지자체	전대	계란공판장	1.0	1	
	오리민간자율 비촉지원	10,000			오리 사업자	0~1.0	2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업	사료원료구매	62,749	농협경제 지주 등	전대	사료제조업자	2.5~3.0	2	
	사료제조시설	2,000	지자체	전대	사료 단체	2.0~3.0	3	7
말산업육성	농어촌형승마시설	120	지자체, 마사회	전대	지자체, 마사회, 농업인 등	2.0~3.0	3	7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355,000	지자체	전대	축산농가	1.8	2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조사료생산·가공 및 운영	1,450	지자체	전대	농업인 등	2.0	2	3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629			농업인 등	2.0	3	7
가축분뇨 처리지원	축산악취개선	27,000	지자체	전대	축산농가 등	2.0~3.0	3	7
	공동자원화	7,080				2.0~3.0	3	7
	친환경퇴비생산시설	150				2.0~3.0	3	3
	자연순환농업활성화	4,900				2	3	

주 1) 금리는 고정금리이며, 일부 사업에서는 수혜대상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됨.

2) 대출취급기관 취급수수료는 1.25%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5.1.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금의 융자사업은 크게 두 종류로 과수생산유통지원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있음.

- 과수생산유통지원은 과원규모화사업의 융자로 농어촌공사에서 과수농가 등에 직접대출하며, 상환기간은 5년에서 30년, 금리는 무이자에서 2% 수준임.
- 축사시설현대화는 축사시설개선, ICT용·복합시설지원, 스마트축사단지 조성사업, 젓소우량우목장조성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농협경제지주, 농정원 등이 금융기관에 전대하여 지원하며, 금리 1.0%에서 2.0% 수준의 10년 이상 시설자금임.

〈표 6-1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융자사업 내역

사업명		예산 (백만 원)	시행 주체	융자 형태	수혜자	금리(%)	상환기간(년)	
							거치	상환
과수생산 유통지원	과원규모화(매매)	30,070	한국 농어촌공사	직접 대출	과수농가, 생산자단체	2.0	11~30	
	과원규모화(임대차)					0.0	5~10	
축사 시설 현대화	축사시설개선	48,400	지자체, 농 협경제지주, 농정원	전대	축산농가	1.0	5	10
	ICT용·복합 시설지원	43,125				2.0	3	7
	스마트축사 단지조성사업	6,402				2.0	3	7
	젓소 우량우목장 조성사업	800				1.0	5	10

주: 금리는 고정금리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5.2. 이차전환 사업 제안

- 직접대출사업은 농산물안정기금과 농지관리기금의 모든 융자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임.
 - 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자에게 직접대출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두 기관을 운영하여 사업을 진행 중임.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사업 중에서 상환기간이 짧은 단기 융자는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의 운영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중 식품가공원료매입, 농식품시설현대화 중 운영자금, 외식업체육성 운영자금,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지원의 운영자금, 산지유통종합자금 중 발식량작물수매지원과 두류·맥류계약재배 중 맥류,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공공급식운영활성화지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임.
 - 농지관리기금 융자사업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과수생산유통지원의 과원규모화사업은 모두 장기로 조건에 맞지 않아 제외함.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사업 중에서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은 대상자가 농업인이므로 제외하며, 이 외 사업은 제조 및 유통업체, 수출업체, 농업법인 등으로 이차보전 전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도매유통활성화지원 사업은 제외함.

- 재정융자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기금융자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 중 식품가공원료매입, 농식품시설현대화의 운영자금,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의 운영자금,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의 운영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의 운영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지원 사업임.

- 해당 사업의 2023년 예산 총액은 6,133억 원이며,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순편익은 회수율 90%, 취급수수료율 1.5%, 융자금리 1.5%,⁷³⁾ 공공기관 관리비용비율 4.9%⁷⁴⁾를 가정하면, 사회적 할인을 4.5% 기준으로 연간 516억 원, 실세 대출금리 5.2% 기준으로 연간 594억 원임.
- 해당 사업의 6,133억 원의 예산을 조성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편익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전대와 장기 시설자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함.

〈표 6-1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내 단기 직접대출의 연간 이차보전 전환 편익

단위: 백만 원

할인율	식품가공 원료매입	농식품 시설현대화	농식품글로벌 육성지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원	식품외식 종합	공공급식운영 활성화지원	합계
4.5%	20,771	4,434	412	687	1,476	687	28,465
5.2%	26,553	5,668	527	878	1,912	878	36,417

주 1) 회수율 90%, 취급수수료율 1.5%, 융자금리 1.5%, 관리비용비율 1.1%를 기준으로 계산함.

2)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사업의 예산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구분되지 않아 전체 예산액을 운영자금 가능액으로 하여 계산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s://www.at.or.kr/contents/apko341810/view.action>), 검색일: 2023. 5. 13.

⁷³⁾ 해당 사업의 대출금리를 3%로 하고, 취급수수료율이 1.5%이므로, 융자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율을 뺀 1.5%로 설정함.

⁷⁴⁾ 2023년 추정재무지표 기준으로 관리비용비율을 1.1%로 가정함.

7

농업정책금융 효율성 제고 방안 - 보증제도

1. 민간금융 활용 확대를 위한 보증제도의 역할

1.1. 정책보증의 일반적 역할

○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중소금융)에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정부는 보증 등의 정책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시행함.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담보력 또는 신용도가 부족한 경우에 차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잘 알고 있지만,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대출 전에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출 이후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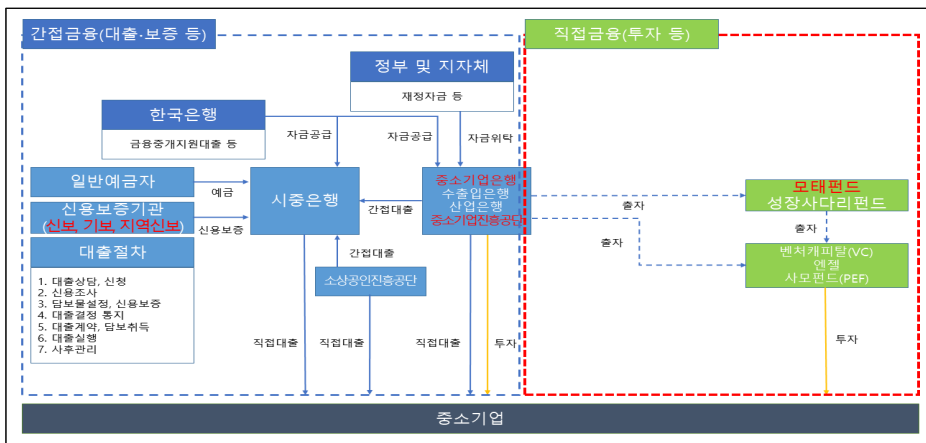
○ 정책금융시장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공급자 중심의 시장임.

-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시장에서 정부 등이 먼저 시장을 조성함.
- 정책금융은 저렴한 금융비용과 담보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가용자금을 증대시키는 등 직접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중소기업지원 역할을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중소금융) 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중소기업의 가용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대출의무제도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총액한도대출제도)이 존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취약한 담보력 및 신용도를 보완하는 제도가 있음.
- 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및 육성지원자금이 존재함.

〈그림 7-1〉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원체계



주: 빨간색 글씨로 표현된 기관이 중소기업 금융 분야의 공공기관임.

자료: 김상봉·이시은(2023), “정책금융 현황과 농업정책금융의 방향”.

1.2. 정책금융 현황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보증의 역할

○ 정책금융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며, 지원방식이 변화함.

- 소극적인 의미에서 정책금융은 시장보완 기능,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책금융은 경제발전을 지원, 경기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정책금융은 위기 시에 시장안전판의 역할을 함.
- 정책금융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금융도 다양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융자(대출), 보증(보험), 투자 등 여러 방향으로 체계가 변화됨.

○ 중소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정책은 사업성 및 기술성을 가진 중소기업 육성을 활용하여 정책적 목적인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과 국민경제 성장을 수행하는 자금임.

- 정부, 지자체, 중앙은행, 보증·보험형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이 정책융자 지원제도는 보증지원 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 측면에서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금융 분야는 크게 은행형 공공기관 3개, 보증·보험형 공공기관 9개, 융자형 공공기관 2개, 자산관리형 공공기관 4개로 총 18개 기관이 존재하며, 네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함.

- 공공기관은 채권발행, 차입, 정부지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융자·보증·보험·투자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함.

〈그림 7-2〉 중소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공공기관의 업무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주무부처	설립목적	주요업무	손실보전 여부
은행형 (B)	한국산업은행 (1954)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산업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에너지 자원의 개발, 기업산업의 해외진출, 기업구조조정	○
	한국수출입은행 (1978)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	해외건설 물량트 등 주요 수출산업 부문 금융지원, 해외 투자자금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
	중소기업은행 (1961)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중소기업 자금대출어음할인,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등 재무중개 발행	○
보증 보험형 (C)	신용보증기금 (1978)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신용보험, 보증연계투자, 창업기업지원·신용정보 종합관리, 기업 경영지도	○
	기술보증기금 (1989)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기술보증, 기술평가, 보증연계투자, 구상권관리, 유통회사보(P-CBO), 기술혁신지원, 기업 경영지도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0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보제공, 신용보증·신용조식사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교육연수, 기업 부담해우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서민금융진흥원 (2016)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을 위한 법률」 제33조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신용취약층, 청년 대학생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지원 및 금융교육,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한 경제력 지원	
	주력도시보증공사 (2015)	국토교통부	「주력도시보증법」 제16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보증, 주택관련 정부정책지원을 위한 보증, 주택 도시기금의 운용·관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2004)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유통·회계·발행, 보증·관리·평가, 공공·주택·금융·금융·금융, 주택금융·신용보증·공급, 주택연금(역모기지·보증) 공급	○
	한국무역보험공사 (1992)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보험법 제27조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무역보험기금 관리 및 운용	○
	예금보험공사 (1996)	금융위원회	「예금보험법」 제3조	예금보험기금 조성, 부실 금융기관 정리, 보험금 지급, 공적 지원자금 회수	
	한국해양진흥공사 (2018)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자립자금을 위한 재무보증,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해운항만업의 자금 및 거래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7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근로복지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CEO 육성	
융자형 (D)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상공인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의 위탁 운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환·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
자산관리형 (E)	한국벤처투자 (2005)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한국자산관리공사 (1962)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신용회복지원, 국공유재산 관리	
	한국투자증권사 (2005)	기획재정부	「한국투자증권사법」 제1조	위탁기관에서 받은 자산의 관리·운용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2018)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지원 등	

자료: 김상봉·이시은(2023), “정책금융 현황과 농업정책금융의 방향”.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에서 공급되며, 코로나19 이후 지원이 증가함.

〈표 7-1〉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융자, 보증, 보험, 투자액 공급잔액

단위: 조 원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융자, 보증, 보험, 투자 총잔액	662.7	770.9	1,078.8	1,213.5	1,309.4	1,474.4	1,647.2
중소기업은행	133.2	147.3	168.9	187.8	212.5	240.2	262.1
신용보증기금	53.4	58.2	61.4	65.3	68.7	84.1	96.9
기술보증기금	17.3	19.8	20.8	22.0	22.3	25.9	26.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5	6.9	8.0	9.4	11.4	21.2	2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0	15.0	14.2	15.1	16.6	19.4	2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0.0	2.6	6.3	9.6	11.4
한국벤처투자	1.4	1.6	2.2	3.4	4.5	5.8	7.3
중소금융 합계	226.9	248.7	275.7	305.7	342.3	406.3	449.1

주: 신용보증기금의 유통화회사보증의 경우 기초자산 편입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안옥진(2022),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 2021년 말 기준으로 융자잔액이 287.3조 원으로 전체의 6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증잔액이 145.1조 원으로 32.3%의 비율을 차지함.

〈표 7-2〉 중소기업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지원방식별 공급잔액

단위: 조 원, %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융자	144.1	157.0	177.3	199.6	228.9	262.5	287.3
보증	78.8	86.1	90.6	96.1	100.8	129.2	145.1
보험	1.3	2.4	3.6	4.3	5.0	5.1	5.2
투자	2.7	3.1	4.1	5.8	7.5	9.5	11.5
합계	226.9	248.7	275.7	305.7	342.3	406.3	449.1
비중	융자(대출)	63.5	63.1	64.3	65.3	66.9	64.0
	보증	34.7	34.6	32.9	31.4	29.5	31.8
	보험	0.6	1.0	1.3	1.4	1.5	1.2
	투자	1.2	1.3	1.5	1.9	2.2	2.6

자료: 안옥진(2022),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 2021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금융 449.1조 원은 융자, 보증, 투자, 보험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행은 융자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91.5조 원, 기술보증기금이 26.5조 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22.9조 원 등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벤처투자는 7.3조 원의 투자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표 7-3〉 중소기업 금융공공기관의 지원방식별 공급잔액(2021년 말)

단위: 조 원

구분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합계
중소기업은행	254.0	4.3	0.0	3.8	262.1
신용보증기금	0.0	91.5	5.2	0.3	96.9
기술보증기금	0.0	26.5	0.0	0.2	26.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0.0	22.9	0.0	0.0	2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1.9	0.0	0.0	0.0	2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4	0.0	0.0	0.0	11.4
한국벤처투자	0.0	0.0	0.0	7.3	7.3
합계	287.3	145.1	5.2	11.5	449.1

자료: 안옥진(2022),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 보증·보험형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2011년 대비 2021년 보증·보험의 운용배수는 대부분 보증·보험 잔액 증가보다 기본재산이 증가하지 못하여 운용배수⁷⁵⁾가 상승함.

- 2011년 대비 2021년의 보증·보험형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운용배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증·보험형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보증·보험 운용배수가 증가함.

〈표 7-4〉 주요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BIS자기자본비율 및 운용배수 현황

단위: %, 배

유형	기관명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은행형 (BIS 비율)	한국수출입은행		10.63	11.60	10.04	12.90	14.56	15.09	14.84
	한국산업은행		15.25	14.47	14.18	15.26	14.05	15.96	14.88
	중소기업은행		11.70	12.30	12.51	14.20	14.47	14.82	14.85
	평균		12.53	12.79	12.24	14.12	14.36	15.29	14.86
보증· 보험형 (운용 배수)	신용보증기금		6.9	8.0	9.0	9.9	9.8	8.2	8.9
	기술보증기금		6.1	8.3	9.0	11.1	13.2	12.0	8.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5.7	34.4	37.6	31.6	46.1	55.3	37.4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	-	-	-	10.2	6.6	6.5	4.5
	주택도시보증공사		21.0	26.6	33.9	46.5	45.6	47.4	49.2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유계정	21.8	32.4	38.2	41.9	36.3	40.3	39.7
		주택신용보증계정	10.2	10.6	10.6	11.7	11	13.3	13.4
		주택연금보증계정	7.9	11.1	12.8	15.1	15	11.6	9.7
	한국무역보험공사		90.3	86.7	66.3	69.1	37.7	29.9	26.5

자료: 안옥진(2022),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⁷⁵⁾ 보증·보험 운용배수는 각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연도 말 보증·보험 잔액을 기본재산 및 이월이익잉여금 등의 순자산으로 나눈 배수를 말함. 보증 및 보험은 향후 대손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이므로 해당 보증·보험에 대한 변제 능력을 유지하려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에 비해 보증·보험을 과도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하는 등 적정 운용배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보증기금의 지배구조 및 조직현황

2.1.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은 1974년 12월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에 특별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신용보증기금의 최고 의결기구는 운영위원회로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며, 운영위원은 12인, 임기는 2년임.
- 신용보증기금의 조직은 본부조직(4부문 14부 5실)과 영업조직(9영업본부, 109영업점, 15재기지원단, 11채권관리단)으로 구성되며,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는 법에 따름.⁷⁶⁾

2.2.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은 1986년 12월 26일에 제정된 ‘기술보증기금법(舊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9년 4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기관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었으나 2017년 7월 26일에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었으며,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 개정(2021. 10. 19.)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설립목적이 일부 변경됨.

⁷⁶⁾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기술보증기금의 최고 의결기구는 운영위원회로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함.
- 2022년 말 기준으로 인력은 설립 이후 증가추세이고 총 1,563명이 근무하며, 기술평가 전담인력 761명, 박사급 인력 284명의 전문가가 존재함.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 이외에도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법에 명시된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는 법에 따름.⁷⁷⁾

2.3.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999년 9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 되었으며,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재단에 대한 재보증지원 및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 8월 신용보증재단회중앙회를 설립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업무는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신용보증·신용조사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신용보증업무 감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매각과 소각 및 재기를 지원함.⁷⁸⁾

⁷⁷⁾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함)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9. 중소기업팩토링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⁷⁸⁾ ‘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에 따라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기본재산의 관리 2.

2.4. 중소벤처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79년 1월 30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며, 중진공은 중소기업 창업 촉진, 산업 균형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며, 중진공의 주요 업무는 법에 따름.⁷⁹⁾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 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전문지도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 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 국외투자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20. 중소기업·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2.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1971년 1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업무범위가 매우 한정적임.⁸⁰⁾

○ 농신보의 운영체제는 매우 복잡함.

- 관리기관은 농협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관리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 정부기금출연은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 감사기관은 감사원으로 구분되며, 의결기관은 신용보증심의회(12명)로 구성됨.⁸¹⁾
- 조직은 중앙본부(상무, 신용보증기획부, 신용보증업무부)와 보증센터(지역보증센터 9개, 권역보증센터 18개)로, 2023년 1월 말 현재 보증계약 금융기관은 6,765개소이며 중앙본부 56명, 지역보증센터 75명, 권역보증센터 144명으로 구성되어 총 275명이다.

8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기금의 관리 2. 신용보증 3.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8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3. 농신보 운영 현황

3.1. 농신보의 주요 업무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비슷한 당사자 관계로 보이지만, 농신보는 위탁보증이 존재함.

- 농신보의 위탁보증의 건수가 많으나 직접보증의 금액이 더 큼.

〈표 7-5〉 농신보 보증별 신용보증잔액 현황(2022년 말)

단위: 건, 억 원, %

	건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위탁보증	317,505	67.5	52,976	30.8
직접보증	152,614	32.5	118,876	69.2
계	470,119	100.0	171,852	10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23), 《농신보업무현황》.

○ 농신보의 보증대상자로는 건수 대비 금액이 단체가 큼.

〈표 7-6〉 신용보증잔액 현황(2022년 말)

단위: 건, 명, 개, 억 원, %

구분	건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개인(인원수)	460,492 (199,084)	98.0	149,394	86.9
단체(업체수)	9,627 (6,280)	2.0	22,458	13.1
계	470,119	100.0	171,852	100.0

주: 개인: 농어업인, 단체: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수산물유통가공단체 등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23), 《농신보업무현황》.

○ 동일인당 보증한에서 개인은 15억 원, 법인은 20억 원이며, 법인 단체에 대한 보증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임.⁸²⁾

⁸²⁾ 관리기관이 별도로 인정한 예외보증 대상자: 70억 원, APC·INNO-BIZ법인·수출규모화·원양어업

- 농신보의 보증은 농협을 통한 보증이 많으며, 운용배수 개선을 위한 보증총량 관리방안 이행에 따라 신규보증 및 보증잔액 증가추세가 둔화됨.

〈표 7-7〉 농신보 보증기관별 신규보증 및 보증잔액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규보증	농협	59,716	64,886	62,463	61,137	75,742
	수협	17,884	19,533	17,803	17,436	19,380
	기타	1,601	1,693	1,605	1,574	1,280
	합계	79,201	86,112	81,871	80,147	96,402
보증잔액	농협	115,048	123,642	125,718	124,638	132,870
	수협	29,413	32,350	33,212	33,163	33,243
	기타	4,445	5,125	5,469	5,784	5,739
	합계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총보증지원 누계(금액)		1,318,709	1,404,821	1,486,692	1,566,839	1,663,241

주: 기타 = 산림조합 + 농산물유통공사이며, 신규보증 = 일반보증 + 우대보증 + 특례보증임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23), 《농신보업무현황》.

3.2. 기금 운영

- 농신보 기금은 정부출연금보다 법정출연금인 금융기관출연금과 수수료 및 기타 등에 의존함.

- 2022년 말까지 총 11조 4,247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이 중 61.7%를 출연금에 의존하며, 정부출연금이 2019년까지 환수되었다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함.

- 2014~2019년 동안 1조 6천억 원의 기금반환과 보증사업 활성화 등으로 인한 기본재산 감소 및 보증잔액이 증가함.

경영자금: 30억 원, RPC·FTA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차보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원양어선 현대화: 개인 30억, 법인 50억 원, 첨단온실신축지원·스마트팜지원사업·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 개인 30억 원, 법인 70억 원이며, 중복 보증 방지를 위해 타 신보 보증금액 차감.

〈표 7-8〉 2016년 이후 연도별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억 원, 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	정부출연금	-3,000	-3,000	-2,000	-2,000	1,000	1,300	1,300
	금융기관출연금	1,207	1,222	1,240	1,269	1,386	1,833	1,971
	보증료, 이자수입 등	1,177	1,114	1,085	1,042	957	810	806
	계	-616	-664	325	311	3,343	3,943	4,077
지출	보증보조비용	150	746	1,585	1,910	1,182	468	571
	구상채권상각비	772	1,466	2,125	2,668	2,197	1,896	1,846
	관리업무비 등	740	741	666	590	566	633	631
	계	1,662	2,953	4,376	5,168	3,945	2,998	3,048
기본재산(A)		22,974	19,357	15,306	10,449	9,847	10,792	11,821
보증잔액(B)		121,804	133,968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운용배수(B/A)		5.30	6.92	9.73	15.4	16.7	15.16	14.5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23), 《농신보업무현황》.

- 농신보의 신규보증액(일반)은 신용보증기금보다 작지만, 기술보증기금보다 크며, 농신보의 총보증공급액과 보증잔액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보다 작음.
 - 2021년 말 농신보의 총보증공급액은 8조 원으로 신용보증기금 65.4조 원, 기술보증기금 25.5조 원보다 작음.
 - 2021년 말 농신보의 보증잔액은 16.4조 원으로 신용보증기금 78.6조 원, 기술보증기금 26.5조 원보다 작음.
- 농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보다 작지만,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기금보다 크고 기술보증기금과 비슷함.
- 농신보의 운용배수는 2019년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그 이유는 보증잔액은 10% 전후로 증가하였으나 출연금이 환수되거나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두 기금에 비해 작게 나타나므로, 정부출연금과 더불어 법정출연금인 금융기관출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출연금은 법정출연금으로, 신용보증기금,⁸³⁾ 기술보증기금,⁸⁴⁾ 농신보⁸⁵⁾ 모두 증가하고 있음.

〈표 7-9〉 기금별 주요 운영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농 신 보	신규보증(일반)	-	-	-	-	-	61,648
	총보증공급	67,462	79,201	86,112	81,871	80,147	96,402
	보증잔액	133,968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기본재산	19,357	15,306	10,449	9,847	10,792	11,821
	정부출연금	-3,000	-2,000	-2,000	1,000	1,300	1,300
	금융기관출연금	1,222	1,240	1,269	1,386	1,833	1,971
	특별출연금	-	-	-	-	-	-
	운용배수	6.9	9.7	15.4	16.7	15.2	14.5
	대위변제(율)	2,092(1.6)	2,776(1.9)	3,265(2.0)	3,073(1.9)	3,021(1.9)	2,902(1.7)
	신규보증(일반)	117,788	112,792	118,100	176,818	135,778	-
신 보	총보증공급	461,069	473,951	468,693	490,879	653,758	652,866e
	보증잔액	508,463	505,371	522,161	671,531	785,888	-
	기본재산	51,214	50,909	53,377	81,922	88,791	-
	정부출연금	1,841	1,416	1,510	33,266	4,406	-
	금융기관출연금	8,158	8,126	8,428	9,407	9,847	-
	특별출연금	929	722	1,416	1,301	568	-
	운용배수	9.9	9.9	9.8	8.2	8.9	-
	대위변제(율)	16,099(3.2)	19,134(3.8)	12,616(2.4)	12,136(1.8)	10,995(1.4)	-
	신규보증(일반)	52,859	52,465	48,480	78,2000e	49,276	42,638e
	총보증공급	222,555	224,798	220,020	254,398	255,000e	-
기 보	보증잔액	218,506	224,426	221,122	257,045	264,929	265,029e
	기본재산	19,722	16,761	16,751	21,504	29,625	-
	정부출연금	508	200	1,030	4,883	3,500	-
	금융기관출연금	5,254	5,502	5,998	6,713	7,000e	-
	특별출연금	-	-	-	-	-	-
	운용배수	11.1	13.4	13.2	12.0	8.9	-
	대위변제(율)	7,800(3.6)	8,164(3.6)	7,959(3.6)	6,420(2.5)	4,906(1.9)	-

주 1) 특별출연금은 기업, 금융회사, 지자체 특별출연금 포함.

2) 신규보증은 일반 신규보증을 의미. 농신보의 신규보증은 일반보증+우대보증+특례보증임. 총보증공급은 각자마다 다르지만, 신보는 소상공인위탁보증+일반보증+코로나19 P-CBO+유동화보증+시장안정특별보증임. 기보의 총보증공급은 일반보증(기술보증)+유동화회사보증임.

3) 상첨자 e는 추정치임.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각 연도), 《연차보고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23), 《농신보업무현황》.

83)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매월 말 현재로 출원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기준요율(연율 1만 분의 22.5)과 차등요율(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직전 반기 총 출원금액)에 따르며,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 출원요율은 제1호에 따른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에 각각 4분의 1을 곱하여 합산함.

84)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술보증기금법'(2023. 1. 3. 개정)에 따라 기업 대출잔액의 연율 1천 분의 3 (0.03%)을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보증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원해야 하는 것을 법률에 따르고 있음.

8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에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 분의 27,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은 상호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의 월 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0만 분의 13임.

○ 부분보증 운용 현황

- 농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농어업인,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은 85:15이며 그 외 보증대상자는 80:20임.
- 기보의 경우 상품별로 다르고,⁸⁶⁾ 신보의 경우에도 전액보증에 가깝게 진행되며, 보증료 감면 상품들이 많음. 예를 들어 문화산업 완성보증의 경우 95% 부분보증비율이 적용됨.

〈표 7-10〉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구분	부분보증비율		비고 (2011. 4. 27. 이전)
	농신보	이용자 (농어업인)	
농어업인	85	15	85 : 15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85	15	80 : 20
그 외 보증대상자	80	20	70 : 30

주: 2000. 3. 17. 농어가부채대책특별보증 시 부분보증 도입.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23), 《농신보업무현황》.

○ 농신보의 보증료는 보증금액 및 대상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음.⁸⁷⁾

〈표 7-11〉 기준보증료를 현황(개인·법인·금액별)

보증금액	개인	법인	구성비
2억 원 이하	연율 0.3%(0.4%)	연율 0.5%(0.8%)	96.3%
7억 원 이하	연율 0.4%(0.6%)	연율 0.7%(1.0%)	3.4%
7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연율 0.6%(0.9%)	연율 0.9%(1.1%)	0.2%
10억 원 초과		연율 1.0%(1.2%)	0.1%

주: ()는 유통·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보증금액 1억 원 초과 시 심사평점에 따라 0.2%p 범위 내에서 가감,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자연인 중 신용등급 우수자 0.2%p~0.1%p 차감.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23), 《농신보업무현황》.

⁸⁶⁾ 창업관련 보증(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청년창업기업보증, 중·장년 기술창업자기능보증),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기술신탁관리, 벤처투자연계보증, VC투자매칭특별보증 등은 전액 보증에 보증료 감면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다른 상품들도 90~95%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⁸⁷⁾ 농어업 재해대책자금(특별재난지역) 보증료를 인하(2012. 9. 3.): 0.1%, 기준보증료를 체계 개선(2018. 4. 9.): 구간조정.

〈표 7-12〉 농신보 보증료율의 변화(연간)

1999. 6. 21. 이후	2004. 1. 1. 이후	2006. 7. 1. 이후	2011. 4. 27. 이후
0.2%	0.3%	0.5%	0.3%

주: 개인, 1억 원 이하 기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23), 《농신보업무현황》.

4. 농신보 발전 방향과 과제

4.1. 농신보의 위치와 역할 변화

4.1.1. 독립 준정부기관화 및 통합 정책기관화

○ 농신보의 정책관리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필요함.

- 기술보증기금은 1989년 4월 1일에 기술보증기금법(舊 신 ‘기술사업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기관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며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었으나 2017년 7월 26일에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
- 농신보는 농림축산및연계업 발전을 위한 신용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기관이지만 농신보의 금융시장의 시스템 안정,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농신보의 정책결정기관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측면으로 볼 때 효과적이고 전문성이 높지만, 농림축산 및 연계업 등의 발전전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
- 농림축산 및 연계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신용보증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즉각적인 제도개선이 일어나기 어렵고, 농업정책과 신용보증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신용보증의 정책수단을 농림축산 및 연계업 정책에 활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와 변경된 것과 같이, 농신보도 농림축산식품부로 주무부처를 이동할 경우, 정책의 의사결정체계가 바뀔 수 있음.

- 최고 의결기관인 신용보증심의회는 기보와 같이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 정책개선이 아닌 대위변제를 심의를 주로 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심의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및 역할 정립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특례보증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으며, 정부정책인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이 더욱 증가해야 함에도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없음.

○ 농신보를 농협중앙회에서 독립시켜 농업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농신보는 농림축산 및 연계업의 신용보증업무, 신용 및 기술정보업무와 더불어 농업정책금융의 직접대출까지 관리하는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안)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음.⁸⁸⁾
- 신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보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신보가 기업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서비스 등은 차별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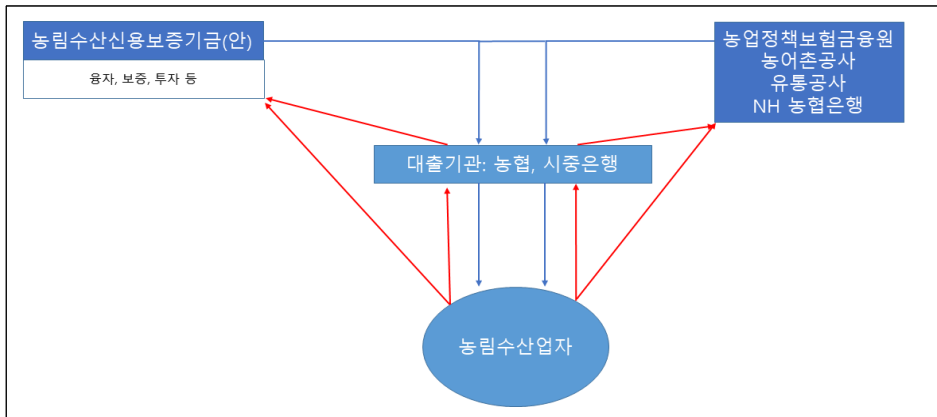
○ 농신보를 독립 준정부기관화시키면서 농업관련 분야 통합 정책기관화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자금의 재원은 회계별·기금별로 다양하고 관리가 복잡해서 정책금융이 일반 금융회사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농업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정책대상자에게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신보를 중심으로 농업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⁸⁸⁾ 독립기관화 방안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농신보와 신보를 통합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현재 금융위원회가 두 기관을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관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임. 신보와 기보의 경우에도 장기간 그러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기보가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및 투자를 표방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주무부처가 바뀌면서 그러한 논의는 없어짐.

-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른 대상에 정책금융 공공기관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용자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용자를 사업영역에 포함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신용 및 기술정보 취합, 평가, 대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그림 7-3〉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안)



자료: 저자 작성.

4.1.2. 농신보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 필요

○ 현재의 농신보는 의사결정구조에서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한 보증 관리 이상의 업무혁신, 신상품의 개발, 사업영역의 확장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신보나 기보뿐만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비교해서도 취급업무의 범위가 매우 단순하며, 위의 기관들은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데이터와 모형, 그리고 정책개발을 통해 자체적인 발전전략이나 혁신을 추진하는데 비해 농신보는 그렇지 못함.

○ 농신보가 신용보증 수요자이자 금융회사 중 하나인 농협중앙회의 하나의 사업부서로 위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농신보 자체 발전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신보 개선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관리함.

- 농림축산 및 연계업의 국내 경제여건 및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신용보증업무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농신보의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신속하지 못하기 때문임.

○ 기보 등과 비교해도 농신보의 직원 수나 전문성 면에서도 한계가 있는데, 현재 농신보 직원은 다른 부서와 순환보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음.

- 정부 정책이었던 농어가부채대책 특례보증의 부실화에 따른 징계 등으로 업무에 대한 개선 의지가 낮았음.
- 신보나 기보의 경우에도 보증담당자의 승인을 등을 매해 검토하기는 하지만 실제 위험을 담당자에게 지게 하지 않음.

○ 농신보의 기본재산과 보증금액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신보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위탁관리 체제는 금융회사에서 초기에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작은 규모의 보증일 때 관리비용이 낮고, 인력육성, 전산인프라 구축비용 등에서도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며, 초기에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음.

○ 농신보의 지배구조를 신보, 기보, 지역보증재단 등의 보증·보험형 금융관련 공공기관과 같이 법적,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신용보증심의회 정도의 규정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며, 농협중앙회에서 독립하여 준정부기관화되면서 독립기관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함.

4.2. 자금 업무 확대

4.2.1. 기술평가 관련 금융 등 역할 강화

○ 기보와 신보 모두 기술평가 관련 보증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다른 보증·보험형 기관들도 기술관련 데이터 평가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에 기술금융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신상품을 개발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우수기술사업자 인증을 빼면 농신보의 창업농 관련 보증 외에 기술관련 보증상품은 거의 없다. 농신보가 기술금융 등을 강화하도록 기술평가나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을 두어 보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목적용 모형 등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기반의 보증대상자에게 부분보증비율을 인상하고, 보증료율도 낮출 필요가 있음.

4.2.2. 신용 및 기술보증대상자 범위 확대

○ 농업법인의 증가와 같은 농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6차산업에 포함되는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신용 및 기술보증 대상자에 대해 범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법인에 대한 총보증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인에 편중되어 보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총보증한도를 폐지하기보다 탄력적 운용이 필요함.

○ 동일인 보증총액한도 확대가 필요함.

- 국내시장 개방에 따라 농어업 분야에서의 대규모화 및 전문화 진행과 농어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법인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연계업에 대해 보증을 활성화하고, 농업정책과의 연계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인 보증총액한도 확대가 필요함.

○ 창업 관련 농신보 보증지원 확대가 필요함.

- 농고·농대 졸업생, 귀농·귀어 등이 농림어업부문에 정착하고, 비농업 분야에서 농업 분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2.3. 보증연계투자 제도 도입

○ 기술기반 농림축산및연계업에 대해 농신보가 1차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고, 이후 부실화 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 부분을 투자로 전환하도록 연계하는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현재의 기술금융은 투자지원으로 적합한 지원방식이며, 농식품전문모태펀드가 있지만, 기술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며, 이를 위해 농신보의 보증연계투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과 함께 투자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안 및 신용보증 대출의 만료 시점에 사업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평가하여 신용보증에 대한 출자·전환 사채 매입 등의 투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4.2.4. 매출채권보험 등 신용보증보험제도의 도입

○ 농신보는 농가의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신보는 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해 신용보험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계약의 이행에 대해 이행보증보험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 계약 재배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약거래에 관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보험상품 등에 대한 이행보증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4.2.5. 경영컨설팅 서비스 도입 및 조사연구 체계 도입

○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업무영역에 조사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증규모가 큰 농림축산 및 연계업에 대해 경영지도나 경영컨설팅으로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한 농가 등에 대해 경영컨설팅으로 사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 경영컨설팅은 농신보의 역할 강화와 보증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함.

○ 신보나 기보 등을 비롯한 보증·보험형 공공기관에서도 보증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신보도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

- 매해 농림축산 및 연계업의 자금사정, 자금사정 악화요인, 자금수요, 자금조달 애로사항,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4.3. 농식품 분야 보증제도 고도화

4.3.1. 농신보 모형

○ 농신보의 모형은 초기 형태의 신용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도입하였으며 모형의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타 분야 사례를 참고하여 모형 개선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7-13〉 농신보의 신용조사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5,000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10개 필수 확인사항 점검(대상자, 대상자금 등)		
신용평가	신용평가 운전(시설)사업성평가	신용평가 운전(시설)사업성평가 재무·비재무평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23), 《농신보업무현황》.

4.3.2. 타 기금 신용평가모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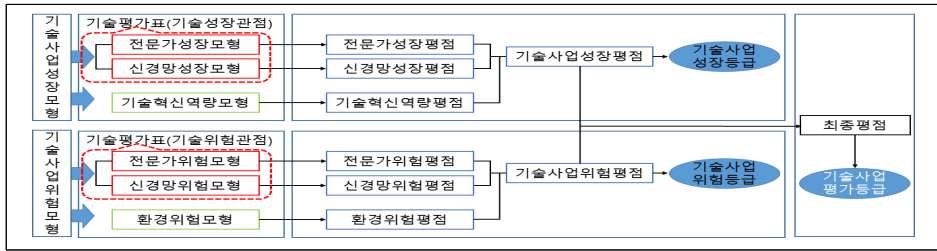
가)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신용평가모형의 개선(2004년), 기술평가모형(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KTRS) 구축(2005년),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구축(2007년)하고, 크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형 개선함.

○ 기술보증기금은 2020년 6월 新기술평가시스템(AIRATE)을 개발함.

- 기술보증기금은 표준모형, 정책표준모형, 독립정책모형으로 구분하여 표준모형 기반 모형체제로 개편하고, 모형체계를 수직체계화시킴으로써 모형을 간소화하였고, 12종류의 46개 세부모형으로 운영함.

〈그림 7-4〉 KTRS계열 신기술평가시스템(AIRATE) 모형



자료: 김상봉·최윤정(발간 예정), “기업 및 기술정보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기술금융연구》,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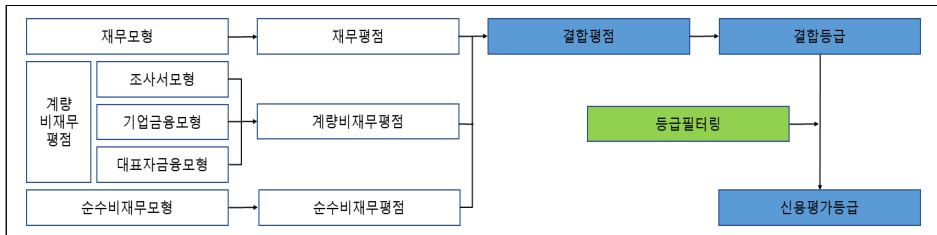
나)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은 2001년 1월에 개발되었으며, 2018년 1월까지 총 5차례 모형이 개선됨.

○ 2018년 1월부터 각각의 신용평가시스템(CCRS, SBSS, CIRS)에 대해 최근 부실 동향 및 최신 평가기법을 병행하며 변별력을 개선한 신용평가시스템(Kodit Rating System: KRS)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세부 모형의 명칭이 KRS-C(일반기업용), KRS-S(창업기업용) 및 KRS-1(보험용)으로 변경됨.

- 일반기업평가시스템(Kodit Rating System for Corporation: KRS-C)은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모형의 평가결과를 합산하며 결합등급을 계산하고, 등급 필터링을 거쳐 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함.
- 창업기업평가시스템(Kodit Rating System for Start-up: KRS-S)은 일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동일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업력 7년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시스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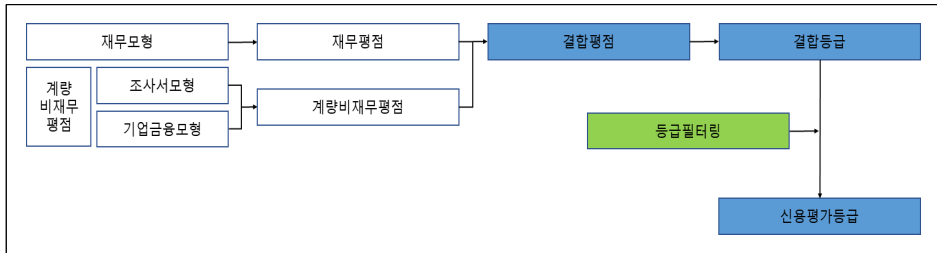
〈그림 7-5〉 일반기업(KRS-C) 및 창업기업평가시스템(KRS-S)



자료: 김상봉·최윤정(발간 예정), “기업 및 기술정보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기술금융연구》, 12(1).

- 신용보험용평가시스템(Kodit Rating System for Insurance: KRS-I)은 신용보험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시간 동태정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신용보험 심사전용 신용평가시스템임.

〈그림 7-6〉 신용보험용평가시스템(KRS-I) 체계



자료: 김상봉·최윤정(발간 예정), “기업 및 기술정보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기술금융연구》, 12(1).

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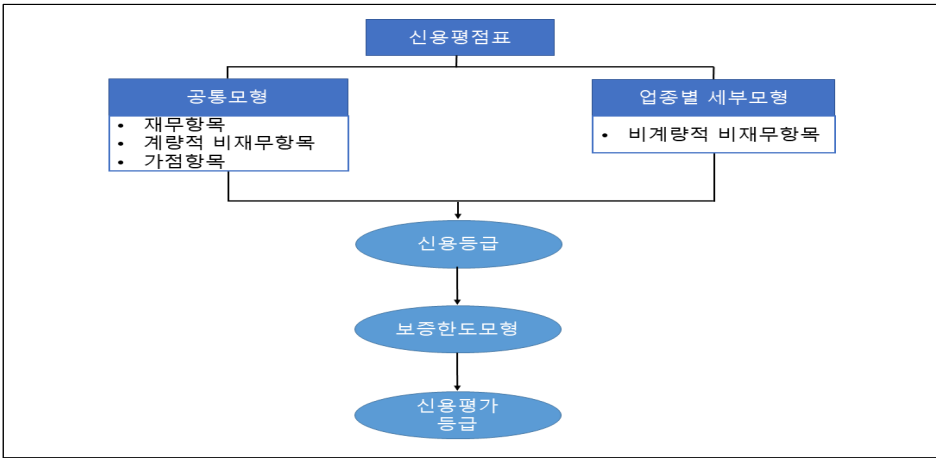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6개 지역신보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였으며⁸⁹⁾ 2002년 개발이 완료되어 2003년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됨.

○ 신용평가모형은 신용평점모형과 보증한도모형으로 구성됨.

- 신용등급 및 보증한도 산출은 각종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점을 산출하고 평점별 등급기준에 의해 평가등급을 산출함. 보증한도는 보증한도모형에 의해 보증한도지수를 산출하고 신용등급별로 한도조정금액을 가감한 후 보증한도액을 산출함.

⁸⁹⁾ 2021년 말 세중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면서 17개의 지역신보가 영업을 하고 있음.

〈그림 7-7〉 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시스템



자료: 김상봉·최윤정(발간 예정), “기업 및 기술정보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기술금융연구》, 12(1).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2007년부터 운영함.

-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구성은 외감기업, 비외감기업, 소기업으로 평가시스템을 세분화함.

〈그림 7-8〉 신용보증재단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구성

평점 산출	결합평점 산출 (모형별 적용비율)			등급제한대상 확인	가감점 부여	최종 신용등급 산출
평가모형 (배점)	외감	비외감	소기업			
재무모형 평점(100)	60%	40%	20%	등급제한 사유 해당 여부확인(해당시 BB~D등급으로 제한)	해당항목 여부확인 (총 7점 이내)	AAA AA A BBB B B CCC CC C D
비재무모형 평점(100)	40%	40%	60%			
대표자모형 평점(100)	—	20%	20%			

자료: 김상봉·최윤정(발간 예정), “기업 및 기술정보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기술금융연구》,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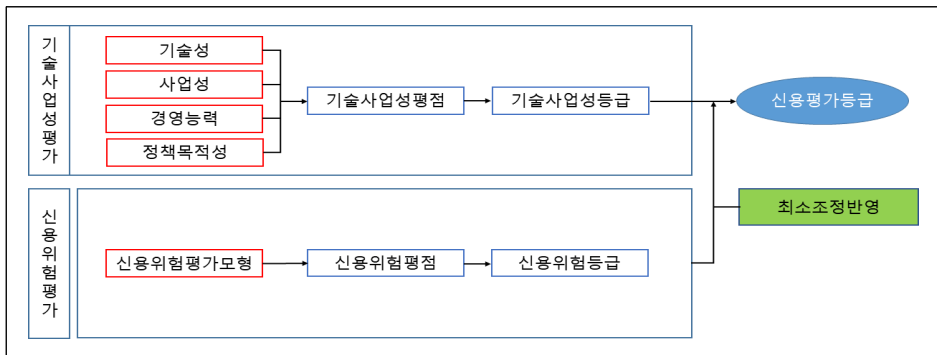
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특수 정책목적에 맞도록 장기 설비나 운전자금 위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신용평가 시 비재무평가 비중을 확대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을 자금구조별로 설계하고, 성장단계별로 나누어 운용함.⁹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재무요인 비중을 축소하고 비재무요인 비중을 확대하며, 기술성과 미래 사업성 중심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년 현재 정책자금 평가모형(K-VALUE)을 보증과 연계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그림 7-9〉 K-VALUE(대면 모형) 등급 산출방법



자료: 김상봉·최윤정(발간 예정), “기업 및 기술정보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기술금융연구》, 12(1).

⁹⁰⁾ 성장단계가 낮은 단계에서 성숙기와 쇠퇴기로 구분한다.

4.4. 세부 제도 개선과제

4.4.1. 기금 확대

○ 농신보는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보증·보험형 금융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보증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도가 낮지만, 기간산업인 농림축산 및 연계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금 확대는 기본재산과 운용배수의 증가로 직결되며, 농신보의 기관의 독립화 및 전문성 제고의 근거가 됨.

4.4.2. 출연금 제도의 변화

○ 정부의 출연금 환수 등에 따라 운용배수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출연금도 증가하여 기본재산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 분의 27(0.027%)인데 출연요율에 대한 예외사항이 너무 많고, 기보나 신보의 경우처럼 전체 일반대출금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기보의 경우와 같이 0.03%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⁹¹⁾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은 상호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0만 분의 13(0.00013%)으로 상당히 낮음.

⁹¹⁾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매월 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기준요율(연율 1만 분의 22.5, 0.0225%)과 차등요율(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에 따르며,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 출연요율은 제1호에 따른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에 각각 4분의 1을 곱하여 합산함.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기업 대출잔액의 연율 1천 분의 3(0.03%)을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보증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것을 법률에 따르고 있음.

4.4.3. 법정 운용배수 확대

○ 우리나라 운용배수는 산업과 경기변동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15~20배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운용배수를 확대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큰 산업부문에 대한 운용배수는 낮아야 하고 리스크가 낮은 산업부문에 대한 운용배수는 높아야 하지만, 일률적으로 운용배수를 15~20배로 한정하고 있음.⁹²⁾
- 신보와 기보의 보증총액 한도는 법적으로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정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운용배수는 15배이나, 2022년 현재 15배를 훨씬 초과함.
- 실제로 건설회원사의 보증을 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운용배수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신용리스크(VaR)에 입각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20배에서 35배로 증가하여 유지되고 있음.⁹³⁾
- 역사적인 부도율 등을 활용하는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해도 운용배수는 30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됨.

⁹²⁾ 운용배수를 BIS 자기자본비율의 역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거가 없음. 오히려 운용배수는 신용 VaR(Value at Risk)의 요소(factor)인 부도율, 손실률, 리스크노출잔액의 역사적인 값에 대해 예상손실과 예상치 못한 손실을 계산함(김상봉 외, 2012).

⁹³⁾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보증한도) ①법 제54조 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음.

4.4.4. 부분보증비율 인상

○ 농신보는 신보의 많은 보증상품과 같이 85%의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고 있고, 기보는 전액보증상품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신용경색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음.

- 중소기업과 농가를 포함하는 농림축산 및 연계업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부분보증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2021년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면, 농신보는 1.9%에 불과하며, 대위변제율이 낮다는 것은 보증료율을 완화하거나 부분보증비율을 높여도 기금의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보와 기보는 보증료율을 우대해 주고 전액보증 상품을 늘리고 있음.

○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보증상품과 보증대상자에 따라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농어업 개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상품별 또는 보증규모별로 85%에서 90%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농어업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은 신보와 같이 현재 85%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비농어업부문 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 80%는 85%로 인상하여 농어업법인과 같게 하는 것이 적합함.

4.4.5. 위탁보증 비중 감소

○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농신보 기금 위기 당시에 대위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이 있었던바, 대출담당자가 위탁보증의 농신보 신용보증을 기피하지 않도록 위탁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승인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 보증을 이용한 자금을 본래의 용도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 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탁보증의 경우에 모든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위탁보증 대출담당자는 관리하여야 할 요소가 많아지므로 대위변제 판정 시에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출담당자의 기피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출담당자의 필수 검토사항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분쟁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하여 농신보가 신용보증 승인 시에 자세히 검토해야 하며, 대출담당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4.4.6. 보증료 상환인센티브제 도입

- 농신보 보증자금의 상환을 성실히 이행한 자금이용자에게 일정비율의 보증료를 다시 반환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실한 상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대출의 부실화를 완화할 수 있음.

4.4.7. 재보증제도 또는 거래은행제 도입 검토

- 농신보가 재보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데,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원보증자가 보증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대규모 보증에 적용할 수 있음.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재보증)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에 근거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고 있음.⁹⁴⁾⁹⁵⁾

⁹⁴⁾ 재보증은 원보증기관(농신보의 위탁보증기관)의 기본재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원보증기관이 농림축산및연계업 등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재보증기관(농신보)이 재보증하고, 원보증기관

- 대규모의 일반적인 자금 대출에서도 농업금융기관의 리스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은행제나 재보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또는 농업금융기관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의 농촌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거래은행제(correspondent bank relationship)의 도입 검토 필요함.

- 거래은행제는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대규모 대출에 대해 공동으로 자금공급을 관리하고 수익도 나누면서 리스크도 공동부담하는 제도임.

4.4.8. 농신보 보증 취급기관 확대

○ 정책금융의 공급기관을 개방하는 경우에 정책금융 참여, 자체 용자 확대 등 농림축산 및 연계업으로 일반금융회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신보 보증제공 대상기관에 대해 확대해야 함.

- 다른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지방은행들도 지방의 시장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임.

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후에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재보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보증기관이 원보증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임.

⁹⁵⁾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 간 개별 및 포괄 약정방식 계약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보증 계약기간: 1년(매년 재계약), 재보증 대상: 소기업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재보증한도: 업체당 4억 원, 재보증비용: 일반 30~50%, 특례 80% 이내, 보전금 청구시기: 원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5년 이내.

8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신뢰성 확보 방안

1.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

1.1. 농업경영정보의 신뢰성 제고 필요성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구성되며,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을 통해 자산을 구성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임.
 -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업 및 농업인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가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무정보의 구축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농업경영체의 비율이 매우 낮아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외부정보이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업법인의 경우 2017년 기준 영농조합법인 73.0%, 농업회사법인 88.2%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농업법인조사, 2022).
- 일반 농업인의 경우 일부 선행연구에서 소규모 교육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영농일지나 경영기록을 포함하여 파악한 바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재무제표의 작성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농업금융은 대부분 민간금융보다는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정부는 농업정책자금의 지원조건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장부기록 또는 재무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해당 자료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임.

- 농업정책자금은 일반회계의 이차보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과 부채대책자금, 일반회계의 출연을 통해 이루어지는 축발기금, FTA기금, 농안기금, 농지기금이 있으며, 특별회계인 농특회계와 재특회계로 구성됨.
- 농업정책자금의 신규공급은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22년 기준 11.6조원에 이르고 있음.
- 농업경영체의 재무정보 제출이 요구되는 사업 또는 자금으로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 경영회생자금 등이 있음.
- 농업경영체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의 재무정보는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며, 법인도 생물자산 등의 평가에서 통일성 있는 기준의 적용이 어려워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농신보는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지급보증을 지원하고 있음.

- 농신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보증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분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부분보증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농업경영체의 재무정보를 활용하거나 물적 담보를 통해 대출자금의 회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 정부는 2010년부터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하여 민간자금의 농업부문 유입을 촉진하고 있음.
- 이는 전통적으로 신용이나 담보에 의존하던 금융과는 달리 사업성에 따른 직접투자 방식으로 농업경영체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와 자산평가가 자금의 진입과 퇴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액은 총 6,307억 원이며, 2022년 말 기준으로 농식품자펀드 결성 규모는 111개, 1조 8,108억 원임.
- 재무정보의 중요성은 정부 정책사업 참여 및 금융기관 대출, 직접투자 및 보증 등과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회계의 필요성이나 회계현실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음.
 - 농업인의 재무정보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신용평가, 외부자금의 유치, 정부 정책사업의 참여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때 농업회계의 필요성은 증가할 것임.
 - 또한, 재무정보가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유용성을 더할 수 있을 때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 동기가 커질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산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무정보의 산출을 위한 기준과 원칙들이 준비되고 학습될 필요가 있음.

1.2. 민간자금 조달에 필요한 경영정보의 종류와 범위

○ 농업경영체의 회계정보(특히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외부정보이용자로 금융기관, 정부, 투자자 등이 있음. 회계정보는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작성되며 외부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외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 하며, 내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 함.
- 농업경영체의 민간자금 조달이라는 관점에서 작성하는 회계는 재무회계로 분류됨.

○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재무제표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식, 연결재무제표로 구성됨.
-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를 제외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로 분류함.

〈표 8-1〉 상법상의 재무제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
재무상태표	○	○	○
손익계산서	-	○	○
자본변동표	-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
현금흐름표	-	-	○
주식	-	-	○
연결재무제표	-	-	△

자료: 나무위키(<https://namu.wiki/w/%EC%9E%AC%EB%AC%B4%EC%A0%9C%ED%91%9C>), 검색일: 2023. 6. 21.

○ 기본재무제표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네 가지가 있음.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를 말함.
-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정리하여 손익을 나타낸 표를 말함.
- 자본변동표는 일정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와 그 변동 내역을 정리한 표를 말함.
- 현금흐름표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변동을 정리한 표를 말함.

○ 재무제표는 기업의 과거 재무상태 및 경영활동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외부정보이용자의 자금공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추정재무제표임.

- 추정 재무제표는 기업의 장래 재무상태를 추정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말하며,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현금흐름표로 구성됨.
- 외부정보이용자는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장래 기업의 가치, 성장여력, 그리고 위험성까지 판단할 수 있음.
-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장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함.

○ 외부정보이용자가 활용하는 주요 재무제표는 과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며, 외부정보이용자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에 해당하는 재무지표를 산출하여 자금의 공급수준 및 경영체 간 비교를 시행하고 있음.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자료는 절대치이기 때문에 경영체 간 비교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재무비율분석 지표를 활용하는데, 재무비율분석 지표에는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성장성, 기업가치의 다섯 가지 지표가 있음.

○ 하지희 외(2018)는 제조기업 및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무지표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재무지표의 활용을 제안한 바 있음.

- 안정성 지표로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수익성지표로 EBIT,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이익률, 경영에 대한 보수, 노동과 경영에 대한 보수, 성장성 지표로 총자산증가율, 효율성 지표로 자산회전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을 제시함.
- 농업법인이 아닌 농업인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경영주를 포함하여 가족노동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음.
- 개인사업자에서 자가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됨.
- 따라서 자가노동이 중요한 농업부문에서는 노동과 경영에 대한 보수 및 경영에 대한 보수가 중요한 수익성 지표로 간주할 수 있음.
- 한편, 농업생산은 제조기업의 생산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생산원가의 산출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노동비의 산출을 위해 자가노동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함.
- 실제로 농업인, 정책사업담당자, 계열화사업자 등은 유용한 의사결정을 위해 농가의 작목별 생산비에 관심이 많음.
- 따라서 농업부문의 회계는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관리회계의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8-2〉 농업회계 재무지표 현황

구분	지표명	산출식
유동성 (liquidity)	유동비율	$\frac{\text{유동자산(연도말)}}{\text{유동부채(연도말)}} \times 100$
지급능력 (solvency)	부채비율	$\frac{\text{부채총계(연도말)}}{\text{자본총계(연도말)}} \times 100$
	이자보상비율	$\frac{EBIT}{\text{이자비용}}$
수익성 (profitability)	EBIT	매출액 - (직접생산비 + 자가노동비)
	총자산이익률	$\frac{EBIT}{\text{자산총계의 평균}} \times 100$
	자기자본이익률	$\frac{EBIT}{\text{자본총계의 평균}} \times 100$
	매출액이익률	$\frac{EBIT}{\text{매출액(또는 평가액)}} \times 100$
	노동과 경영에 대한 보수	매출액 - (직접생산비 + 자본용역비 + 토지용역비)
	경영에 대한 보수	매출액 - (직접생산비 + 자본용역비 + 토지용역비 + 자가노동비)
효율성 (efficiency)	자산회전율	$\frac{\text{평가액}}{\text{자산총계의 평균}}$
성장성 (growth)	총자산증가율	$\frac{\text{자산총계의 증감액}}{\text{자산총계(연도말)}} \times 100$
	자기자본증가율	$\frac{\text{자본총계의 증감액}}{\text{자본총계(연도말)}} \times 100$
	매출액증가율	$\frac{(\text{당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text{전기매출액}} \times 100$

자료: 하지희 외(2018: 522-544), “농업회계 재무지표를 활용한 벼 재배농가 유형구분”, 《농업경영·정책연구》 45(3).

2. 농업경영체의 회계기록 부진의 원인과 개선과제

2.1. 농업법인의 기장의무 및 재무제표 작성

2.1.1. 농업법인의 기장의무와 법인세 감면

○ 농업법인은 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농업법인은 납세와 관련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해야 함(법인세법 제112조).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을 말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

○ 농업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68조 제1항(농업회사법인)에 의거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과 동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농업법인의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표 8-3〉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내용

구분	면제 또는 감면 내용
식량작물재배업	전액면제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감면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1인당 연간 수입금액 6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분 - 농업회사법인: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 이하의 소득분
작물재배업 외 대통령이 정한 소득	감면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1인당 연간 소득금액 1,200만 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업회사법인: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다음 연도로부터 4년간(50% 감면) ※ 축산업, 임업, 농작업대행, 농산물유통, 농산물가공,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및 부대사업은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법인세가 감면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19),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2.1.2. 농업법인의 재무제표 작성비율과 과제

○ 농업법인의 재무제표 작성비율은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9년 이후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제표 작성비율이 영농조합법인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남.

- 영농조합법인의 재무제표 작성비율은 2000년 51.4%에서 2013년 86.3% 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7년 기준 73.0% 수준임.
-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제표 작성비율은 2000년 29.0%에서 2012년 94.5% 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7년 기준 88.2% 수준임.

〈표 8-4〉 재무제표 작성 농업법인 비율

단위: 개소, %

연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수(A)	재무제표 작성(B)	비율(B/A)	법인수(C)	재무제표 작성(D)	비율(D/C)
2000	2,428	1,249	51.4	938	272	29.0
2001	2,345	1,323	56.4	792	234	29.5
2002	2,647	1,530	57.8	760	257	33.8
2003	2,746	1,650	60.1	696	264	37.9
2004	2,896	1,853	64.0	629	277	44.0
2005	2,953	1,905	64.5	589	275	46.7
2006	3,064	2,058	67.2	587	323	55.0
2007	3,294	2,227	67.6	608	370	60.9
2008	3,787	2,610	68.9	675	465	68.9
2009	4,174	2,920	70.0	720	547	76.0
2010	6,849	5,675	82.9	1,512	1,334	88.2
2011	7,640	6,594	86.3	2,052	1,926	93.9
2012	8,872	7,636	86.1	2,875	2,716	94.5
2013	9,651	8,376	86.8	3,682	3,472	94.3
2014	10,262	8,425	82.1	4,781	4,263	89.2
2015	11,792	8,700	73.8	5,692	5,158	90.6
2016	11,779	8,727	74.1	6,309	5,634	89.3
2017	12,280	8,969	73.0	7,920	6,985	88.2

자료: 통계청(<http://kosis.kr/>), 검색일: 2018. 12. 31.

○ 농업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작성된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먼저,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함.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살펴보고, 농업용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평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산출하는지, 외부 전문기관(세무사)에 위탁하는지, 회계교육 이수 및 재무제표 이해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가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투입노력(비용) 대비 편익은 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 회계기준’이 제정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해당 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업 법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2.2. 농업인의 회계기록 실태 및 회계장부 작성의 장애요인

○ 일반농업인의 회계기록실태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소규모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농업인의 회계기록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회계기록과 영농일지(또는 경영기록) 기록에 구분을 두지 않았으며, 일부는 회계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체 농업인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경영(회계)기록 농가의 비율은 교육대상자에 따라 41%에서 63% 수준임.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들의 기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일반농업경영체와 전자상거래 농가의 기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특히, 충남의 전자상거래농가의 기록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상업적 목적의 회계기록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일반농업경영체의 경우, 경영(회계)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① 필요성이 없음(활용도 낮음), ② 시간이 없거나 기록의 어려움 등이 많았음. 기타 기록에 필요한 적절한 농업용 전산프로그램이 없거나 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음.

○ 전자상거래 농가는 소득신고나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농업경영체와는 달리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은 적었으나(7.3%), 기록방법을 모른다는 비중은 높았음(89.5%). 이는 전자상거래 농가의 장부작성이 일반 경영 기록이 아니라 세금신고 및 수지계산 등 회계기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임.

○ 정리하면, 일반농업경영체의 경우 경영(회계)기록의 필요성(활용도) 부족, 시간부족, 기록방법의 어려움 등이 회계장부 작성의 주요 장애요인이며, 전자상거래 농가는 회계기록방법, 즉 회계지식의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임.

〈표 8-5〉 농업경영(회계)기록 미기록 사유 및 기록형태

구분	서상택 외(2014)	이상학 외(2012)	장현동 외(2014)	명수환 외(2017)	엄지범 외(2018)
조사 대상	충청지역과 경기남부지역 농업마이스터 대학 교육생 90명	경남지역 농업경영체 439명	충남 전자상거래 농가	후계농업경영인 303명	일반농업인 282명
조사 기간	2012.8.7.~9.7	2011.8.1. ~2012.9.30	2014.7.27	2016.5.1.~9.1 2016.8.9.~11	2017.6.15.~30
기록 농가	56%	52.9%	40.7%	63.4%	41.1%
회계 미기록 사유	-필요성 없음 (35%) -적절한 농업용 회계프로그램 없음 (30%) -시간없음(23%) -기록방법 어려움 (10%)	-시간없음(34.5%) -필요성 없음 (32.3%) -기록장 없음 (12.5%) -기록방법 어려움 (10.8%) -기타(9.9%)	-기록방법 모름 (89.5%) -필요성 없음(7.3%) -기타(3.1%)	-활용도 낮음 (23.1%) -새로운 교육 내용 없음(20.0%) -사후관리체계 미흡 (16.9%) -교육방법상 참여기회 부족(15.4%) -교육시간 김(10.8%) -기관별 교육내용의 일관성 부족(7.7%) -교육 어려움(7.7%) -기타(6.1%)	-기록이 귀찮거나 어려움(43.9%) -필요성 없음 (29.3%) -시간없음(5.7%) -농업용 전산프로그램 및 이용법 어려움 (4.9%) -기타(14.7%)
기록 형태	-일반노트 및 메모장(26%) -경영기록장(38%) -가계부 또는 출납장(26%) -생육관리카드 (2%) -기타(8%)	-일반노트 및 메모장 (46.4%) -경영기록장 (36.8%) -농업용 PC프로그램 (5.7%) -달력(4.2%) -생육관리카드 (3.1%) -기타(3.%)	-경영기록장 또는 엑셀이용(55.3%) -세무사에게 위탁 (35.4%) -전산화계 프로그램 (5.7%) -기타(3.6%)	-경영기록장(34.9%) -달력 및 메모 (32.8%) -농정원 농업경영장부 (24.0%) -농진청 농가경영관리 (5.2%) -태극회계(2.1%) -농협 알차니(1.0%)	-영농일지(53.5%) -노트연수(26.7%) -컴퓨터(15.7%) -달력(2.9%) -기타(1.2%)

자료: 이상래 외(2015: 185-216)의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저자 작성.

○ 윤석곤 외(2013: 217-233)는 천안지역 농업협동조합 회원 중 청과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114명을 조사(2013. 3. 1.~6. 30.)하여 농업회계의 장애요인을 세 가지(농업회계의 특수성, 교육환경, 경영환경)로 분류한 바 있음.

- 먼저, 농업회계의 특수성과 관련된 장애요인으로 회계처리 과정이나 내용·용어의 어려움, 회계장부 조직의 복잡성을 제시하였음.
- 둘째, 교육환경 측면의 장애요인으로 전문교사, 전문 교육기관, 전문 교재의 부족을 제시하였음.
- 셋째, 경영환경 측면의 장애요인으로 농업경영자의 인식 부족 및 정보의 유용성 부족을 제시하였음.

〈표 8-6〉 농업회계의 장애요인 분석 결과

요인명	구성항목
장애요인 I(특수성)	회계처리 과정의 어려움 회계장부 조직의 복잡성 내용의 어려움 용어의 어려움
장애요인 II(교육환경)	전문교사 부족 전문 교육기관 부족 전문교재 부족
장애요인 III(경영환경)	농업경영에 도움이 안 됨 농업경영자의 인식 부족

자료: 윤석곤 외(2013: 217-233), “농업회계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국제경상교육연구》 10(3).

○ 한편, 농업 분야의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 중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서 기록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기준 개입사업자는 4만 90명이며 약 91.8%가 면세사업자임. 동년 기준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각각 2,022명, 1,261명으로 이 중 1,626명과 963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표 8-7〉 농업 분야 개인사업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2007	18,446	200	116	18,130
2008	18,694	202	116	18,376
2009	18,538	219	111	18,208
2010	18,395	248	101	18,046
2011	18,451	277	108	18,066
2012	18,415	297	109	18,009
2013	18,338	316	114	17,908
2014	19,135	340	146	18,649
2015	20,735	427	203	20,105
2016	22,718	526	273	21,919
2017	25,140	744	400	23,996
2018	27,544	987	540	26,017
2019	31,047	1,321	679	29,047
2020	35,041	1,673	884	32,484
2021	40,090	2,022	1,261	36,807

자료: 통계청(<http://kosis.kr/>), 검색일: 2018. 12. 31.

2.3. 농업회계프로그램의 운영실태

○ 대부분의 농업회계프로그램은 농정원 및 농촌진흥기관을 포함하는 공적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일부 민간업체를 통해서도 유료로 제공됨.

- 농정원과 농촌진흥기관의 농업회계프로그램은 단식/복식으로 작성됨. 특히, 농정원의 농업회계프로그램은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의무준수에 이용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의 회계박사는 PC 설치용 프로그램이며, 나머지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임. 일부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료입력이 가능함.
- 민간업체의 농업회계프로그램으로 송도부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태극회계가 있으며 복식부기방식으로 작성됨.

○ 농업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의 활용 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참여자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업회계교육은 맞춤형 수준별 교육이 중요하나 대부분 일회성 교육이 반복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이 어렵고 농업회계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 경북농업기술원은 농업회계프로그램의 활용자를 도내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학습수준에 따라 교육을 하고 있음.

○ 농업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대한 기초지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참여자의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농업법인의 회계담당자나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의 경우 회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기초지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을 습득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함.
- 교육참여자의 상당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단순히 거래를 입력하거나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수준에서 농업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 반면, 농업경영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나 고령농가는 현실적으로 교육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참여가 저조함.

○ 농업회계프로그램은 공적기관 및 민간업체를 불문하고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음. 영농일지는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이전부터 수기로 작성되고 있었음.

- 농업경영체는 제조기업처럼 생산원가의 구성이나 작업단계에 따른 자원의 투입과 관리가 중요함. 따라서 농업경영체가 회계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영농일지가 결합된 형태의 관리회계가 필요함.

○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유용한 정보는 정확한 거래기록을 통해 확보될 수 있으나, 농업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는 검증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무(관리)회계 정보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회계자료 입력과 관리는 개별 농업경영체의 몫이기 때문에 입력된 자료의 검증과 관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농업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의 이용에 한계가 있음.

〈표 8-8〉 기관별 농업경영장부 비교표

2020. 9. 11. 기준

시스템 구분	농업경영장 장부 (농정원)	회계박사 (농진청)	바로바로 (충북 농업기술원)	파트너 (충남 농업기술원)	농업경영체 기록분석 시스템 (경북 농업기술원)	살림이 (제주 농업기술원)	위드팜업 (농협)	농집 (aT)
구축연도	2020 (개편시점)	2018 (개편시점)	2012	2017	2015	2018	2017	2018
가입농가수	8,380	1,197	10,167	640	2,900	600	약 3,000농가	5,260
회계장부	단식, 복식	복식	복식	단식	복식	복식	단식	X
영농일지	○	○	○	○	○	○	○	○
서비스 방식	인터넷	PC설치	인터넷, 앱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PC설치, 앱	인터넷
현장교육	인재양성본부 자원교육 내 실시	연 20회 이내 자체 교육 실시	연 1~2회 자체 교육 실시	기술원, 기술센터 농기방문 및 원내 교육 실시	연 20회 이내 자체 교육 실시	자체 교육 실시	연 20회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서 교육 실시	연 1~2회 자체 교육 실시
장점	-품목 정밀 분류 -데이터 자동 백업	-완결성 높은 기능 -개인정보 보안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 -타 경영체 비교 가능	-데이터 자동 백업	-Q&A시스템 활성화 -타 경영체 비교 가능	-지역 특화정보 활용도 높음 -타 경영체 비교 가능	-상품등록, 주문서 온라인 작성 가능	-수출단지 신청서 제출절차 간소화
단점	-복식장부 안정화 필요	-자동업데이트 불가 -경영기록DB 구축 불가	-유지관리비 소요	-복식회계 필요	-경북도민만이 이용가능 -유지관리비 소요	-제주도민만이 이용가능 -유지관리비 소요	-농협택배만 연동	-농식품부 지정 수출단지 농가만 이용가능 -고령농가 대상 편의성 제고 필요

주: 민간업체의 농업회계프로그램으로 송도부기연구원의 태극회계가 있음.

자료: 서상택 외(2020), 《농업ON 농업경영장부 중장기 정보화전략 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4.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의 필요성과 국내 도입방안

2.4.1.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수활동의 한 분야로 농림어업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음('07,'09년 제정).
 - 각각 '외감법' 적용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가치를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필요시 취득원가로 측정 가능함.
-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에 근거하여 외감법 비적용 법인(주식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임('13년 제정).
 - 중소기업(주식회사)이나 개인사업자는 회계처리 대상이나 회계처리능력이 부족하며 재무정보의 이용자도 제한적임. 따라서 별도의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을 통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원칙 중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규정은 일부 수정하여 예시나 실무지침을 제시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음(서상택 외, 2014).
 - 종전의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농림어업부문의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없으며, 자산의 인식 및 측정 시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함.
-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정이 시도된 바 있음.
 - 대부분의 농업경영체는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회계기준처럼 회계현실이 반영된 회계기준의 적용이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부문의 회계현실 및 재무정보 이용대상자를 고려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자산의 측정에 원가주의를 적용하는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의 제정을 시도한 바 있음. 기타 농업(경영체)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음.

- 아직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으나 농업법인이
나 규모화되고 사업화된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표 8-9〉 국내 농업경영체에 적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 현황

구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법적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법’
제정기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법무부(고시)
적용대상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중 상장법인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중 비상장법인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법인
농업부문	제1041호 ‘농림어업’	제27장 ‘농림어업’	없음
자산의 인식·측정	‘공정가치(시장가격)’ * 필요시 원가주의 채택 가능		‘취득원가주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4.2. 농업회계기준의 추진 경과

- 2000년 농업금융개혁위원회에서 농업투융자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방편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농기업 회계준
칙’ 제정을 중·장기과제로 선정함.
- 농림부는 2005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제농업회계기준(Agriculture 41)을 기
초로 농업회계처리모범(례)을 작성하고 ‘농업회계처리지침(안)’(농림부 공고
제2006-163호)으로 입안예고(‘06년 8월) 하였으나 고시제정은 무산됨.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농업회계기준 수립 및 보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을 통해 농업회계기준의 제도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농업회계기준(안)을 보완
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은 2014년 농업회계 가이드라인 및 작목별 회계처리
사례집을 배포함.
-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교육·홍보 부족 등으로 확산에 한계가 있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농업(경영체)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농업회계기준(지침) 고시(안)'에 대해 회계기준원 및 전문가 검토를 함.

- 검토 결과, 농업회계기준을 농업(경영체)회계기준으로 용어를 변경함.

○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에 농업(경영체)회계기준 수립 및 보급 계획(안)을 작성한 바 있음.

2.4.3.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의 도입 및 활용방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는 농업회계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농업회계기준의 활용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동법에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로 하여금 농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함도 규정하고 있음.

- 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조건으로 농업경영체의 회계기록 및 재무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제출된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활용성에 대해서는 문제의 제기 및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음.

〈글상자 8-1〉 농업회계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3. 6. 13.

- 정부차원의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의 도입은 농업생산부문의 회계기록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이는 정부차원에서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회계기준의 활용을 권고하거나 경영효율화지원사업 참여에 우대가능하고, 농촌진흥기관을 포함하여 농정 관련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정·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회계기준(안)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경영체)회계기준(안)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이미 ‘상법’ 제4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고시한 사례가 있음(2013. 2. 1.).

〈글상자 8-2〉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3. 6. 13.

○ 정부는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의 제정·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의거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농업경영체에 경영효율화 지원사업의 참여에 우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경영효율화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의 제출이 필요한 사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의 회계기록을 교육하고 지도(컨설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출된 재무제표에 기초한 차등 지원 및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8-10〉 재무정보의 제출이 요구되는 농업정책사업(자금) 현황

사업명	재무정보 내용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 경영장부 기록(농정원의 경영장부 프로그램 활용 작성) -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 정지 - 일시정지 3회 이상 시 지급 중단 및 청년후계농자격을 박탈
농업종합자금	○ 개인 - 재무제표(최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 포함): 필요시 ○ 법인 - 최근 결산 재무제표(1년 이상) - 최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
농업경영회생자금	○ 개인 - 최근 2기 경영장부(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 ○ 법인 - 최근 2기 결산 재무제표 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법인 및 단체 -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3년) · 국세청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최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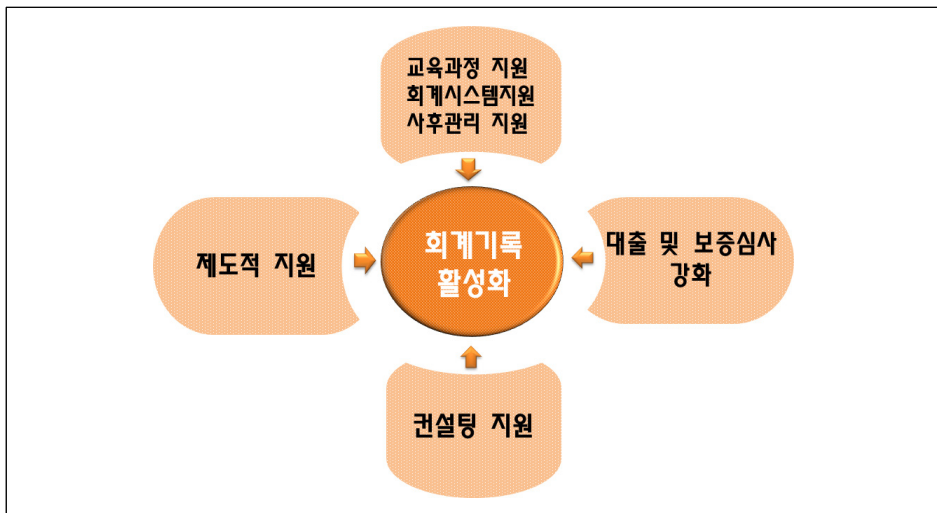
자료: 배균기 외(2021),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의 활용을 권하고, 농업경영체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의 회계기록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작동해야 함.
- 먼저, 농업경영체가 회계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제도적 지원은 정책사업대상자 선정, 대출 및 보증심사, 직접투자에 재무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유용한 재무정보의 산출을 위한 교육 및 지도(컨설팅)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함.
- 둘째, 농업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전산회계프로그램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이미 농업부문에는 여러 기관에서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이 보급된바, 해당 프로그램들이 산출하는 결과물들이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및 지침의 적용, 회계사례의 발굴 및 갱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특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농업회계시스템의 갱신에 반영되는 일련의 사항들이 논의되고 공유되는 과정이 필요함.
- 셋째, 농업회계교육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회계지식 수준별 또는 학습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수자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회계지식의 습득과 현장 적용은 이론교육이나 일회성 실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농업회계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회계자료의 입력과 활용 방법을 지도해줄 수 있는 농업인을 선정하여 현장 컨설턴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강사와 현장컨설턴트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경우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회계기록의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넷째, 입력된 농업경영체의 회계자료는 검증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농업인의 매출 및 매입 관련 정보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소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나 농업부문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다섯째, 회계자료가 소득신고자료로 연계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소득신고 대상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금융(보증)기관에서는 농업경영체가 제출한 재무정보를 적극 신용 평가에 반영하고, 담당자의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훈련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그림 8-1〉 농업회계기록 활성화 지원체계



자료: 서상택 외(2019), 《농업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연구》.

미국 농업금융 현황

1. 자산/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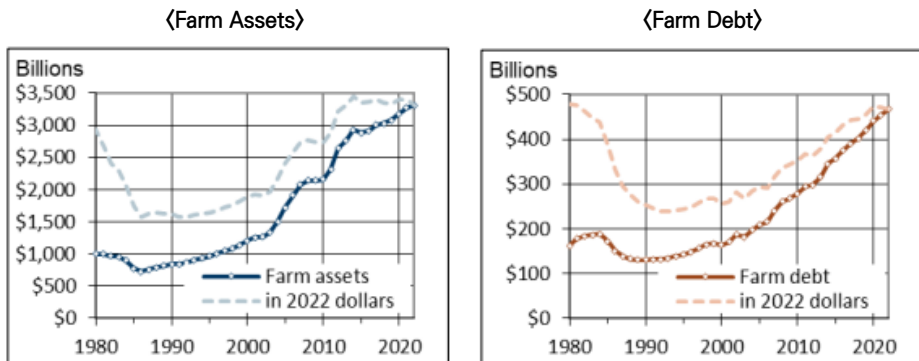
○ 자산 규모 성장이 2014년 이후 둔화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농장 자산은 1980년대 말부터 강세를 유지하고 꾸준히 증가함.

- USDA에 따르면 2021년 말에 농장부문 자산은 거의 3조 3천억 달러에 이름.
- 실질 기준으로 2014년 정점보다 1% 낮은 수준임.
- 이 중 부동산은 2020년 총 농장 자산의 약 82%를 차지, 기계 및 차량은 전체의 약 9%임.
- USDA는 농장 자산이 2022년에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 중임.

○ 농장 부채는 2021년 말에 사상 최고치인 4,540억 달러에 도달함.

- 미국 농장의 약 30%가 부채를 보유함.
- USDA는 부채가 2022년에 2.9%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1980년대 농장 부채의 최고 수준의 1.2% 이하임.

〈부도 1〉 미국 농장 자산과 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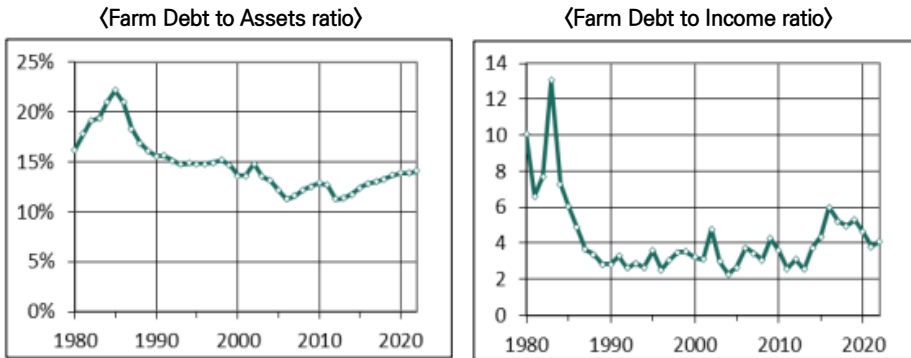


자료: CRS(2022), Agricultural Credit: Institutions and Issues.

2. 재무위험

- 농업자산 대비 부채비율 수준은 1980년대 농업 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함.
 - 2009~10년에 농장 자산 증가가 중단되었을 때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한 후 2012년에 사상 최저 수준이었음.
 - 최근 농장 소득 감소, 무역제한, 코로나19로 자산-부채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보다 변동성이 높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농가 순소득이 감소하면서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 정부 지급금으로 인해 소득이 상승하여 현재 10년 평균에 근접함.

〈부도 2〉 미국 농장 재무위험 추이



주: 여기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현재 소득으로 가능한 부채 상환 기간(the number of years of current income to cover) 의미.

자료: CRS(2022), Agricultural Credit: Institutions and Issues.

○ COVID-19 팬데믹 초기 농장의 재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시행하였음.

- USDA는 loan acceleration(즉시상환요구)과 농장 대출에 대한 신규 압류를 중단함.
- FSA는 지불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DSA(Disaster Set-Aside) 조항을 일시적으로 완화함.⁹⁶⁾

○ 연체율에는 3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고, 여전히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출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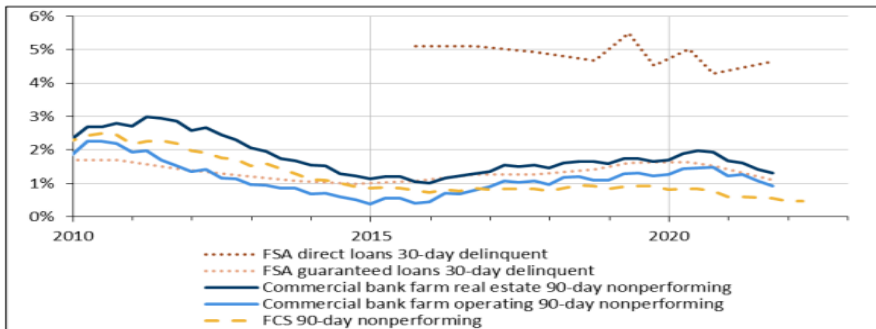
- FSA 직접대출의 연체율은 FY 2021년 말 현재 약 4.7%(대출 포트폴리오 가치)이며, 이 수치는 무역 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급액 증가로 낮아지고 있음.
- FSA 보증대출의 연체율은 약 1.1%로 더 낮으며 상업은행 농업 대출의 연체율과 비슷한 수준임.

⁹⁶⁾ DSA 조항은 차용인이 대출금 상환을 대출 종료 시점으로 옮기거나 연간 운영 대출의 경우 지불금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연기된 원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이자와 원금 모두 탕감되지는 않음. 2020년에 약 4,000명의 대출자가 DSA 조항을 활용하였음.

○ 부실대출지표를 살펴보면, 이자 비발생 대출 및 이자 발생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대출은 연체 대출보다 더 위험함.

- 상업은행의 농가 대출 부실률은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증가했지만 2016년까지 회복되었음. 2019년까지의 농업 소득 감소, 무역 중단 및 코로나 19로 부실대출비율을 증가시켰지만, 10년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음.
- 상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회복되어 코로나 첫해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고 있음.
- Farm Credit System(FCS) 대출도 2007~09년 금융 위기 이후 부실대출률이 회복되었고, 2013년 이후 농업 소득이 낮아진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부도 3〉 연체 및 부실 농업 대출 추이



자료: CRS(2022), Agricultural Credit: Institutions and Issues.

3. 농장부채의 시장점유율

○ 미국 총 농가부채의 대출기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20년 USDA 데이터 기준 FCS와 상업은행이 대부분의 농장 신용(각각 44% 및 36%)을 제공하고 개인 및 기타(10%), 생명 보험 회사(4%)가 차지함.

- FSA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농장 부채의 약 3%를 차지함. 또한, 시중 은행과 FCS의 대출을 보증하는 부분이 약 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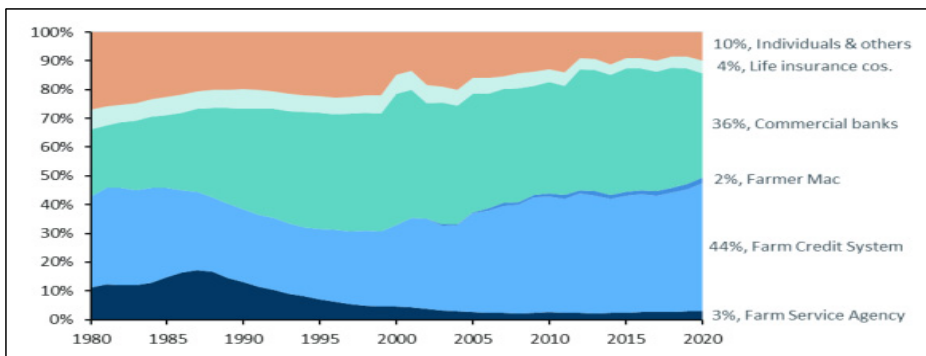
○ 농가 부채 총액(2020년 말 기준 4,410억 달러)은 비부동산 부채(35%)보다 부동산 부채(65%)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음.

- FCS는 농장 부동산에 대한 최대 대출기관으로 49%를 차지하고 있고, 상업은행은 비부동산 농장 대출의 최대 대출기관임(41%).

○ 상업은행과 FCS의 점유율은 1980년대 이후 다른 대출기관의 점유율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함(부도 4).

- FSA는 현재 1980년대 농장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의 농장 부채를 보유함.
- 상업은행은 1985년까지 비교적 적은 양의 농장 부동산 부채를 보유했지만, 지금은 상당한 금액을 보유함.
- 최근 FCS가 보유하고 있는 농장 부채의 비중이 상업은행에 비해 증가함.
- 농장 부동산에 대한 사적 계약이 줄어들어 따라 '개인 및 기타'의 대출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딜러 파이낸싱과 비전통적 대출기관의 혼합으로 인해 '개인 및 기타' 대출이 증가할 전망이다.⁹⁷⁾

〈부도 4〉 미국 총 농가부채의 대출기관별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CRS(2022), Agricultural Credit: Institutions and Issues.

⁹⁷⁾ Brady Brewer, Jennifer Ifft & Nigel Key(2022: 205-213), "Guest editorial: Nontraditional Credit in U.S. Agriculture", Agricultural Finance Review, vol. 82, no. 2.

〈제1장〉

- 강세진·이상열(2015),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성과와 과제”, 《협동조합경영연구》 43: 1-27,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 강종만·임병철(2004), 《농업정책자금 조달 및 운용방안 개선》, 한국금융연구원.
- 국승용·김미복·황의식·최지선·한보현(2017),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김수석(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김윤진(2015),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김태후·원은송·윤홍근(2020), 《농식품산업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2016),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황의식·임지은(2014),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봉(2010), “농수산물식품 모태펀드’의 수산분야 활용 방안”, 《수산정책연구》 5(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철희·이기철·공수진·김은용(2011), 《농식품모태펀드 성과지표 개발 연구》, 삼일회계법인.
- 농업금융개혁위원회(2000), 《농업금융의 현황과 개혁과제》.
- 농업정책자금관리단(2012), 《농식품모태펀드 자펀드 투자자산평가 연구》.
- 박성재·김용택·황의식·문한필·조용원(2006), 《농림투자사업의 투명화와 농업금융의 안정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재·황의식(1994), 《농업부문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재·황의식·김은순·이래정·김영철(2000), 《농업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지연(2016), 《과학기술 기반 농식품 벤처창업 촉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삼일회계법인(2012), 《농식품 모태펀드 전주기관리방안 연구》.
- 서상택·한두봉(2008), “농신보 기금부실의 원인과 해소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35(3): 637-663.
- 이규복(2014), “최근 농신보 보증제도 개선 및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23(18): 12-13,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201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26(23): 3-9, 한국금융연구원.

임소영·김윤진·이실·안창남(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황의식·김미복·이두영·정호중(2018), 《농업 투자 특수성 유지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김정승·김영준·박미선·김태곤·박명호(2022),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현선·이호상(2014),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임업부문 적용 가능성”, 《kfri 산림정책 이슈》 제37호, 국립산림과학원.

황의식·김미복·국승용·최예준(2016),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장〉

기획재정부(2013),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김미복·김태후·원은송·윤홍근(2020), 《농식품산업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윤채빈(2019),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을 위한 금융 지원 실태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23), 《농신보업무현황》.

농림축산식품부(202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

임소영·황의식(2018),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2021), 《202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황의식·김미복·국승용·최예준(2017),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RS(2022), Agricultural Credit: Institution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보도자료〉

내일신문(2020. 10. 12.), “농식품지식재산 담보로 자금대출”.

〈제3장〉

김미복(2023),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해외연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2017),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해외연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연호, 박성재, 황의식(1999), 《선진국 농업정책금융지원제도》, 농림축산식품부.

Crédit Agricole S. A.(2023), Integrated Report 2022-2023.

Farmer Mac(2022), Annual report(2021).

Farmer Mac(2022), amerMac Equity Investor Presentation(2022, 3QT).

Federal Farm Credit Banks Funding Corporation(2023), 2022 ANNUAL INFORMATION STATEMENT OF THE FARM CREDIT SYSTEM.

The cooperative Rabobank(2023a), Annual Report 2022, Rabobank Communications&Corporate Affairs.

The cooperative Rabobank(2023b), Our Impact in 2022, Rabobank Communications&Corporate Affairs.

〈온라인 자료〉

유동화증권 공시포털(https://kmbs.hf.go.kr/biz/IssueDetl/getIssueDetl.do?SUB_MENU_ID=NO0001&MENU_ID=SM4000&SES_MENU_ID=SM0004), 검색일: 2023. 6. 12.

AGRI3 Fund(<https://agri3.com>), 검색일: 2023. 5. 17.

Crédit Agricole Assurances(<https://www.ca-assurances.com/en/CAA/Compagnies/Pacifica>), 검색일: 2023. 5. 26.

Crédit Agricole Assurances(<https://www.ca-assurances.com/>), 검색일: 2023. 5. 26.

De Bolster biologische zaden(<https://www.bolster.nl/>), 검색일: 2023. 5. 17.

Devro(<https://www.devro.com/sustainability/>), 검색일: 2023. 5. 17.

Farm Credit Administration(<https://www.fca.gov/>), 검색일: 2023. 6. 12.

FfBF(<https://www.financeforbiodiversity.org/>), 검색일: 2023. 5. 17.

Food and Land Use Coalition(<https://www.foodandlandusecoalition.org/>), 검색일: 2023. 5. 15.

Full Harvest(<https://www.fullharvest.com/>), 검색일: 2023. 5. 26.

GreenLabelService(<https://greenlabelservice.nl/en/sustainability-labels/>), 검색일: 2023. 5. 17.

Grupo Locks(<https://www.grupolocks.com.br/>), 검색일: 2023. 5. 17.

Koppert Cress(<https://www.koppertcress.com/>), 검색일: 2023. 5. 26.

Rabobank(<https://research.rabobank.com/>), 검색일: 2023. 5. 15.
RavenFeed(<https://ravenfeed.nl/>), 검색일: 2023. 5. 17.
UNEPFI(<https://www.unepfi.org/net-zero-banking/>), 검색일: 2023. 5. 17.

〈제4장〉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22),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홍보 브로슈어》, 가온누리 인베지움.
중소벤처기업부(2022),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중소벤처기업부(2023), 《2022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3), 《KVCA MONTHLY MAGAZINE》 vol. 176.
한국벤처투자(2022), 《KVIC Market Watch 4Q22》 Vol.29.

〈온라인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https://www.apfs.kr/front/contents/sub.do?contId=44&menuId=5320#>), 검색일: 2023. 5. 15.

〈제5장〉

금융위원회(2022), 《22년 상반기 은행권 Tech 평가 결과발표》.
김미복·김태후·원은송·윤홍근(2020), 《농식품산업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이정민·최재현·김종화·김태영(2022),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의 미래(2017), 《애그테크 스타트업》.
리딩투자증권(2022), 《Agtech》.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2023), 《기회의 애그테크 변화의 중심》.
특허청(2017), 《APEC 회원국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을 위한 IP 비즈니스 가이드북》.
삼일PWC 경영연구원(2022), 《푸드테크의 시대가 온다》.
삼정KPMG(2020), 《스마트 농업과 변화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송재만(2020), 《국내 기술금융 지원 현황 및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윤홍근(2021), 《TCB사와 농식품 기술사업화 기관간 협력체계 안》.
_____(2021), 《기술혁신형 M&A 우수사례 창출안》.
_____(2021), 《농식품 IP-SLB 자금흐름 절차》.
임지아(2017), 《농업의 미래, 어그테크(Agtech) 스타트업》, LG경영연구원.
전국은행연합회(2023), 《2023년 4월 기술금융 월보집계-은행별 기술신용대출 금액 및 평가건수 현황》.

통계청(2023), 《2022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

특허청(2017), 《APEC 회원국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을 위한 IP 비즈니스 가이드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1),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No. 2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농업전망 2023》.

AgFunder(2022), AgriFoodTech Investment Report.

CB Insights(2017), the agtech market map 100 startups powering the future of farming and agribusiness.

PichBook(2022), 2023 Industry and Technology Outlook.

The European Commission(2019), How finance can boost innovation in agri-food.

IEA(2021. 5),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UN(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WIPO(2022), WIPO and Intangible Asset Finance : Moving Intangible Asset Finance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보도자료〉

특허청 보도자료(2022. 2. 22.), “지식재산금융 6조원 돌파, 지난해 2.5조원 신규 공급”.

〈제6장〉

권오상·김성훈·김승규·김현석·문한필·유도일·장재봉·정원호(2018), 《농·식품경제학원론》.
김지영·박상원(2008),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용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박정수·우수연(2022), 《FIS ISSUE&FOCUS 재정용자사업》 22(3), 한국재정정보원.

유옥동(2022), 《재정용자제도 및 이차보전 전환사업 분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홍림·유은철(2011), “국민체육진흥기금 용자사업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
Mahoney의 자기강화모형을 토대로”, 《정부학연구》 17(3): 237-278.

임소영(2014), 《재정용자제도의 개선과 이차보전 확대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영환·윤남수(2003), 《용자지원제도의 이차보전 도입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재정정보원(2019), 《재정용자사업 이해하기》.

황성현·이기영·박정수(2002), “재정용자제도의 개편방안”, 《경제학연구》 50(4): 205-229.

〈온라인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s://www.at.or.kr/contents/apko341810/view.action>),
검색일: 2023. 5. 13.

〈제7장〉

기술보증기금(각 연도), 《연차보고서》.

김상봉(2019), 《브런치타임 경제뉴스》, 지필미디어.

_____(2021a), 《빅데이터세상》, 지필미디어.

_____(2021b), 《인공지능이론》, 지필미디어.

_____(2023, 발간 예정), “중소정책금융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25(2).

김상봉·김정렬(2020), 《화폐금융론》, 지필미디어.

김상봉·김정렬·박덕배·손영범·심현섭·이보우·전인구·조경준(2012), 《신용정보의 이해와 활용》, 지필미디어.

김상봉·이시은(2023), “정책금융 현황과 농업정책금융의 방향”, 《신용카드리뷰》,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김상봉·이태호(2017), 《농업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봉·최윤정(발간 예정), “기업 및 기술정보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기술금융연구》 12(1).

김은미·김상봉·홍우형(2016), “기술금융이 은행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용카드리뷰》 10(2): 3-20.

김정렬(2014), 《국내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김미복·김수린·허주녕·권오현·하인혜·남원호·오단이(2022),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23), 《농신보업무현황》.

신용보증기금(각 연도), 《연차보고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각 연도), 《연차보고서》.

안옥진(2022),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각 연도), 《연차보고서》.

황의식·임지은(201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여건변화와 발전방안》 R7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온라인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https://nongshinbo.nonghyup.com>), 검색일: 2023. 5. 6.

농업정책보험금융원(<https://www.apfs.kr>), 검색일: 2023. 5. 6.

〈제8장〉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9),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2),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 명수환·여민수·홍승지(2017),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회계기록 활성화 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44(3): 612-637.
- 배균기·조원지·이병훈(2021),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배균기·전재욱·이동형·공장명·신택균·정윤희·심유강(2020), 《농업ON 농업경영장부 중 장기 정보화전략 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배균기·정우석·하지희(2019), 《농업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엄지범·윤진우·유찬주(2018), “영농설계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록 농업인 특성 분석: 경영관리적 접근”, 《농업경영·정책연구》 45(1): 108-127.
- 윤석곤·김선구·변동현(2013), “농업회계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국제경상교육연구》 10(3): 217-233.
- 이상래·이철희·정병우·윤석곤·서상택(2015), “농가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농업회계 가이드라인 개발”, 《농업경영·정책연구》 42(2): 185-216.
- 이상학·최세현·손찬수·하현정(2012), “농업인의 경영기록 실태 및 특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집》 13(7): 2937-2948.
- 장현동(2014), 《경영기록관리에 대한 농가실증 효과분석》, 농촌진흥청.
- 하지희·김성섭·김태후·서상택(2018), “농업회계 재무지표를 활용한 벼 재배농가 유형 구분”, 《농업경영·정책연구》 45(3): 522-544.

〈온라인 자료〉

- 나무위키(<https://namu.wiki/w/%EC%9E%AC%EB%AC%B4%EC%A0%9C%ED%91%9C>), 검색일: 2023. 6. 21.
- 통계청(<http://kosis.kr/>), 검색일: 2018.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3. 6. 13.

〈부록〉

- Brady Brewer, Jennifer Ifft & Nigel Key(2022), “Guest editorial: Nontraditional Credit in U.S. Agriculture”, *Agricultural Finance Review*, vol. 82, no. 2: 205-213.
- CRS(2022), *Agricultural Credit: Institution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KREI

www.krei.re.kr



**농식품 분야 민간금융
활용방안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